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정책보고서 2015-

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

최현수 · 오미애 · 진재현· 천미경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공저)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진재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2015.7)한 「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상 호

목 차

제1장 서론 ····· 7

제2장 기초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 21

제3장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재산항목별 비중 및 상대적 영향도 분석 ····· 77

제4장 기초연금 선정기준 분석 DB 구축 및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 127

제5장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정책 모의분석 ··· 179

제6장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및 수급률 제고방안 ····· 191

참고문헌 ····· 203

제1장 서 론

1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14년 7월부터 급여가 국민연금과 연계되고 급여수준이 2배로 인상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목표 수급률을 법에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목표 수급률 달성 및 기초연금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2016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 조정안을 사전에 도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2016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전체 노인 및 배우자의 공적 행정자료, 2015년도 전체 기초연금 수급 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안을 도출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2016년 기초연금 운영을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활용한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분석 및 수급률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과 관련된 연구 수행이 필수적임

○ 기초연금의 제도적인 특성을 사전에 반영하여, 전체 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목표 수급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선정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안 연구목표임

○ 이를 위해서, 2016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노인 및 그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항목별 공적 행정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개별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모의 분석을 위한 DB를 구축하고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책 모의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는 2015년 현재 기초연금 비수급 노인 및 2016년에 수급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인 65세 노인(1951년 12월말 이전 출생)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공적 행정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따라, 현행 기초연금 수급노인 및 배우자의 공적 행정자료와 연계하여 이러한 분석 자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보유 행정자료 등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특히,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등 다양한 제도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수급대상 선정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목표 수급률 관리 측면에서 2014년 7월 기초연금 시행

이후 나타난 수급률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수급률 변동 및 그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 수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 이러한 연구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집행 과정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항목별 공적 행정자료 및 행복e음으로부터 추출한 현행 기초연금 수급노인에 대한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분석하여 선정기준을 도출함

□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도출을 위하여 구축 예정인 현행 수급노인의 소득재산 공적 행정자료를 분석하여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재산 항목별 비중 및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보험공단 보유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공적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유형별로 소득인정액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통계를 제공하고자 함

○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등 선정체계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을 통하여 수급률 제고 등 기초연금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기대효과

○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의 집행과정에서 축적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수급률 달성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 DB 구축을 통한 정책 모의분석을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수급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관련 통계정보 등 운영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개선 및 수급대상 선정체계 개편방안의 기초연구로 활용 가능함

3. 연구내용

□ 먼저, 2014년 7월 전환된 현행 기초연금 운영과 선정체계 개요, 정책현황,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관련 이슈 등을 살펴봄

○ 기초연금 시행 과정에 제기된 소득인정액 산출 등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체계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선정기준 조정방안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반영함

□ 현행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세부 항목별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소득재산 항목별 비중 및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함

○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상대적 영향도 심층 분석

□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전체 노인과 배우자 분석DB 구축 및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분석

○ 2015년 10월말을 기준으로 추출된 두 가지 공적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2016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노인(1951년 12월 이전 출생)과 배우자 중심 분석 DB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 방법론 및 한계, missing data 추정 및 보정 방법 등을 제시함

- 2016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전체 노인 및 배우자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보유 소득재산 항목별 행정자료 추출
- 현행 기초연금 수급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행복e음 소득재산 항목별 행정자료 추출

○ 노인가구 유형(노인단독,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 부부)에 따른 소득·재산항목별 보유실태를 분석함

□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통하여 기초연금의 목표 수급률 달성을 위한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IMA(International Micro-simulation Association)의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법론과 EUROMOD의 micro simulation 분석모형을 벤치마킹 하여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도출 및 수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모의 분석틀을 설정함

- 현행 기초연금 수급노인 및 배우자 정보와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를 연계한 분석 DB를 활용하여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분포를 추정함

-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조정 등 기초연금 제도 개선방안의 적용에 따른 정책 모의분석 결과 및 수급률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안을 도출함

□ 수급률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수급률 변동 요인 및 영향 분석

○ 기초노령연금 도입 및 2014년 7월 기초연금 전환 후 수급률 변화 추이 및 영향을 검토하여 선정기준 도출에 활용함

- 2015년 기초연금 수급정보 및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분석 DB에서 분석된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수급률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현행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재산 항목 공제수준, 재산의 소득환산 등과 관련된 적정성 및 형평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검토

- 지자체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산출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을 모색함

□ 각 장별 연구내용 구성

○ 2장에서는 소득인정액 산출 및 자산조사 등 현행 기초연금의 선정체계 개요를 살펴봄

○ 3장에서는 2015년 10월 기준으로 행복e음으로부터 추출된 전체 수급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항목별 분석 DB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구성 비중 및 상대적 영향도를 분석함

- 최신 통계방법론 벤치마킹 및 활용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재산항목별 비중 및 영향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함

○ 4장에서는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과정에 활용된 공적 행정자료 기준 분석 DB 구축과정을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가구 유형별로 소득 및 재산항목에 대한 보유실태를 비교 분석함

-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공적 행정자료와 현행 기초연금 수급 노인 및 배우자의 행정데이터 연계 등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도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분석 DB의 구축과정을 서술함
  - 2015년 10월을 기준시점으로 현행 기초연금 수급노인 및 배우자 기초정보를 연계하여 201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1951년 12월 이전 출생 노인 및 배우자)을 중심으로 분석 DB를 구축함
- 이어서,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과정에 활용된 공적 행정자료 기준 분석 DB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인가구 유형별로 소득 및 재산항목에 대한 보유실태를 비교 분석함
  - 노인가구(노인 및 배우자 기준 부부 단위)를 노인단독, 비노인 배우자 부부, 노인부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소득 및 재산항목별 보유실태를 비교 분석함

○ 본 연구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5장에서는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수행 결과를 제시함

- 먼저, 4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기초연금 수급노인 및 배우자 기초통계를 연계하여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구축된 분석 DB를 기초로 전체 노인가구의 2016년 예상 소득인정액 분포를 추정함
- 다음으로, 가구 균등화 지수 적용 및 신청률 조정 등 정책 모의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된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하여 시차 보정 및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에서 누락된 항목에 대한 보정 등을 고려하여 정책 모의분석 틀을 설정하고 이러한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기초연금 전환 시점을 포함하여 지난 기간 동안의 수급률 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및 소득인정액 산출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요약 제시함

4.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기초연금 정책집행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선행연구 검토

○ 기초연금 선정체계(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등 정책현황 검토

□ 통계적 분석방법론 관련 국제 Workshop 참석 및 벤치마킹

- 보건복지 정책분야 정책설계 및 평가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공적 행정자료 연계 및 소득·재산 micro-simulation 관련 연구동향 및 최신 분석방법론 국제 Workshop에 참석함
-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과정에 구축된 행정데이터 한계 보정방법론, missing data 등의 보정 및 수급률 추정 방법, 소득인정액 구성 비중 및 영향 분석 등 정책변화에 대한 정책 모의분석 관련 통계분석 방법론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이를 연구에 적용함

□ 공적 행정자료 연계에 의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도출 분석 DB 구축 및 심층 분석

-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 및 개선방안 적용에 따른 선정기준 및 급여대상 분포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 모의분석 틀 사전 설정
- 선정기준과 연계하여 소득인정액 개념 및 산출방식, 이를 구성하는 소득 및 재산항목 적용방식 조정 등 선정기준액 도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요소 확정
- 접근 가능한 공적 행정자료 기반으로 분석 DB 연계(data

linkage) 및 통계적 추정방법론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책 모의분석 DB 구축

- 2015년 10월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노인 및 배우자의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201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전체 노인(1951년 12월말 이전 출생한 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항목별 공적 행정자료와 연계하여 분석 DB 구축

□ 기초연금 선정체계에 따라 선정된 현행 수급노인에 대한 공적 행정자료(행복e음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데이터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책 모의분석의 정확성 제고 및 수급률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 추출

- 현행 행복e음에 구축된 기초연금 수급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기초통계 자료 추출 및 연계 적용을 통한 보정방안 마련
- 분석 DB를 활용하여 공적 행정자료에 대한 정책 모의분석 및 행복e음 공적 행정자료의 활용을 통한 보정 등 소득 및 재산항목별 기초통계, 수급률의 변화 추이 및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등 영양요인 분석
- 전체 노인가구 소득인정액 분위별 분포를 기초로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안 도출 및 비교

5. 연구 수행체계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이 함께 협의하여 연구목적 및 방향, 분석 DB 설계 및 구축 기본방향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구체적으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관련 DB 구축 및 분석,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마련 등 핵심적인 연구 수행은 연구진이 담당함

- 연구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전문 연구인력 이외에 연구 진행과정에서 심층 분석방법론 활용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DB 구축 및 분석방법론,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문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구함

□ 특히, 본 연구는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 모의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분석 DB를 다각적으로 구축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DB 구축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관리하며, 전체 노인에 대한 공적 행정자료 제공 및 분석여건 제공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협조 및 지원받음
- 현행 기초연금 수급노인 및 그 배우자의 수급신청 및 선정결과와 관련된 공적 행정자료와 기초통계의 제공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실이 담당함

□ 본 연구의 전반적인 수행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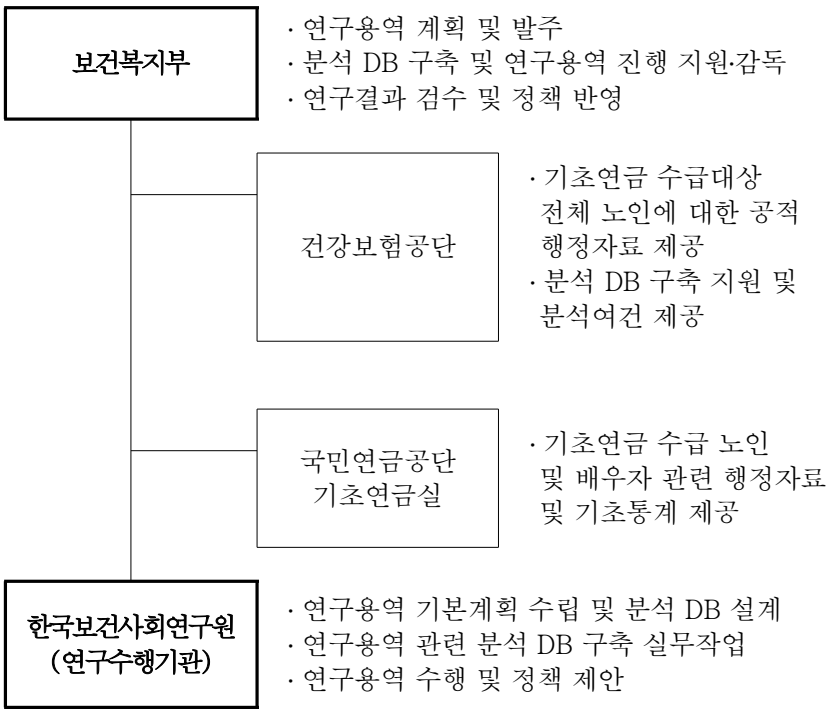

제2장 기초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2 기초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 여기서는 2015년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운영 및 선정체계[1)]를 요약 제시함

제1절 제도 개요

□ 정책목표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 수급대상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15년) : 단독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8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 ×(근로소득–52만원) }* + 기타소득**

1) 기초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개요는 '201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함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연 4%)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2015년 제도 시행 중 수급률 제고를 위해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 연 5% ☞ 연 4%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가능
- 다만,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상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제2절 수급자 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원칙

(1) 소득, 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행복e음」으로 통보된 기존 수급자의 변동사항은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권자에게 확인(입증자료 징구 등) 후 반영

(2)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조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조사 의뢰

- 조사 의뢰 전에 신청자・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직접조사 시 관계 공무원은 증표 및 관련서류(서식 22호) 제시 (시행예정)

※ 의뢰 시 조사에 필요한 수급(희망)자와 필요시 그 배우자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및 확인요청내용 등에 대해 기재를 하되, 개인정보 보안에 유의

※ 공단의 현장조사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 또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사・재조사 요청 가능

- 공단에 의뢰 가능한 현장조사 유형
  - 사실(이)혼 확인
  - 사망의심자의 사망 여부
  - 거주불명등록자 확인조사
  - 타인계좌입금수급자 등의 대리수령 필요성 및 기초연금 사용용도 등
  - 배우자의 부재(실종, 가출 등 행방불명) 여부
  -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한 외국국적 배우자의 귀화신청 여부 등
  - 기타 현장 확인조사가 필요한 사항

□ 조사 대상 및 범위

(1) 조사단위 : 가구단위(신청자(수급자)와 그 배우자)로 조사

(2) 조사대상 : 신청자(또는 수급자)와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등

- 배우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조사대상이며,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포함
- 가출·행방불명·실종[2],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조사
  - 다만, 부재 배우자의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징구할 수 없으므로,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법령에 따라 신청자(또는 수급자)와 그 배우자 명의 외의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 및 소득인정액에 포함 가능

(3) 외국인인 배우자 또는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배우자에 대한 조사

-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준하는 공적자료·금융자료 등의 조회가 가능한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말소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등

  →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 적용
-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 단독 가구 선정기준액 적용

2)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조사의 종류

○ 신청조사

(1) 조사목적 :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결정을 위해 실시

(2) 조사대상 :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

(3) 조사내용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 직역연금 등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
-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등 기초연금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

  * 국민연금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음

(4) 조사시기 : 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개시

(5)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한 자료 확인 및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징구

- 신청 후 조사기간 중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하여 수급자격 여부, 기초연금액 결정 전에 반영

(6) 조사결과 처리 : 수급자격 여부 및 기초연금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확인조사

(1) 조사목적 : 기초연금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의 변동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실시

(2) 조사대상 : 변경신고 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조사대상(수급자 본인 및 그 배우자)

(3)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한 자료 확인 및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징구

(4) 조사의 구분

① 정기조사

-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자료, 금융정보 등 갱신·반영

② 수시조사

-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실시

③ 변동신고에 의한 조사

- 수급자가 소득·재산, 기초연금액, 인적 요건 변동 사항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5) 조사결과 처리 : 수급자격 여부, 기초연금액 등 변동내용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6)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 수립
- (시·군·구) 시·군·구청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실시

-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가 요청한 현장조사 업무 수행

2. 소득조사

□ 소득의 의미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중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 기타사업), 재산소득(이자, 연금),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소득 산정기준

○ 공적자료 반영기준

–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전월소득'을 반영

○ 변동자 소명 시 처리기준

– 상시근로소득

-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 지급월부터 반영)을 산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상실확인서(노동부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에 의한 소득산정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반영

– 사업소득

- 사업형태가 변경(휴·폐업)된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소득조사에서 제외하는 소득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4)「입양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5)「아동복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7)「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8)「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9)「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10)「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

-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소득으로 산정

(1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12)「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지원금

(1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금

(14) 아동청소년사업안내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지원금

(15)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16) 홍익회 원호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17) 재한(在韓) 원폭피해자가 받는 수당

(18)「문화재보호법」 및「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19)「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조례」에 의한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서 받는 급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

(20)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사업에 의한 지원금

(21)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금

(22)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가. 근로소득

□ 정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유형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상시근로자 소득 조사방법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

– 조회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3]

ⅱ)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ⅲ)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 시만 자료 제공

ⅳ)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신청자(수급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3) 건강보험가입자 보수월액 확인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에서 신고된 평균보수월액을 본인이 확인 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 「행복e음」에 의한 보수액 통보 이전에 월보수액 확인이 필요시 동 자료 제출 요청 가능

(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 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다만, 회사부도로 실직상태이나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며, 퇴직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http://www.kftc.or.kr) – 당좌거래 정지정보 조회' 확인 후 반영

□ 일용근로자 소득 조사방법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조회 결과를 확인가능하며, 근로소득에서 자동 제외됨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 공공일자리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조사방법

○ 「행복e음」의 조회 결과를 반영

○ 공적자료 조회 대상자 중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은 자동 제외됨

※ 민간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자체로부터 수행기관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하므로, 우선 이를 확인한 후 소득에서 제외

□ 근로소득 산정방식

○ 적용범위 :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된 상시근로소득

○ 산정방식 : 상시근로소득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52만원)한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정률(30%)을 추가 공제

–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금액 – 52만원*) × 적용율(0.7)

• 당해연도 최저임금(5,580원) × 23일 × 4시간

나.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정의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 기타사업소득

○ 정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 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동일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공제 적용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중 많은 소득금액을 적용
  - 「행복e음」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다.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정의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을 반영

□ 연금소득

○ 정의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 월할(연간 총 수령금액을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라. 공적이전소득

□ 정의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 및 소급지급금으로 받는 금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산재급여 발생 원천이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임시·일용직에 따른 산재급여(휴업급여)인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4]

※ 다만, 상기 법률에 의한 수당 중 다음의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4)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국가유공자 고령수당 포함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5], 간호수당[6], 무공영예수당[7]

③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15.1월~'15.3월: 28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

□ 조사방법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자동 반영

– 연금을 담보로 연금지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 전(前)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행복e음」에서 공제 전 금액으로 조회됨)

마. 무료임차소득

□ 정의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

5) 생활조정수당은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므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독립유공자 및 유족, 기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6)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중상이자(1~2급)를 간병·보호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제외

7)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수호의 공헌에 대한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금전적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소득에서 제외

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대상 및 범위

○ (적용대상)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1촌 이내의 직계비속(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의 주택인 가구

-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무료임차소득 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준

- (거주 기준)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해당

  * 신청자(수급자)의 65세 미만 배우자만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

- (소유 기준) 자녀가 제3자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하되, 무료임차소득 결정 시에는 지분율만큼만 반영

○ (산정방법)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부과

  * 공동지분(소유)인 경우에는 지분율만큼만 반영

  * 다만, 자녀 명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지 않음에 유의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

□ 조사방법

ⅰ)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 주소지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 가능을 알리는 '알람 또는 유사주소 검색' 확인(「행복e음」시스템)

※ 알람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무료임차소득 부과대상 주택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사주소 검색' 기능 활용

ⅱ)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및 임차계약 여부 확인

ⅲ)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또는 전·월세 임차계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무료임차)인 경우,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주 확인

ⅳ)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해당 주택 소유자가 자녀인지 여부를 확인

ⅴ) 해당 주택이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연 0.78%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무료임차소득 산정

※ 시가표준액이 미조회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ais.kr/realtyprice)'에서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 확인

3. 재산조사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월]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각각의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인 경우는 '0'으로 처리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5% 적용

– 고급자동차, 회원권을 제외한 다른 재산을 월 소득으로 산출한 후 고급자동차, 회원권 가액을 그대로 합산

○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

구분	공제액(만원)
대도시(특별시 ·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13,500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
농어촌(도의 '군')	7,250

– 신청자(수급자)가 보유한 일반재산의 합산 금액에서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차감

* 물건의 소유자 및 물건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 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상위도시를 기준(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으로 적용

□ 재산의 종류

(1)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제3호)

- 단, 종중·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항공기, 선박(「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8](「소득세법」제89조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입목재산, 어업권(「지방세법」제6조제11호, 제13호)

–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지방세법」제6조제14호~제18호)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자동차(「지방세법」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2)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화재보험, 해상보험,

8)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증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등도 입주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로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과는 성격이 다름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보험업법」 제4조제1항)

□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보정계수(3.5)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입목재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금융재산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가. 일반재산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① 정의

- 토지(「지방세법」제104조제1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지방세법」제6조제4호)
  - 건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건축물(「지방세법」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9](「주택법」제2조제1호)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② 조사방법

– 토지(전답, 임야)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건축물

- 건물, 건축물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

9)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해당

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인 건물과 부속토지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

– 토지·건축물·주택이 종중·문중재산 등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종중·문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
- 해당 시·군·구에서 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 등기소에 등기한 경우 재산산정 제외(「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
- 종중·문중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한하여 '합유등기[10]'로 변경 등기 완료시 재산산정에서 제외

–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재산산정 방법

-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시·군·구의 세무부서 과표 담당을 통해 '시가표준액' 산출 요청하여 가액 산정
- 무허가 건축물은 비과세 대상으로 가액을 산정함에 유의
-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직 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시 산출된 평가액 또는 분양가를 적용할 수도 있으

10)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공동소유를 말함(등기 필요)

나 공시지가 등과의 가액 차이로 해당·미해당 등의 결정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자(수급자)의 의견 수렴 후 분양가로 적용

(2) 항공기·선박

①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11]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선박·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3) 임차보증금

① 정의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11) 보정계수 : 「지방세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 20.3%이므로 시가의 70%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②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행복e음」을 통해 '전월세거래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여 반영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함에 유의(「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정,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100%) 산정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 적용률[12](0.95)

③ 유의사항

- 월세부 임차보증금으로 월세 미납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차감되었

12) 적용률 설정 취지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률을 곱하여 5%를 공제
- 「행복e음」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시,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할 때 자동 반영

다고 주장하는 경우

- 미납금을 차감하는 경우 개인 간 부채를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임차계약서상 당초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산정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양도시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 변제(양도) 전은 임차보증금으로 산정(부채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
- 변제(양도) 후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4) 조합원입주권

①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② 조사방법

– 조합원입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제출서류 : 분양회사 또는 재건축조합 등과 작성한 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분양가액 확인서 등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13]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자료 등 확인 가능한

공적자료를 징구하여 확인

(5) 분양권

①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조사방법

- 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납입한 금액)을 반영

(6) 입목재산

①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지방세법」제6조제11호)

- 지상의 과수, 입목,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어업권

① 정의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

13)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은 국세인 「소득세법」 에서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반면 「지방세법」 에서는 토지로 달리 해석되고 있음

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8) 회원권

①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

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 여부 확인 및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③ 조회결과 적용

–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 가액을 그대로 산정

※ (예외) 소유하고 있는 모든 회원권이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연 5%) 적용

(9) 자동차

① 정의 : 「지방세법」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②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 (2순위)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3순위)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잔가율*) > 취득가액(×잔가율)
-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차령 기준으로 정한 잔존가치 비율로서 행정자치부

에서 정한 비율

※ 차량가액이 파악되지 않는 일부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③ 조회결과 적용

- 재산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전수 표기되었으므로 상담 시 자동차 유형 및 소유 여부를 확인(자동차등록원부,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징구)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산정 제외
-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인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 확인사항 –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등
-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

④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이 적용되는 자동차
  - (대상)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고급자동차)' 및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제외
  - (적용방법)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적용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고급자동차)
  - (대상)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 (적용방법)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 및 자동차 가액을 전액 산정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개별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

    * 개별차량 가액을 합산하여 4천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세금 등 감경 차량은 제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적용방법) 해당가구에 재산산정 제외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조사대상 노인부부 각각 1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

나. 금융재산

(1) 정의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2)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적용

*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3) 금융정보 등 조회

○ 조사대상자 : 신청자(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

※ 신청조사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

○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주식(비상장주식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보험증권 : 해약 시 환급금 및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

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만 산정

○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행복e음」에 등록 → 중앙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행복e음」을 통해 금융조회 결과 확인

○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 : 신청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확인조사 : 연 1회 이상 조회 실시

○ 유의사항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법에 의해 처벌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정보 제공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용·보험정보 제공 누설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조회결과 적용

○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종중·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14]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 (도명계좌)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5)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14)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퇴직)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6) 금융재산의 공제기준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2,0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7) 유의사항

○ 요구불예금 계좌를 타 계좌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중복 조회된 경우[15]에는 중복 부분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 각 계좌에서 동일 금액의 입출금 사실을 확인하고, 각 계좌의 잔액의 합을 재산으로 산정(중복 계산된 금액 차감)

15) 요구불예금은 평균잔액으로 산정하고, 기타 금융상품은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중복산정 문제 발생 가능

○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노인 → 자녀)시 '기타(증여)재산' 항목으로 산정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개시 여부를 확인하여 연금개시 후 금융재산과 연금소득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

다. 기타(증여)재산

(1) 정의 :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

(2) 적용기준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또는 처분일)*****로부터 소진시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 재산 : 토지·건축물·주택, 항공기·선박,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입목, 어업권,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 재산의 가액 :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 타재산 증가분 : 타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 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 소비용,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공매에 의한 재산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 증여일(또는 처분일) : 등기접수일(「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기타(증여)재산 = 증여(처분)한 재산의 가액- (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3) 기타(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 기타(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 증여당시 「지방세법」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

○ 재산산정 제외 자동차(국가유공자, 장애인, 조례에 의해 비과세차량 등)를 증여한 (또는 처분한) 경우 :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

(4) 증여재산의 범위

○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산정

○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

* 노인 본인의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함

(5) 조사방법

①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기준)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② 본인소비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장례비, 혼례식 등에 사용된 금액
  - 단, 같이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질환*으로 치료·요양·재활 등의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된 자

  · 적용기준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에 준하여 적용

  · 적용기간 : 암·희귀난치성 질환(등록일로부터 5년), 중증화상환자(등록일로부터 1년, 6개월 연장가능)

  - 증빙서류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장례식장(화장장 등)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진단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확인 요청서 및 확인증(건강보험공단)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단, 동거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증빙서류 : 학원비 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 및 양육비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액을 차감(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증빙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 이혼합의서(공증), 법원판결문, 계좌이체내역서 등

–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해당 재산 순위별 금액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재산(금융)에 포함하여 신청자(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본인소비분으로 인정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

③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반영한 금액 차감(음의 값인 경우 '0'원 처리)

*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 :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단독가구 : 3인가구, 부부가구 : 4인가구)

* 가구단위로 인정하고 있어 일반재산 처분(주택매각 등), 금융재산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중복차감하지 않도록 주의

• 금융재산의 경우 최근 조사일자의 '조회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되, 소명하는 경우 '계좌해지일, 인출일, 이체일 등 거래내역변동일' 이 속한 달부터 차감

– 노인부부의 경우 자연감소분 산정 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달까지 부부기준으로 적용하고, 사망한 다음 달부터 단독 기준으로 적용

□ 부채

○ 정의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 부채 인정범위

– 금융기관 대출금

– 신용카드 미결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미소금융재단에 의한 미소금융 대출금

– 개인 간 부채(사채) : 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임대보증금

○ 조사방법

- 금융기관 대출금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확인
  - 금융기관 대출금의 종류(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16], 신용대출 등) 및 용도(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등)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
    -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 자녀 등 타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산정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17], 한국장학재단 등)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등에서 확인·

16)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상품으로, 일명 '역모기지'라고 하며,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을 평생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공적보증에 의한 '종신지급과 종신거주'를 특징으로 함(2007년 7월 12일부터 판매)
-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 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산정 없이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

17) 신청 당시 지급받은 농지연금 수령액 누계를 소득산정 없이 부채로 산정하고,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매월 지급받는 농지연금액을 부채로 차감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출금 확인

-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의 판결문(결정포함), 화해·조정조서를 제출받아 대출금액 확인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① (상가 임대보증금)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② (주택 임대보증금) 임대차정보제공요청*에 따른 확인서**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기관(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에서 발급

    ③ (공공기관과의 임대차계약) 공공기관과 임차인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세임대계약사실확인원'
  -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 전세권 설정 등기[18]된 금액,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

18) 부채사항 상담·조사 시 e- 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전세권 설정 확인

증금 중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 인정

- 「행복e음」을 통해 '전월세거래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사실 확인하여 반영
- 재임대 또는 전전세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 준용

※ 선 계약 후 확정일자를 추후에 받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적용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 대출금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자(수급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임대보증금

- 2007년 10월 15일 이후 '신청자(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 부채로 인정시 유의사항

–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4. 직역연금 수급권자 조사

□ 직역연금 수급권자별 대상 구분

○ 원칙 : 기초연금 지급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별정우체국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예외 : 기초연금 지급(기준연금액)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

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특례 : 기초연금 지급(기준연금액의 50%)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 (요건) ①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②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만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가 되는 경우

  * 선정기준액 요건 및 「장애인연금법」상 특례요건을 만65세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대상

  * (요건)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②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③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④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특례보호 대상은 '14. 7월 법 시행 당시 보호대상(수급자)으로 한정

  • 특례보호 대상은 개인 단위로 관리(본인은 특례보호 대상이

더라도 배우자가 특례보호대상이 아닐 수 있음)

- 법 시행 당시 특례 적용 대상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탈락한 경우 특례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추후 특례수급자 직역연금 수급 등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특례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됨

□ 직역연금 조회결과 적용

○ 「행복e음」을 통해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에 대해 각각 기초연금 지급 제외대상, 예외대상, 특례대상으로 구분하여 기초연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

5. 수급가구 유형 확정

□ 단독가구

(1)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2) 부부가구로 조회되지만 사실이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자의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부부 1인 수급가구

(1)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2)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나 부부 1인 수급가구로 적용하는 경우

– 직역연금 특례 수급권자 가구로서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또

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가출·행방불명·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 금융재산에 한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징구 불가)

- 부부 중 1인이 해외체류 60일 이상으로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있으며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된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 부부 2인 수급가구

(1) 부부(신청자 및 배우자)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고유식별번호가 있으며 혼인신고 후 2년 이하인 외국인 배우자 포함)

(2) 직역연금 수급권자 가구로서 부부 모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3) 직역연금 수급권자 가구로서 부부 모두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제3절 기초연금액 산정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개요

○ 무연금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국민연금 노령연금·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한 후

-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하고,
-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국민연금·연계연금 수급권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

○ 직역연금 특례대상자는 '기준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기초연금액 산정

가.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

- 무연금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 노령연금·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

-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 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나. A급여액 적용 산식 대상

- 국민연금 수급권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 적용 산식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연계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A급여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합산하여 산식에 적용

☞ 적용 산식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1/2) } + 부가연금액

- 이 경우,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A급여액 적용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산식을 적용(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다. 직역연금 특례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ⅰ)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ⅱ)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상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 산정

□ 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 감액)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

□ 기초연금 급여액 생성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 가구단위의 감액 이후 금액을 급여액으로 생성

○ (부부 2인 수급 가구) 가구단위의 감액된 기초연금 급여액을 부부 각각에게 배분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생성

□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 단독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소득인정액 ('15년)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77만원 미만	77만원 이상~ 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81만원 미만	81만원 이상~ 83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00,0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 ('15년)	83만원 이상~ 85만원 미만	85만원 이상~ 87만원 미만	87만원 이상~ 89만원 미만	89만원 이상~ 91만원 미만	91만원 이상~ 93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부부 1인 수급 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소득인정액 ('15년)	130.8만원 미만	130.8만원 이상~ 132.8만원 미만	132.8만원 이상~ 134.8만원 미만	134.8만원 이상~ 136.8만원 미만	136.8만원 이상~ 138.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00,0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 ('15년)	138.8만원 이상~ 140.8만원 미만	140.8만원 이상~ 142.8만원 미만	142.8만원 이상~ 144.8만원 미만	144.8만원 이상~ 146.8만원 미만	146.8만원 이상~ 148.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부부 2인 수급 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 (최대 32만원 4,160원)

소득인정액 ('15년)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132.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320,000원	280,000원	240,000원	200,000원

소득인정액 ('15년)	132.8만원 이상~ 136.8만원 미만	136.8만원 이상~ 140.8만원 미만	140.8만원 이상~ 144.8만원 미만	144.8만원 이상~ 148.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기초연금 급여액 표

○ 단독가구 (bp =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 ('15년)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77만원 미만	77만원 이상~ 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 81만원 미만	81만원 이상~ 83만원 미만
기초연금급여액	bp	Min (bp, 18만원)	Min (bp, 16만원)	Min (bp, 14만원)	Min (bp, 12만원)

소득인정액 ('15년)	83만원 이상~ 85만원 미만	85만원 이상~ 87만원 미만	87만원 이상~ 89만원 미만	89만원 이상~ 91만원 미만	91만원 이상~ 93만원 이하
기초연금급여액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 부부 1인 수급 가구 (bp =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 ('15년)	130.8만원 미만	130.8만원 이상~ 132.8만원 미만	132.8만원 이상~ 134.8만원 미만	134.8만원 이상~ 136.8만원 미만	136.8만원 이상~ 138.8만원 미만
기초연금급여액	bp	Min (bp, 18만원)	Min (bp, 16만원)	Min (bp, 14만원)	Min (bp, 12만원)

소득인정액 ('15년)	138.8만원 이상~ 140.8만원 미만	140.8만원 이상~ 142.8만원 미만	142.8만원 이상~ 144.8만원 미만	144.8만원 이상~ 146.8만원 미만	146.8만원 이상~ 148.8만원 이하
기초연금급여액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 부부 2인 수급 가구 (bp1+bp2 = 부부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15년)	120.8만원 미만	120.8만원 이상~ 124.8만원 미만	124.8만원 이상~ 128.8만원 미만	128.8만원 이상~ 132.8만원 미만
기초연금급여액	(bp1+bp2)	Min [(bp1+bp2), 28만원]	Min [(bp1+bp2), 24만원]	Min [(bp1+bp2), 20만원]

소득인정액 ('15년)	132.8만원 이상~ 136.8만원 미만	136.8만원 이상~ 140.8만원 미만	140.8만원 이상~ 144.8만원 미만	144.8만원 이상~ 148.8만원 이하
기초연금급여액	16만원	12만원	8만원	4만원

제3장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재산 항목별 비중 및 상대적 영향도 분석

3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재산항목별 비중 및 상대적 영향도 분석

□ 이 장에서는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행복e음으로부터 추출된 전체 수급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항목별 분석 DB를 기초로 소득인정액 구성 비중 및 영향도를 분석함

○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 및 제도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최신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구성한 소득·재산항목별 반영 비중을 분석함

- 최신 통계방법론 벤치마킹 및 활용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재산항목별 비중 및 중요도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최신통계기법인 데이터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이들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관계, 패턴, 규칙을 탐색하고 찾아내어 모형화 함으로써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이며, 방대한 정보로부터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데이터마이닝 분야가 발전하였음

- 데이터마이닝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신용평가, 품질개선, 부정행위의 적발, 이미지분석, 위험관리망 관리(Network Management), 수요 및 판매 예측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됨

□ 설명변수(예를 들어,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로부터 반응변수(예를 들어, 소득인정액)를 산출하는 과정은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통계학의 주요 이슈임

○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모형을 적합하고 새로운 관측값에 대해 소득인정액 값을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통계 분야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론을 접목시킴으로 해서 보다 향상된 산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반응변수의 형태에 따라 크게 기계학습 분야는 회귀(Regression) 문제와 분류(Classification)로 나눌 수 있는데, 회귀문제에서는 반응변수가 소득인정액과 같이 실수의 형태이고 분류의 문제에서는 반응변수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같이 범주의 형태임

□ 기계학습이론(machine-learning)의 분류 기법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방법으로 변수의 중요도(Importance)를 계산하여 각 변수별 중요도를 살펴볼 수 있음

○ 랜덤 포레스트는 Breiman(2001)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하나의 가장 좋은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많은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하여 이들을 합하는 앙상블(ensemble) 기법임

○ 랜덤 포레스트는 분류 정확도가 우수하고 이상치에 둔감하며, 계산이 빠르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랜덤 포레스트의 중요도(Importance)를 계산하여 각 변수별 중요도를 살펴볼 수 있음

○ 영향도는 통계모델에서 특정 변수가 반응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관성 크기를 나타냄.

- 그림과 같이 두 변수 A, B 값들로 이루어진 4개의 단노드(terminal node)가 있을 때, 단노드의 과반수(majority)에 의해 0그룹 에 속하는지, 1그룹에 속하는지를 판정하게 됨
- 변수 A에 의해 샘플의 상당수가 0그룹과 1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변수 A 가 두 그룹 판별하는 데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만약 변수 A의 값을 무작위로 바꿔서 각 샘플에 할당하게 되면 변수 A는 두 그룹를 판별하는 데 연관성이 없게 됨
- 변수 A값이 무작위로 할당된 샘플로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구축했을 때 단노드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의 비율과 원래의 데이터 값을 사용하여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구축했을 때 단노드에서의 올바른 의사결정의 비율 차이가 변수 A 의 중요도임
- 변수 A가 0그룹에 속하는지, 1그룹에 속하는 지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변수라면 무작위로 할당된 경우의 올바른 의사결정 비율과 원래 데이터의 올바른 의사결정 비율차이가 크게 날 것임. 반면에, 변수 A 가 0그룹에 속하는지, 1그룹에 속하는 지를 판별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변수라면 무작위로 할당된 경우의 올바른 의사결정 비율과 원래 데이터의 올바른 의사결정 비율에 차이가 없음
- 따라서 랜덤 포레스트의 중요도 그림(Importance plot)을 이용하여 각 변수별 중요도를 살펴볼 수 있음

○ 랜덤 포레스트에서 의사결정나무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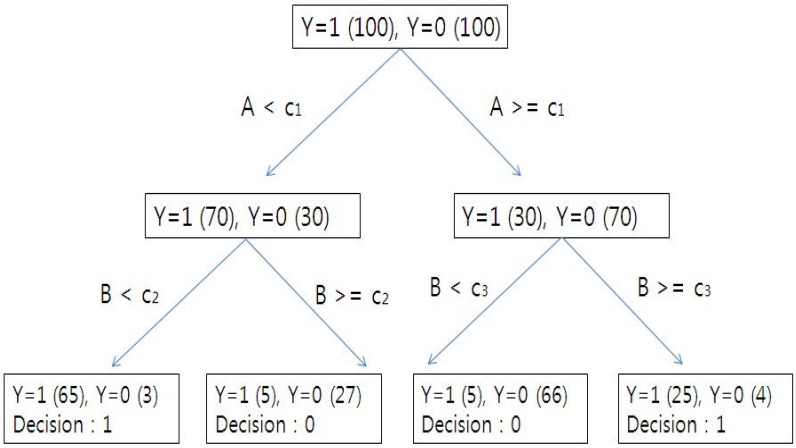

□ 또 다른 방법론으로, 부스팅(Boosting) 알고리즘은 Freund와 Schapire(1997)에 의해 처음으로 분류(Classification)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었으며, 회귀문제와 분류문제 모두에 적용할 수 있고 해석도 용이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음

○ 부스팅 알고리즘에서 basis function 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Stump임

- Stump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로 root node에서 한번만 분기하는 즉 단노드(teminal node)가 두 개인 것을 말함
- 의사결정나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T(x;\Theta) = \sum_{j=1}^{J} \gamma_j I(x \in R_j)$$

- 여기서 R_j은 단노드(teminal node)에서의 서로 배반인 설명변수 영역, $\Theta = \{R_j, \gamma_j\}$ 은 추정해야할 모수를 나타냄

□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부스팅 알고리즘은 위의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부스팅 트리이며, 알고리즘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Initialize $f_0(x) = \underset{\gamma}{\operatorname{argmin}} \sum_{i=1}^{N} L(y_i, \gamma)$

2. For m = 1 to M :

   (a) For $i = 1, 2, \cdots, N$ Compute

   $$\gamma_{im} = -\left[\frac{\partial L(y_i, f(x_i))}{\partial f(x_i)}\right]_{f = f_{m-1}}$$

   (b) Fit a regression tree to the targets γ_{im} giving terminal resions

   $R_{im}, i = 1, 2, \cdots, J_m$

   (c) $\gamma_{jm} = \underset{\gamma}{\operatorname{argmin}} \sum_{x_i \in R_{jm}} L(y_i, f_{m-1}(x_i) + \gamma)$

   (d) Update $f_m(x) = f_{m-1}(x) + \sum_{j=1}^{J_m} \gamma_{jm} I(x \in R_{jm})$

3. Output $\hat{f}(x) = f_M(x)$

□ 모형을 구축한 후에는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수반되며, 구축된 여러 모형들 중에서 오차가 가장 작은 모형을 선택한 후에 선택된 모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침

○ 부스팅에서 모형 산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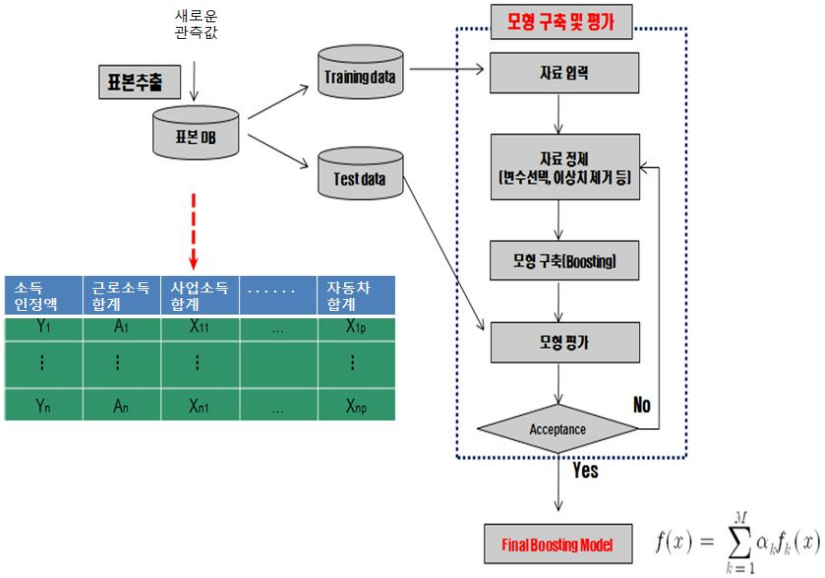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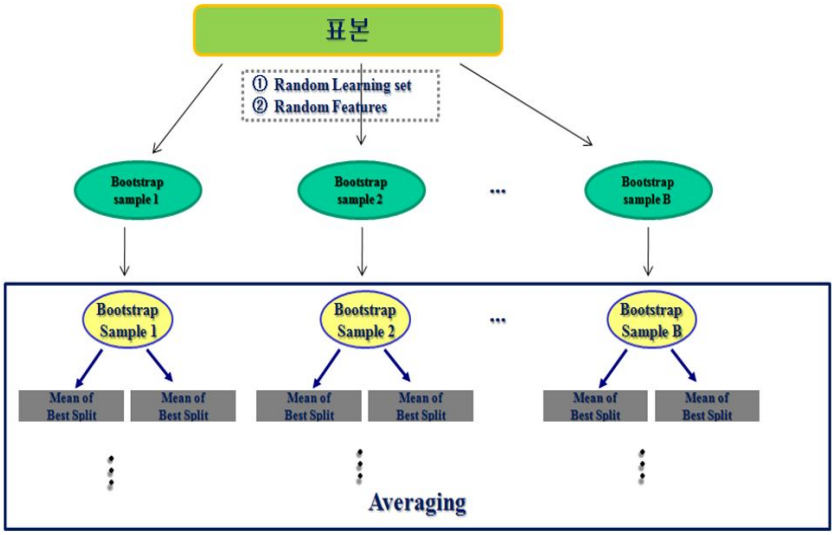

□ 위의 모형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구성한 소득·재산항목별 반영 비중 및 중요도를 분석하여 Relative Influence Plot으로 제시하였음

○ 분석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기준에 따라서 27가지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가구유형(단독, 비노인배우자부부, 노인부부)
- 연령(집단1: 65~69세, 집단2: 70~74세, 집단3: 75세 이상)

1. 소득평가액 vs. 재산의 소득환산액 분석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분하여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를 살펴보았음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 산정과정에서 미치는 상대적 영향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종합적으로, 소득평가액에 비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영향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대도시 지역, 비노인배우자가구, 65~69세 일부 집단들을 제외하고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미치는 영향의 비중이 절대적임

- 이를 바탕으로 기초공제액 확대 등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집단별 상대적 영향 분석결과

- 대도시_단독_연령1(65~59세) 집단은 소득평가액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만, 대도시_단독가구 중에 70~74세(연령2), 75세 이상(연령3)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대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의 경우, 연령1과 연령2 집단은 소득평가액이 절대적인 반면에, 연령3 집단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비중이 약 20%, 소득평가액 약 80% 정도로 나타났음
- 대도시_노인부부의 경우, 연령1 집단에서는 소득평가액의 비중이 약 90%로 나타난 반면에, 연령2와 연령3 집단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나타남
- 중소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가구의 경우에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평가액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영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농어촌의 경우, 가구유형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것을 알 수 있음

○ 대도시_단독_연령1 ☞ 소득평가액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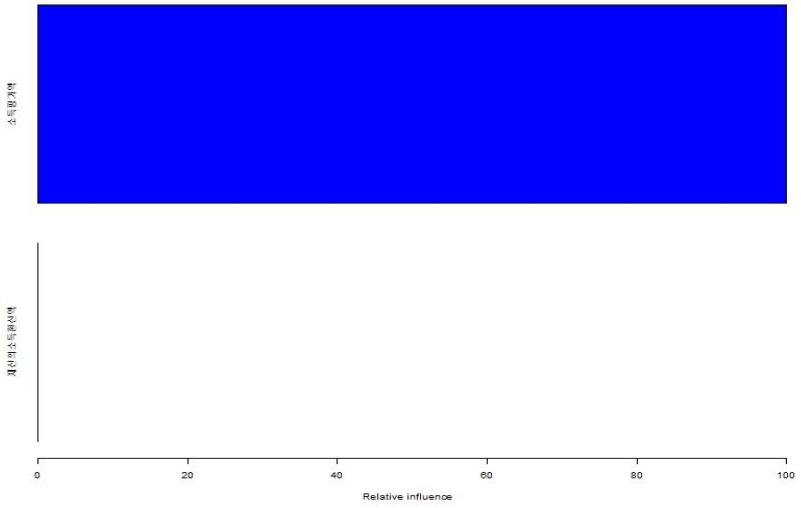

○ 대도시_단독_연령2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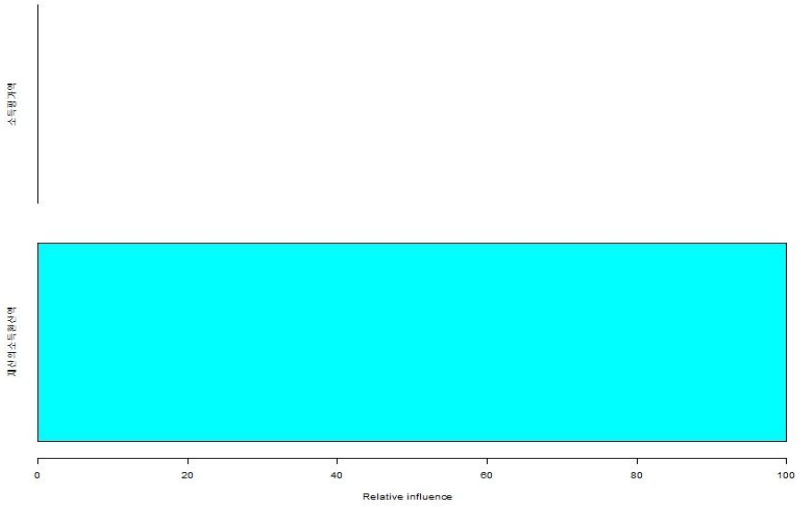

○ 대도시_단독_연령3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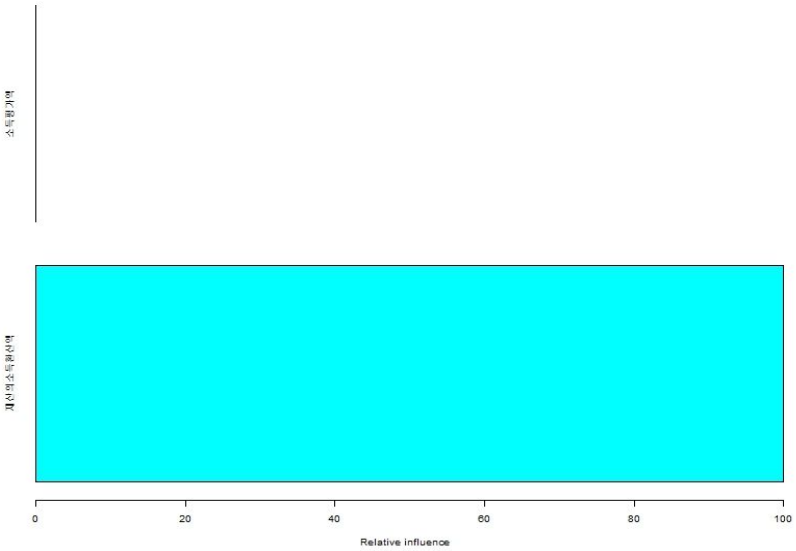

○ 대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1 ☞ 소득평가액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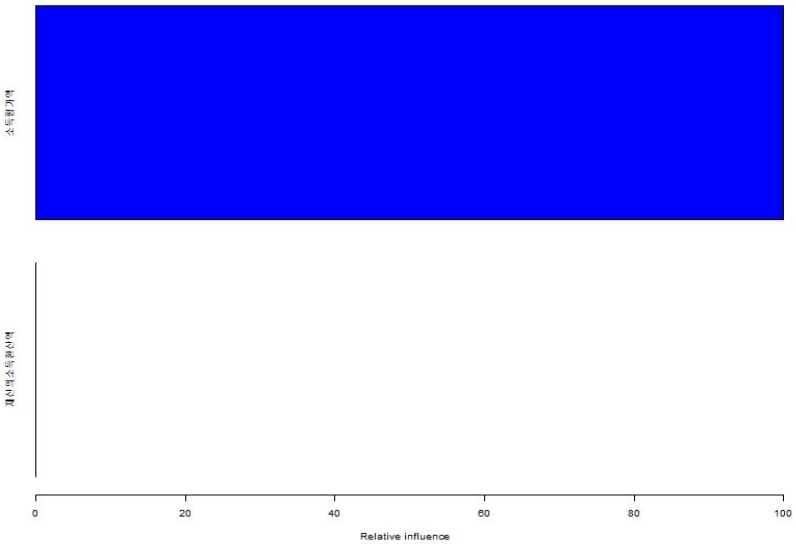

○ 대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2 ☞ 소득평가액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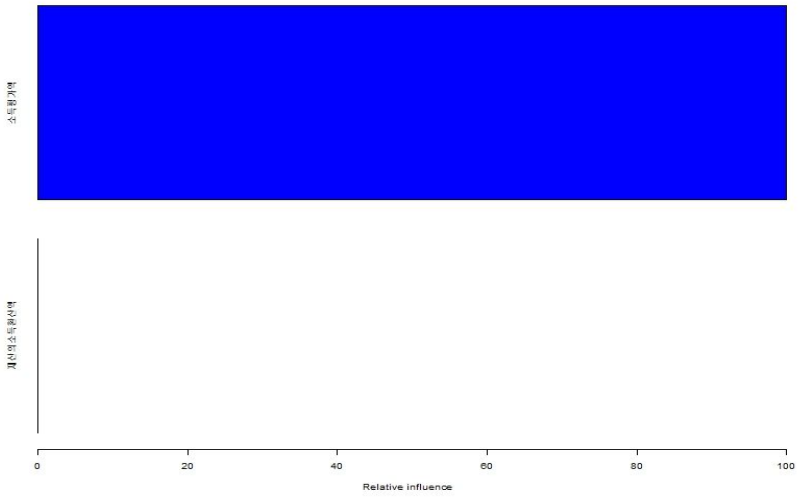

○ 대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3

☞ 소득평가액(78) > 재산의 소득환산액(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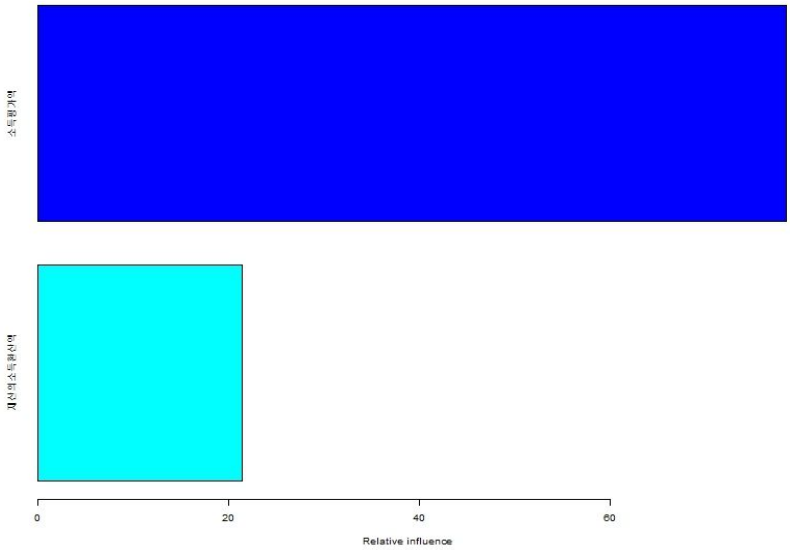

○ 대도시_노인부부_연령1

☞ 소득평가액(86) > 재산의 소득환산액(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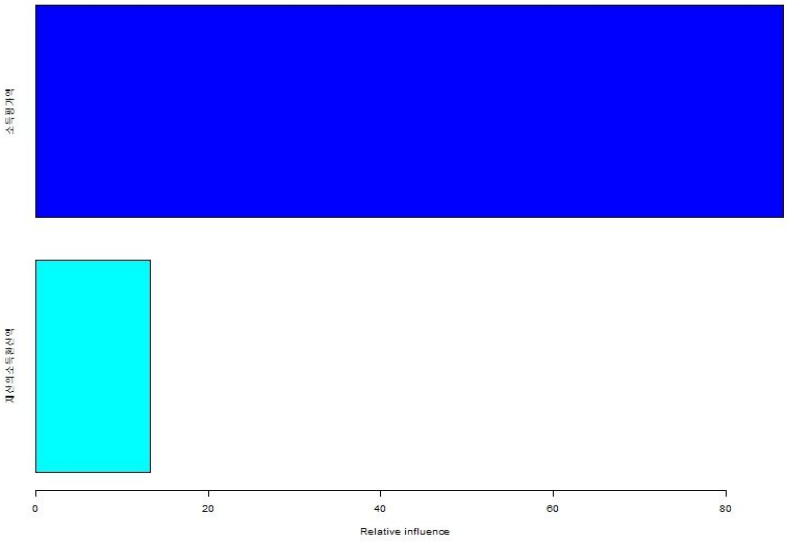

○ 대도시_노인부부_연령2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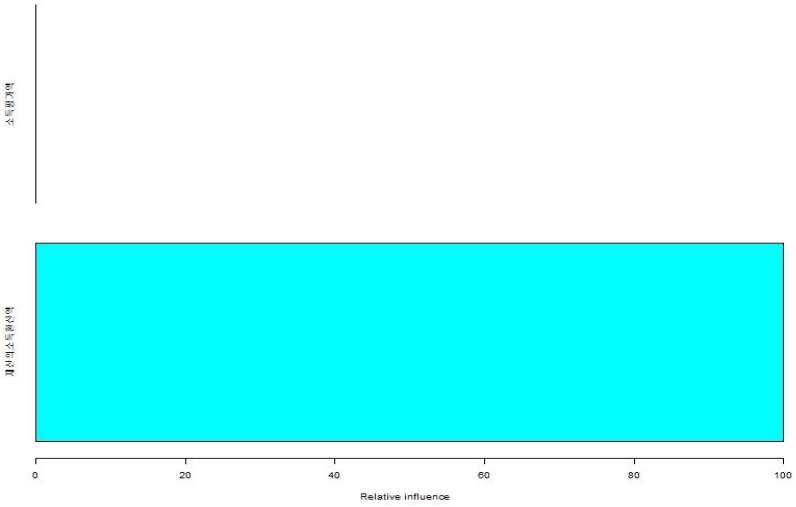

○ 대도시_노인부부_연령3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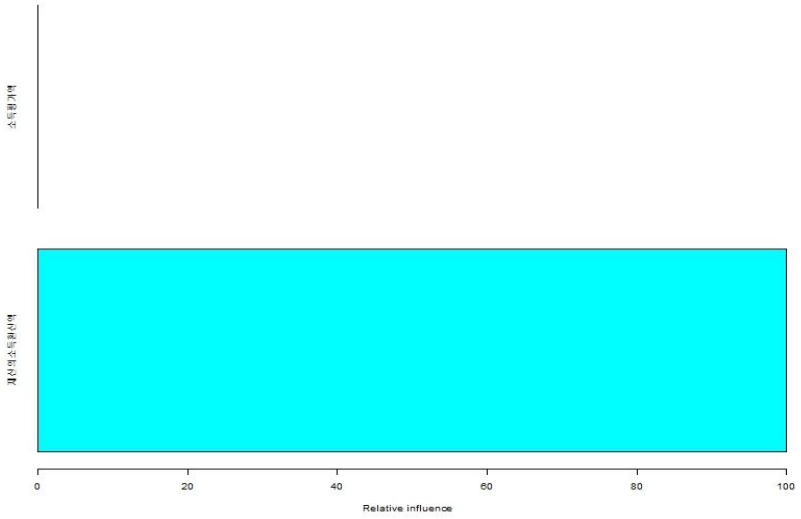

○ 중소도시_단독_연령1

☞ 소득평가액(46) < 재산의 소득환산액(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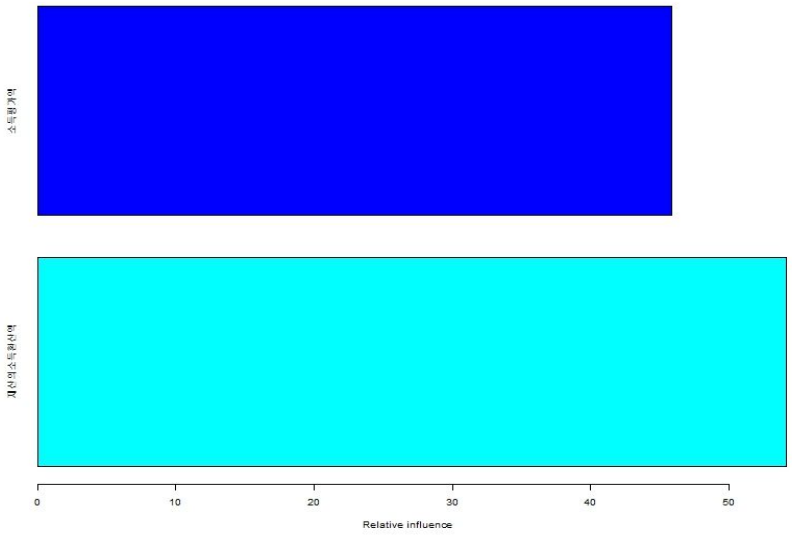

○ 중소도시_단독_연령2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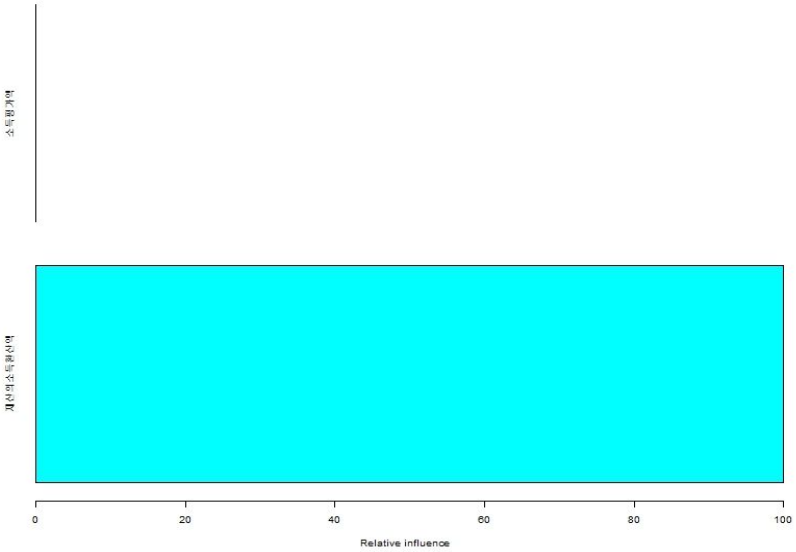

○ 중소도시_단독_연령3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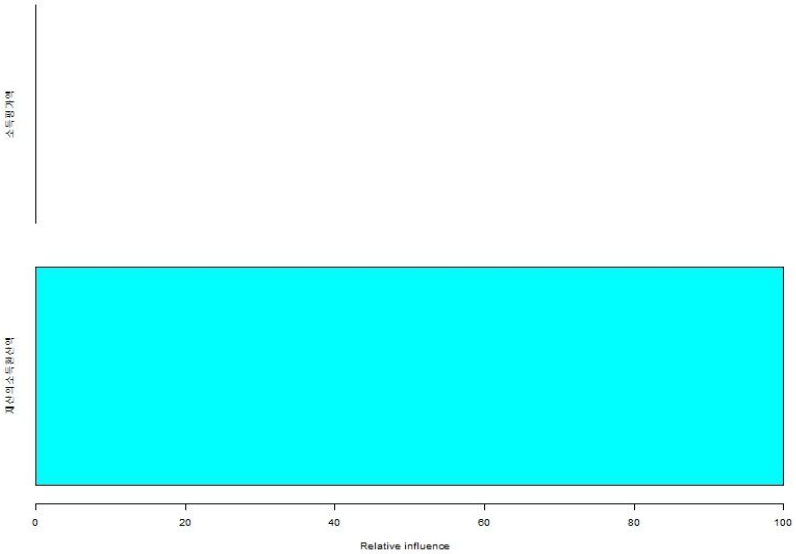

○ 중소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1

☞ 소득평가액(85) > 재산의 소득환산액(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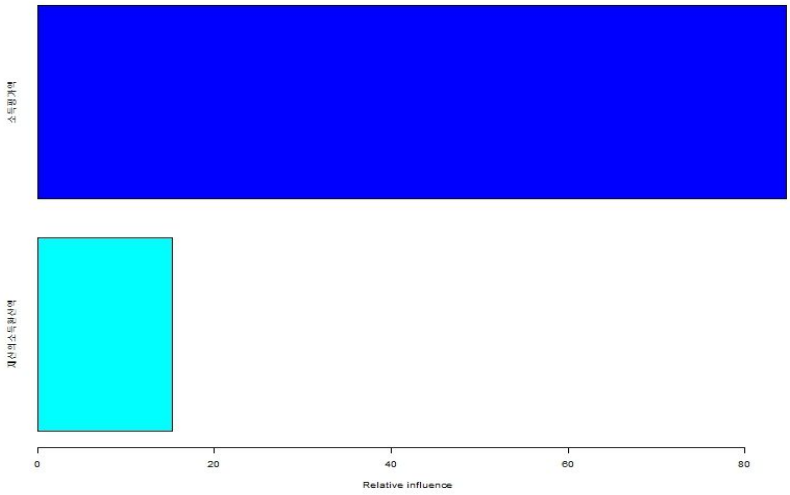

○ 중소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2

☞ 소득평가액(36) < 재산의 소득환산액(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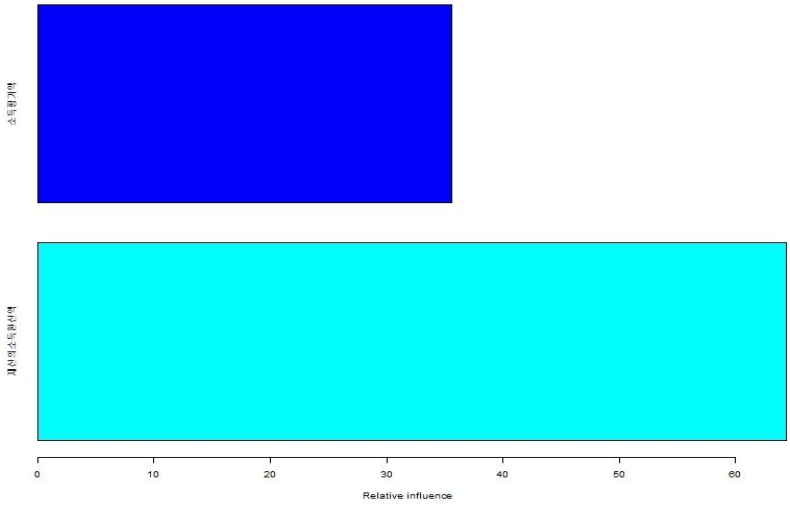

○ 중소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3

☞ 소득평가액(22) < 재산의 소득환산액(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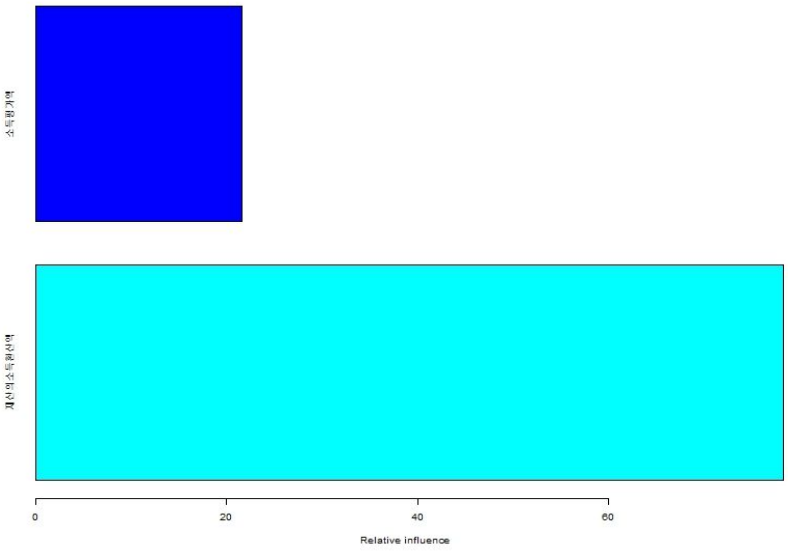

○ 중소도시_노인부부_연령1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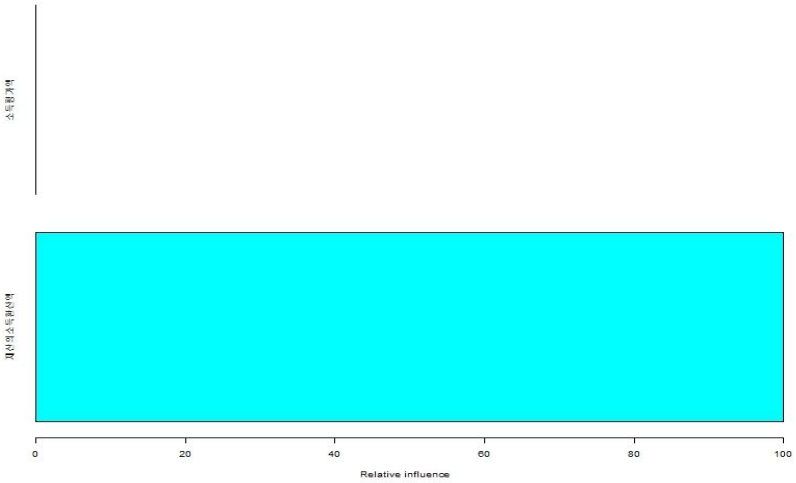

○ 중소도시_노인부부_연령2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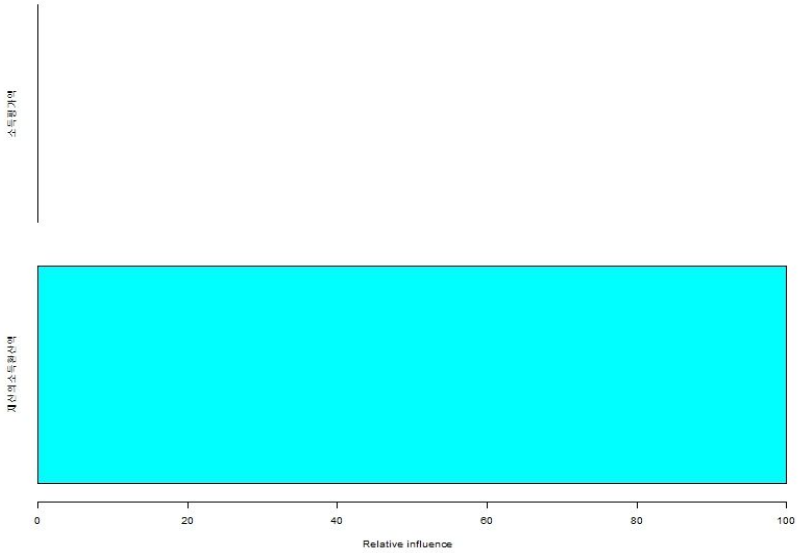

○ 중소도시_노인부부_연령3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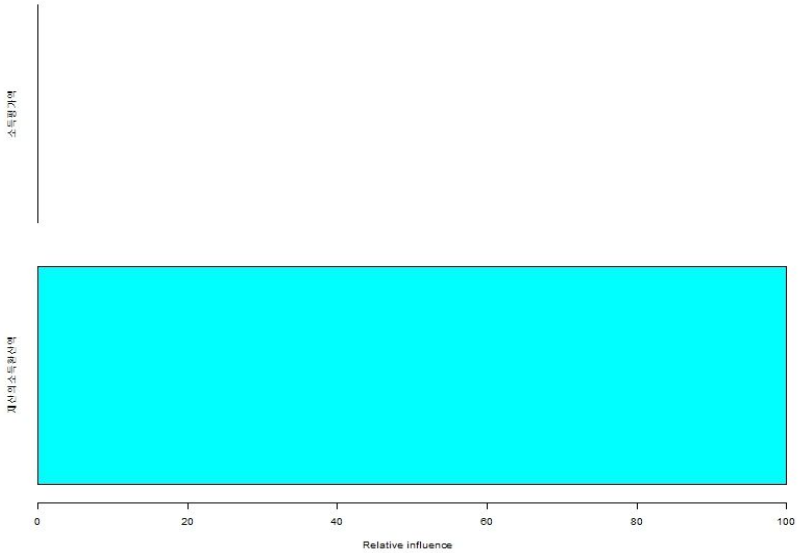

○ 농어촌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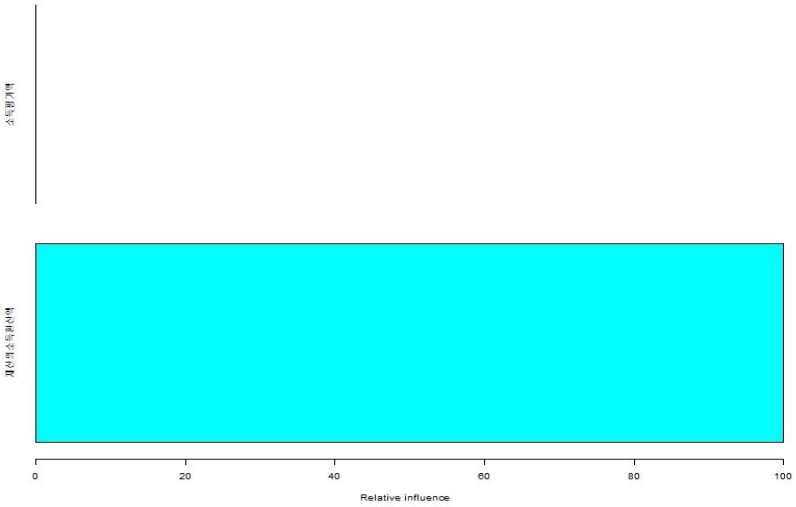

2. 소득평가액 구성항목별 상대적 영향 분석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는데, 4가지 항목이 소득평가액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의 비중 및 중요도를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 소득평가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가구유형, 연령에 따라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소득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없었으며, 이것은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소득평가액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음

- 소득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소득항목은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임
- 대도시 일부 집단, 비노인배우자부부가구 또는 65~69세 연령집단의 경우는 근로소득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대부분의 집단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이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단독가구에서 연령이 높아지면서 근로소득보다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비노인배우자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노인단독가구와는 다서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 대도시_단독_연령1 ☞ 근로소득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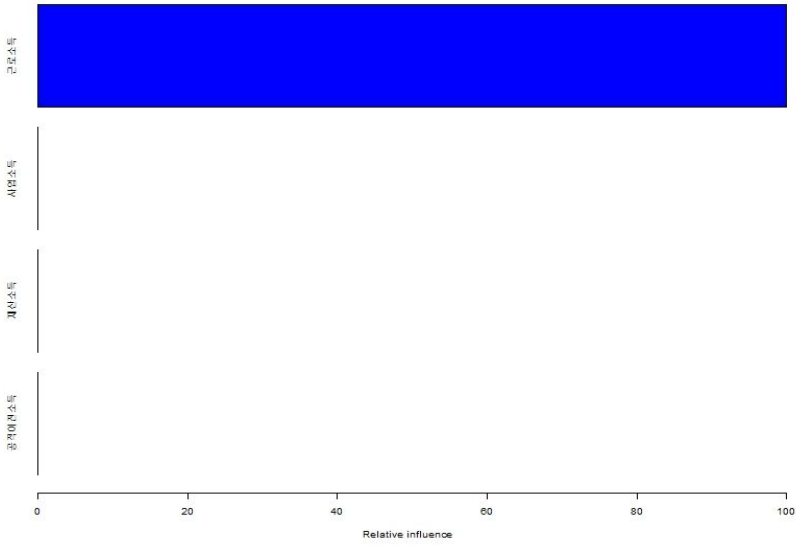

○ 대도시_단독_연령2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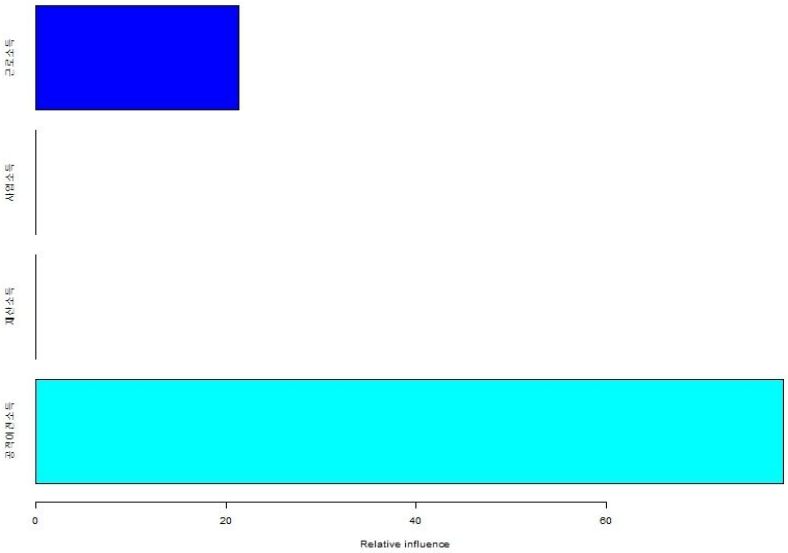

○ 대도시_단독_연령3 ☞ 공적이전소득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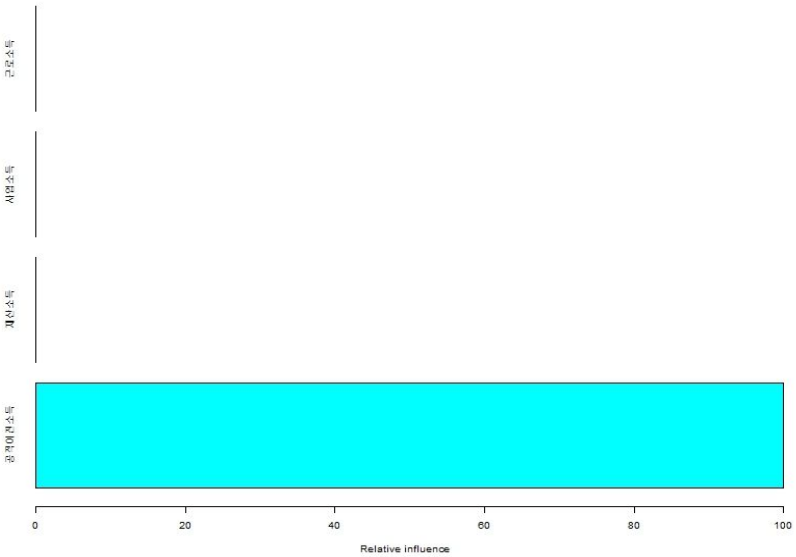

○ 대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1 ☞ 공적이전소득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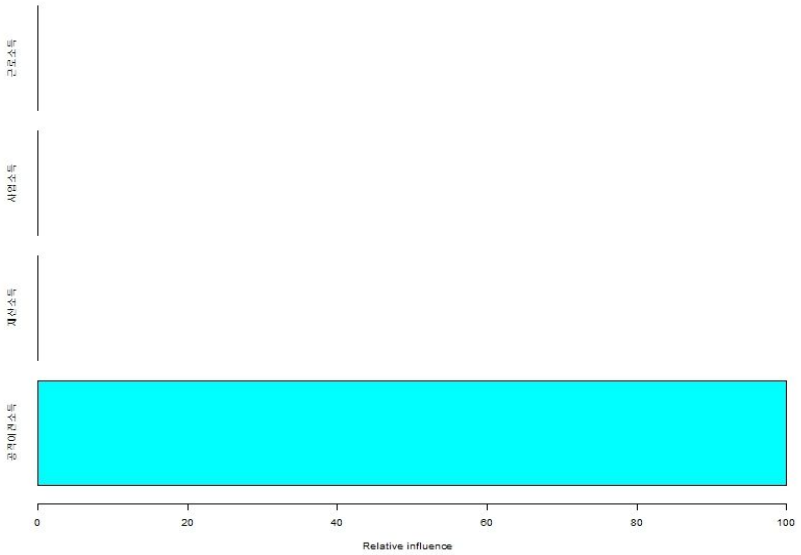

○ 대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2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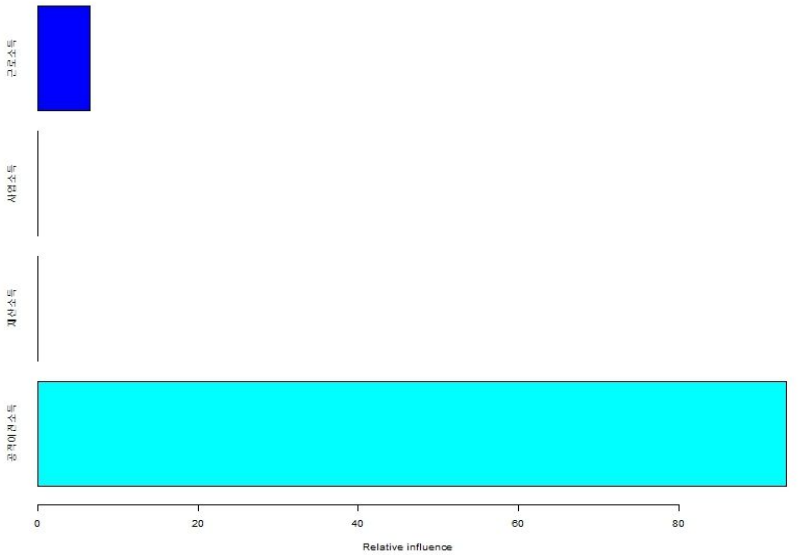

○ 대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3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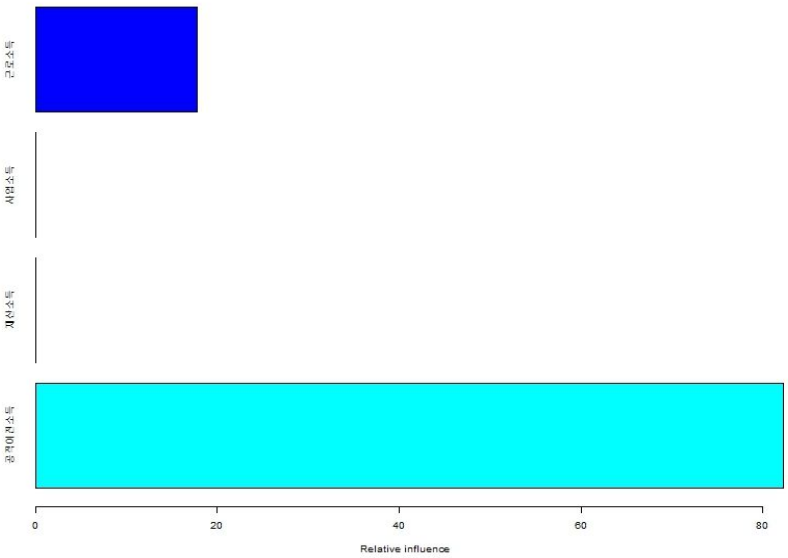

○ 대도시_노인부부_연령1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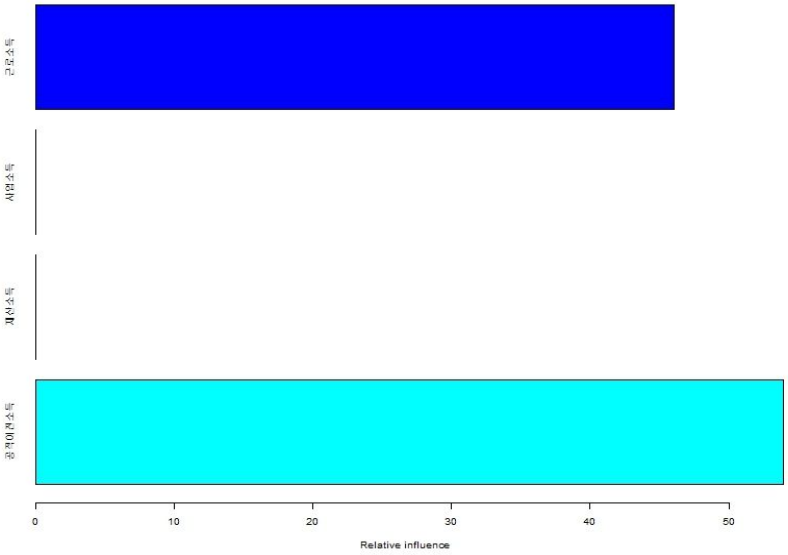

○ 대도시_노인부부_연령2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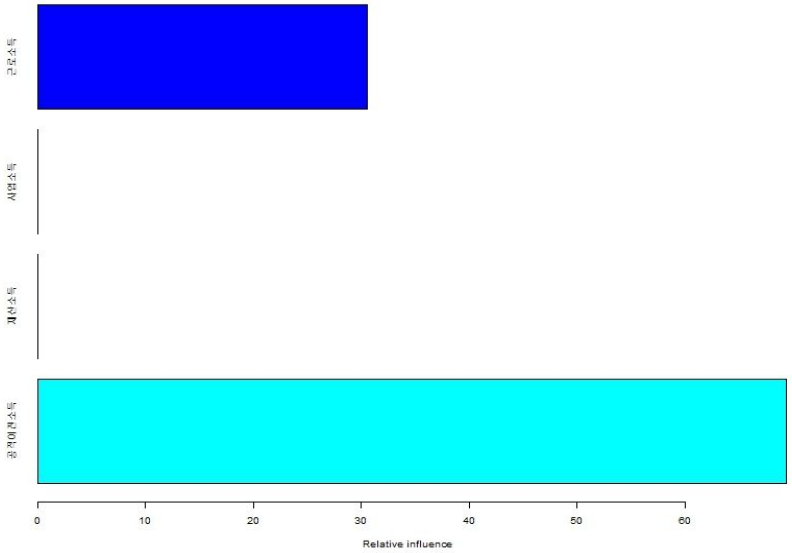

○ 대도시_노인부부_연령3 ☞ 공적이전소득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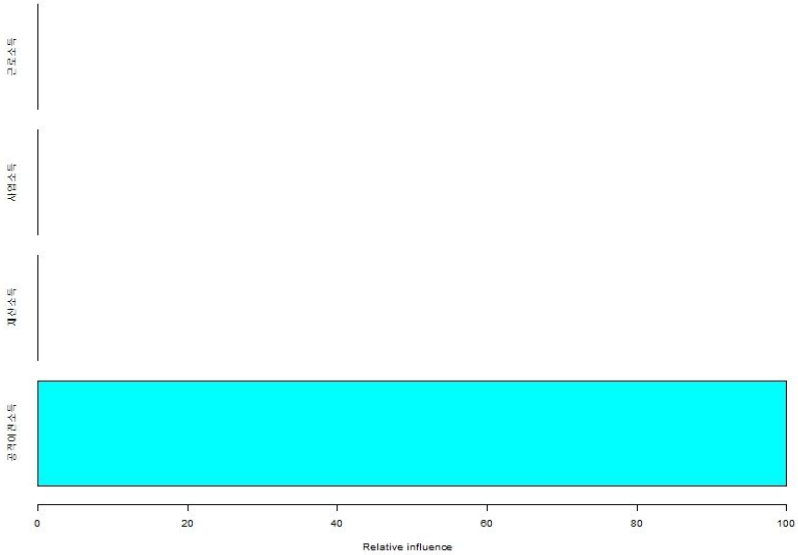

○ 중소도시_단독_연령1 ☞ 근로소득 > 공적이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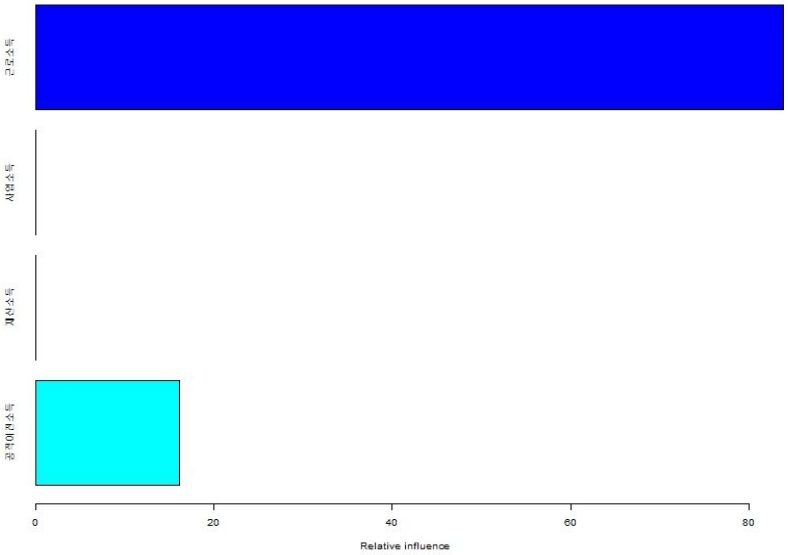

○ 중소도시_단독_연령2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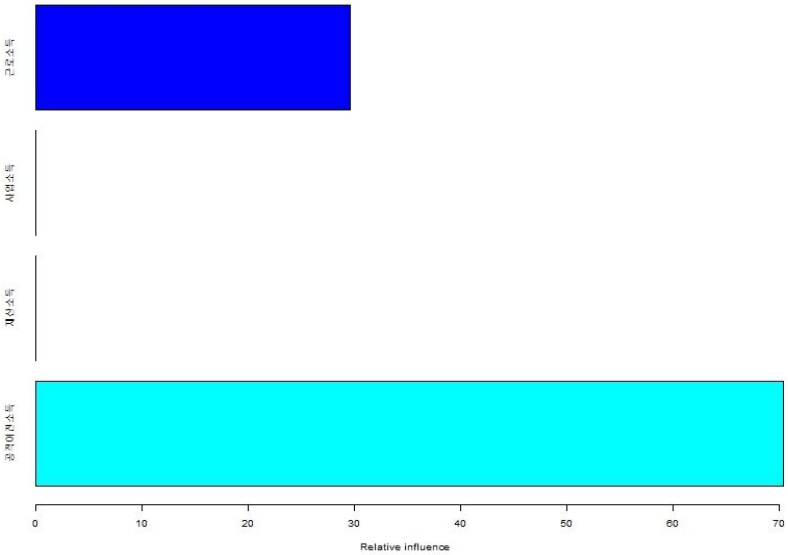

○ 중소도시_단독_연령3 ☞ 공적이전소득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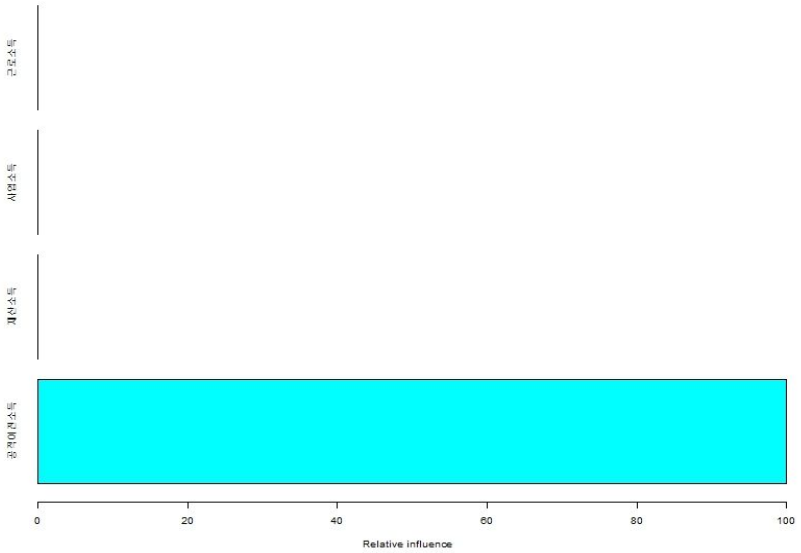

○ 중소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1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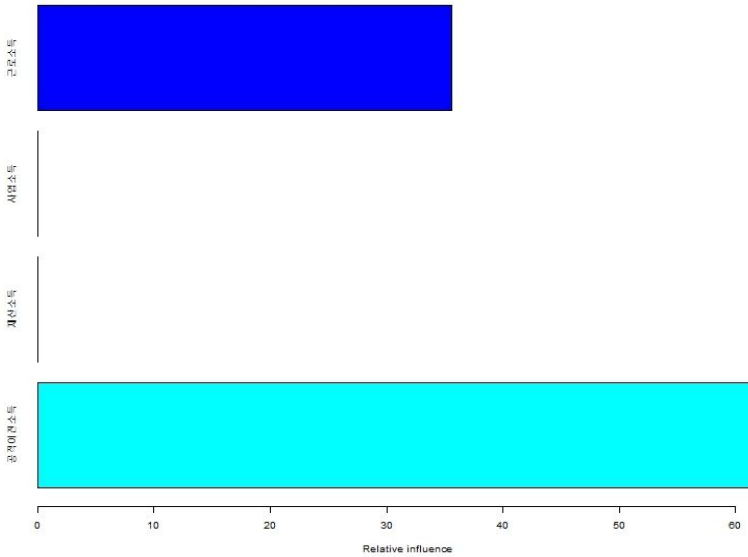

○ 중소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2 ☞ 근로소득 > 공적이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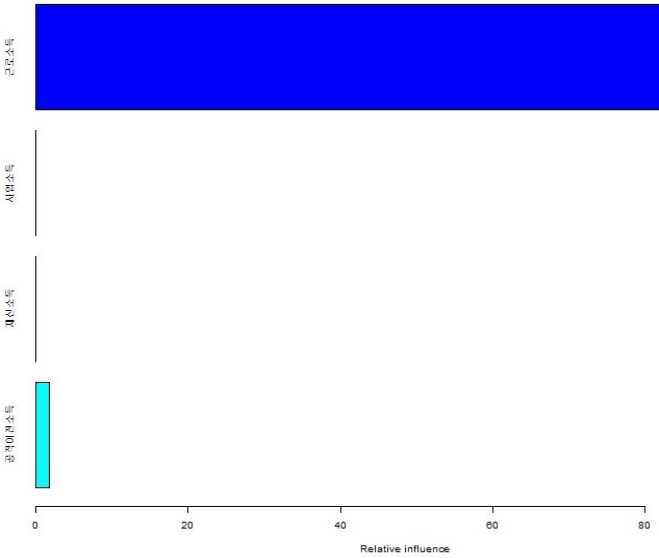

○ 중소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3 ☞ 근로소득 > 공적이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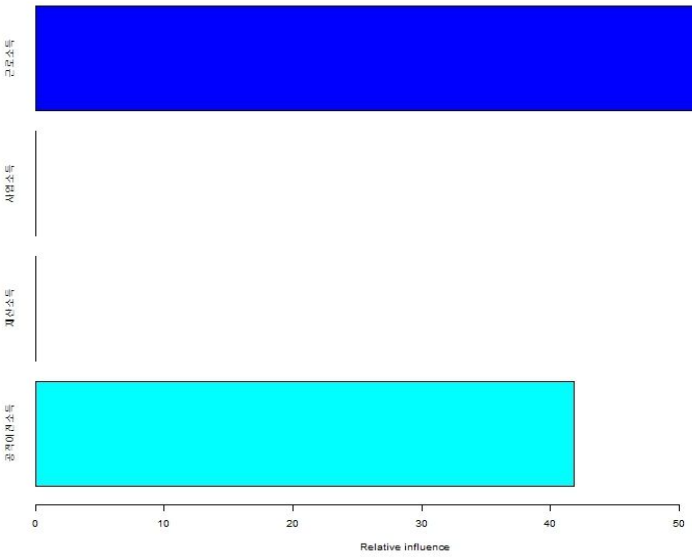

○ 중소도시_노인부부_연령1 ☞ 근로소득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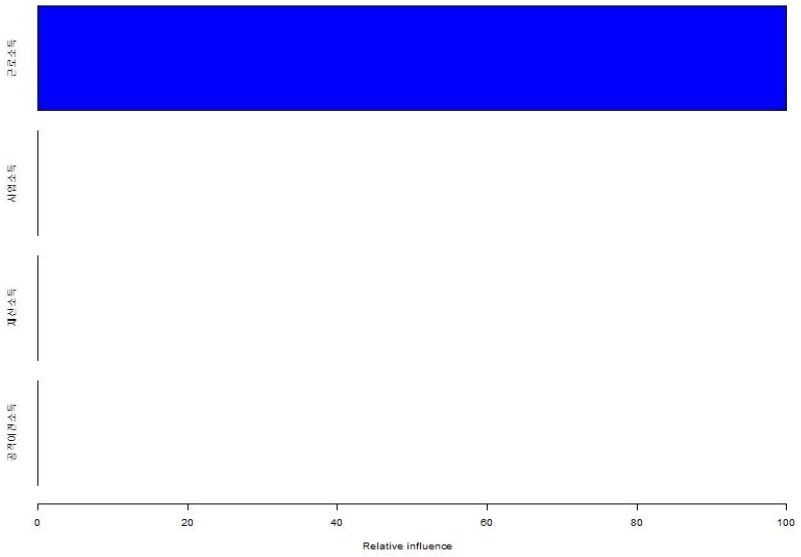

○ 중소도시_노인부부_연령2 ☞ 근로소득 > 공적이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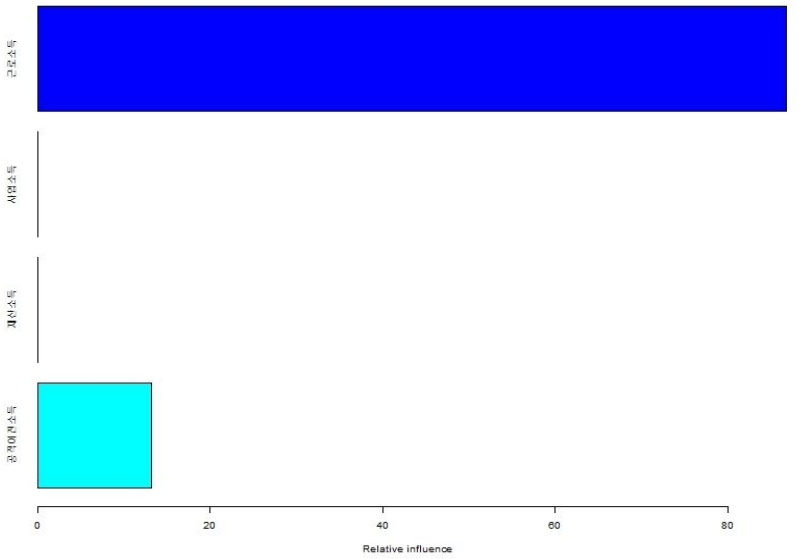

○ 중소도시_노인부부_연령3 ☞ 공적이전소득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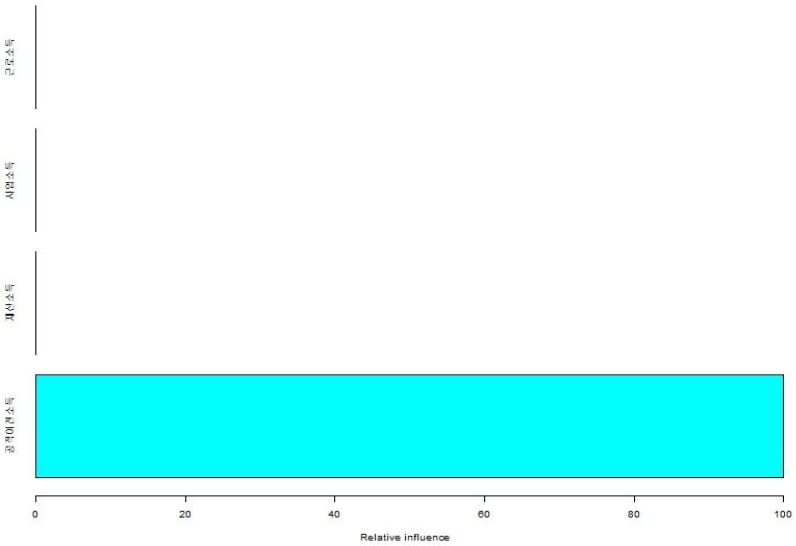

○ 농어촌_단독_연령1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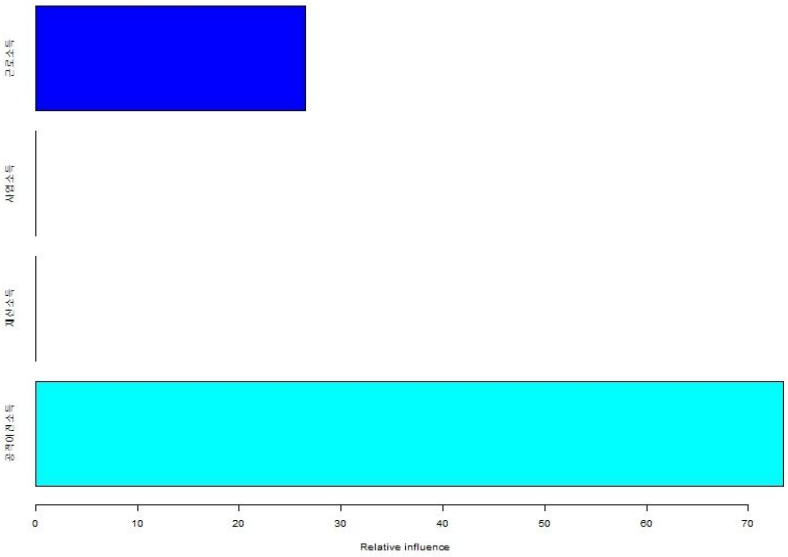

○ 농어촌_단독_연령2 ☞ 공적이전소득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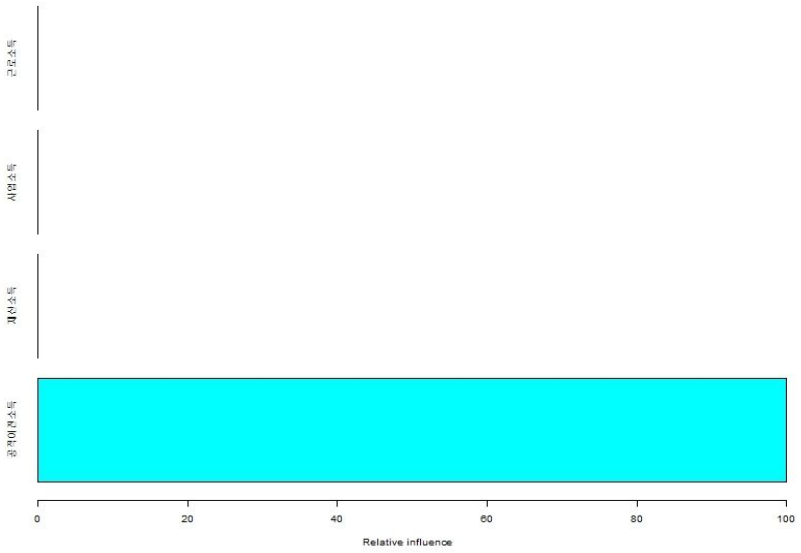

○ 농어촌_단독_연령3 ☞ 공적이전소득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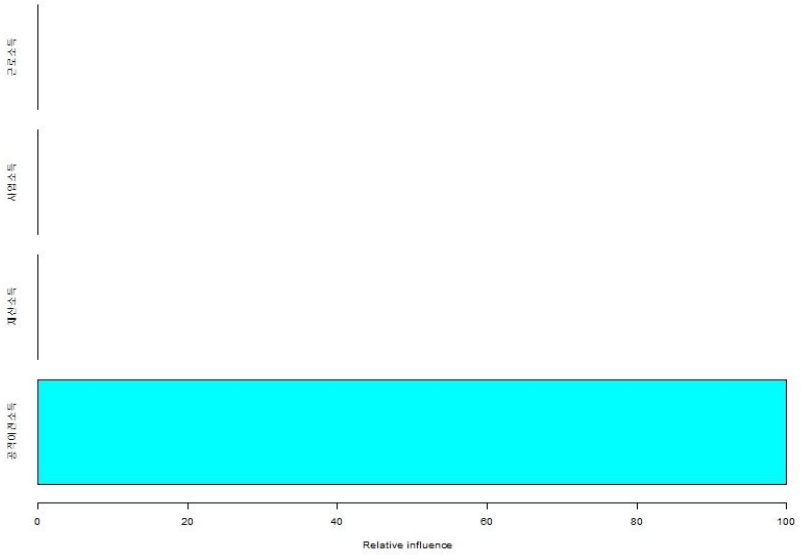

○ 농어촌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1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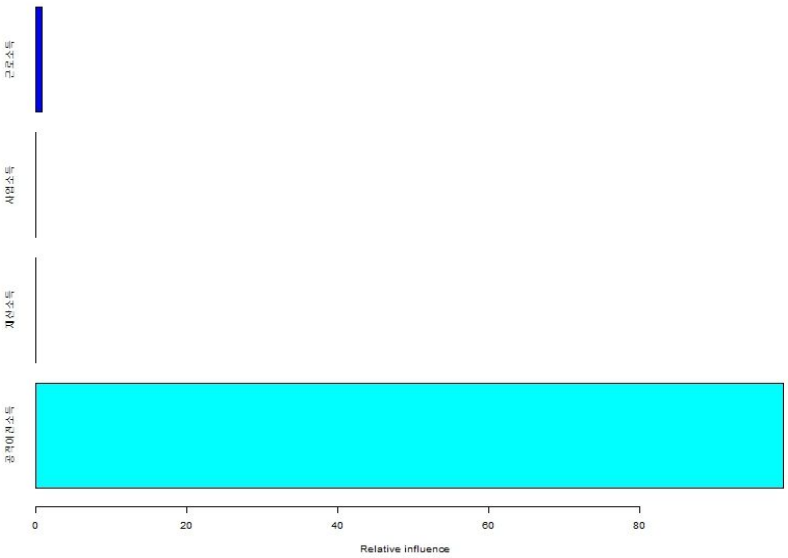

○ 농어촌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2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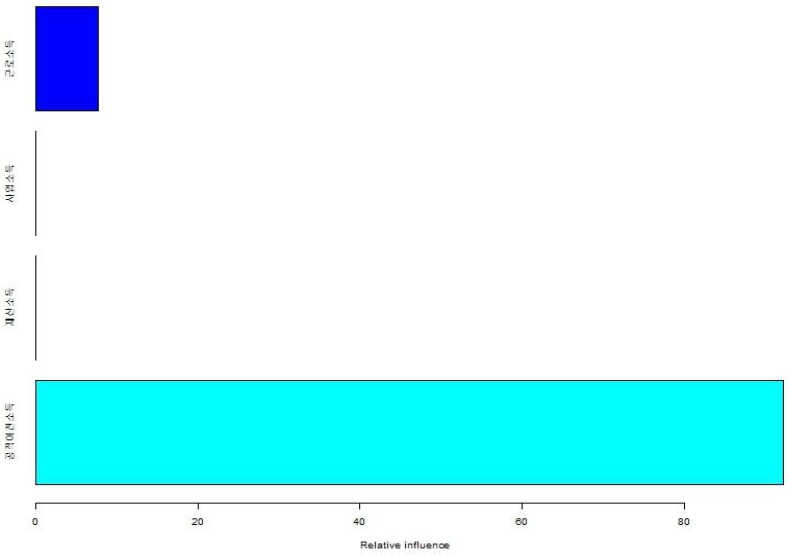

○ 농어촌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3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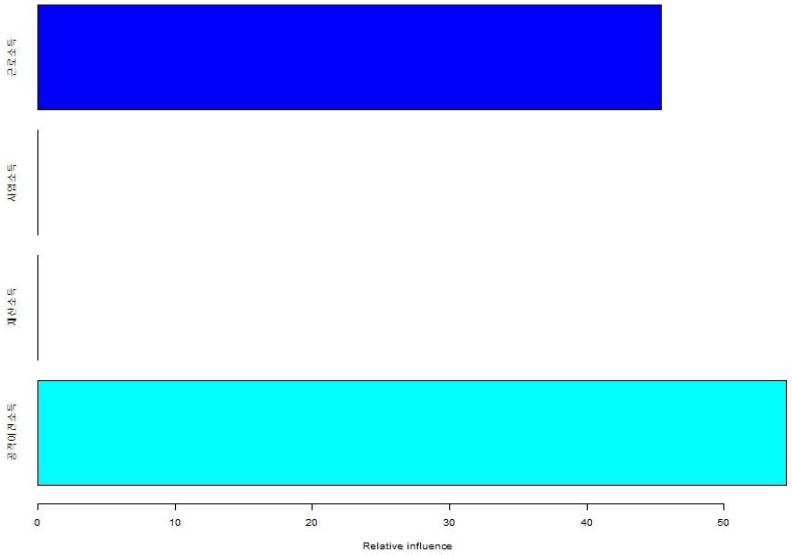

○ 농어촌_노인부부_연령1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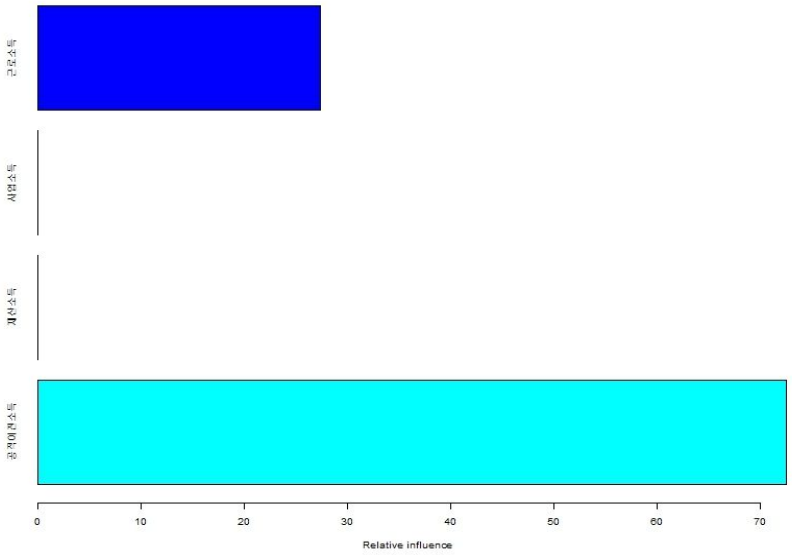

○ 농어촌_노인부부_연령2 ☞ 공적이전소득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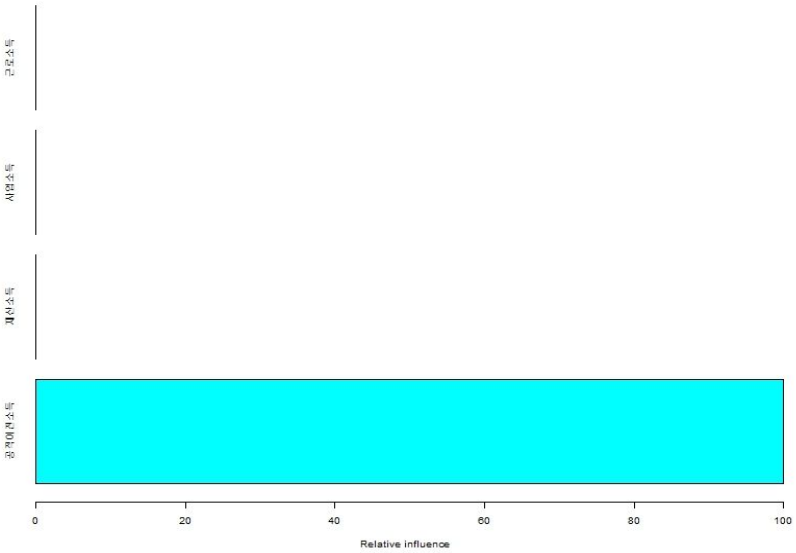

○ 농어촌_노인부부_연령3 ☞ 공적이전소득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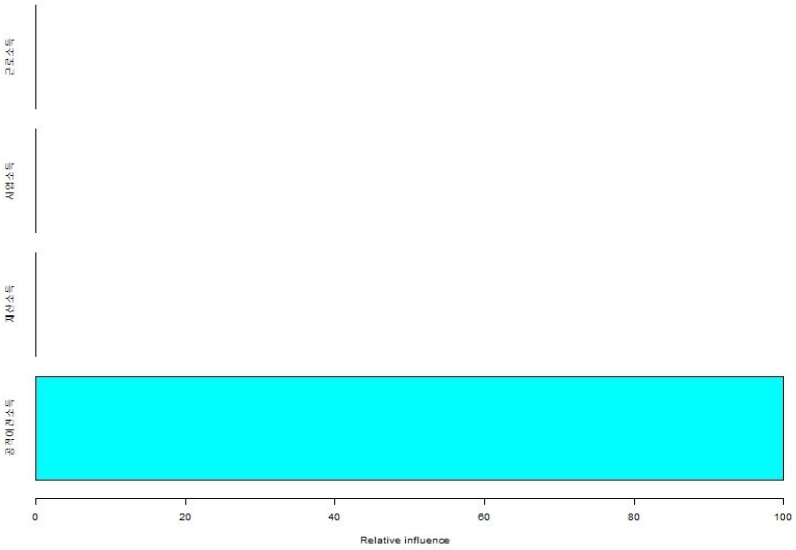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성항목별 상대적 영향 분석

□ 마지막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성항목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분석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로 구성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별로 상대적 영향의 비중 및 중요도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금융재산, 주택, 토지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지역, 가구유형, 연령에 따라 구분한 대부분의 하위 집단에서 금융재산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나타났음
- 일부 집단에서는 주택이나 토지의 영향이 금융재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대도시_단독_연령3 집단에서는 주택이, 중소도시_노인부부_연령3 집단의 경우는 토지의 영향이 금융재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소득평가액에 비해 전반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면,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수준이나 일반재산에 대한 기초공제액 확대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대도시_단독_연령1 ☞ 금융재산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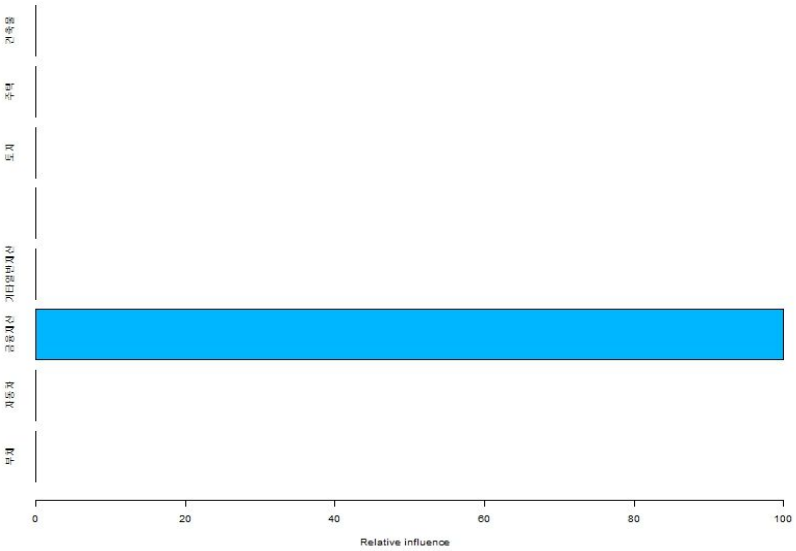

○ 대도시_단독_연령2 ☞ 금융재산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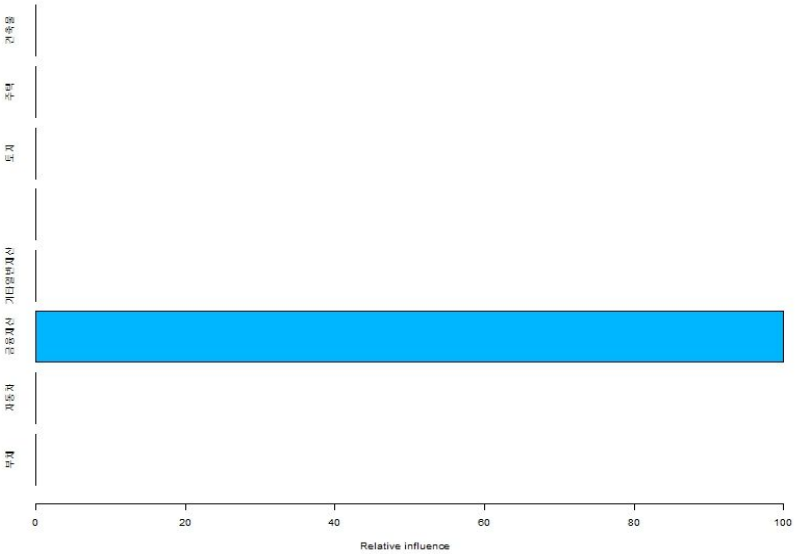

○ 대도시_단독_연령3 ☞ 주택 > 금융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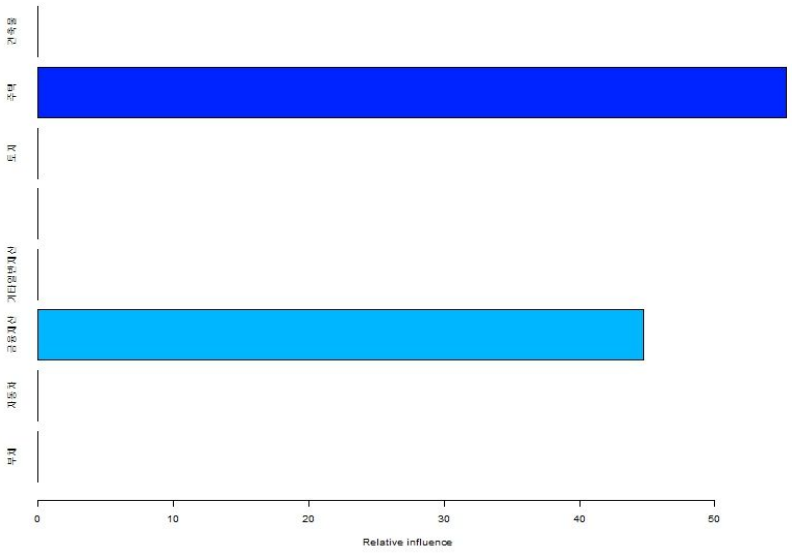

○ 대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1 ☞ 금융재산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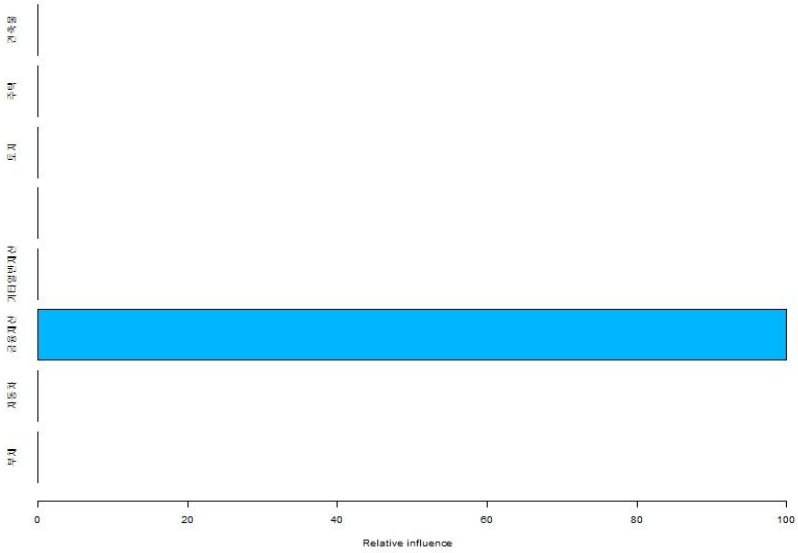

○ 대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2 ☞ 금융재산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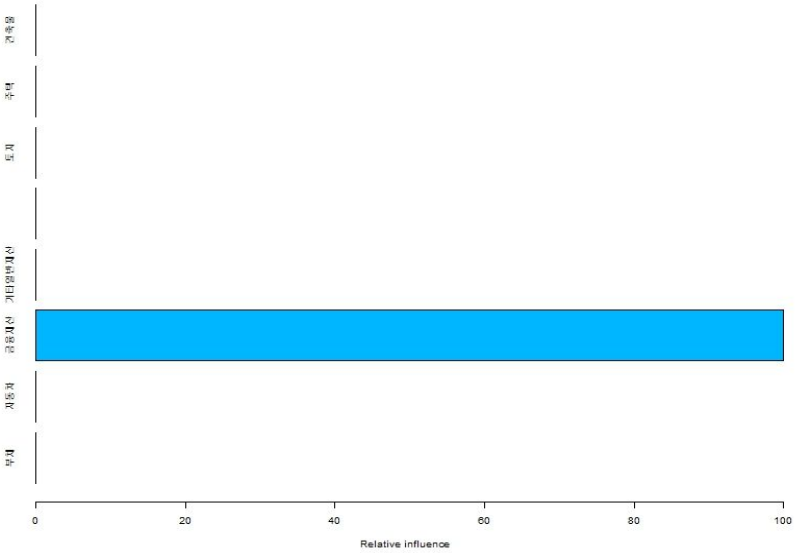

○ 대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3 ☞ 금융재산 >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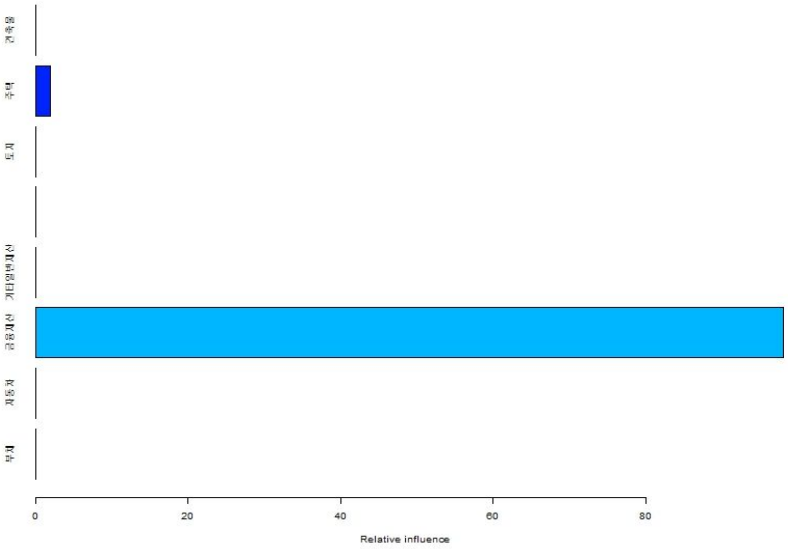

○ 대도시_노인부부_연령1 ☞ 금융재산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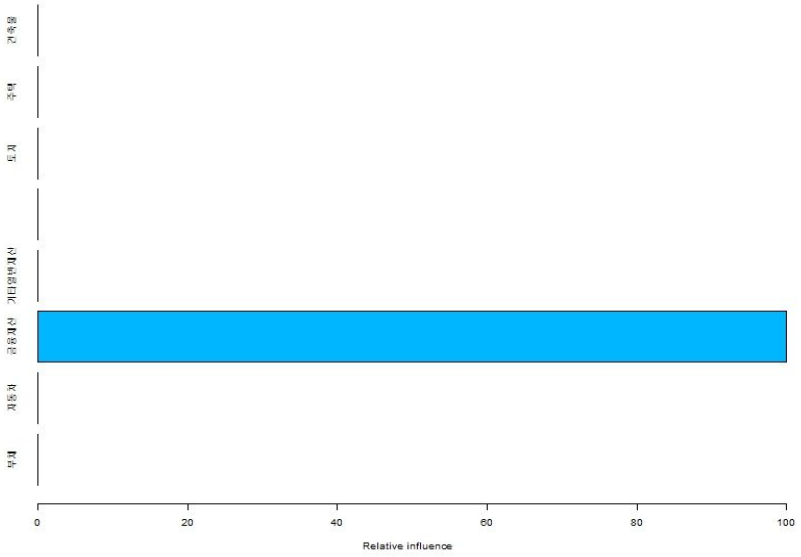

○ 대도시_노인부부_연령2 ☞ 금융재산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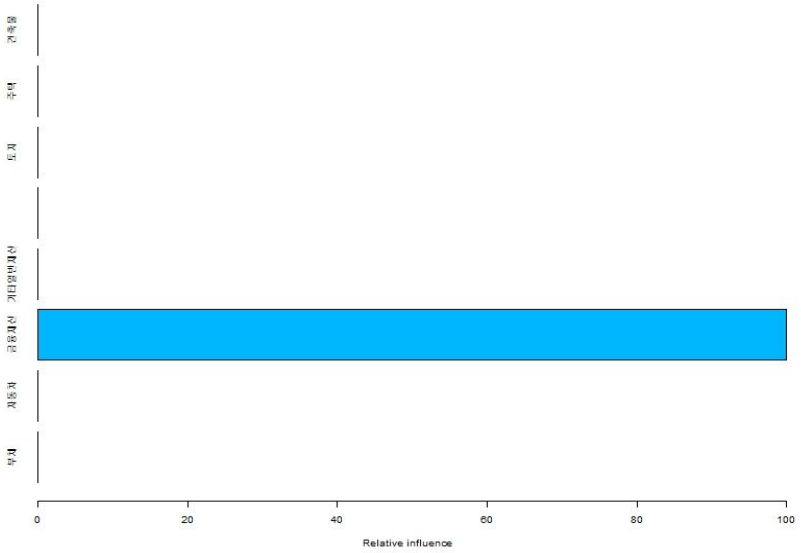

○ 대도시_노인부부_연령3 ☞ 금융재산 >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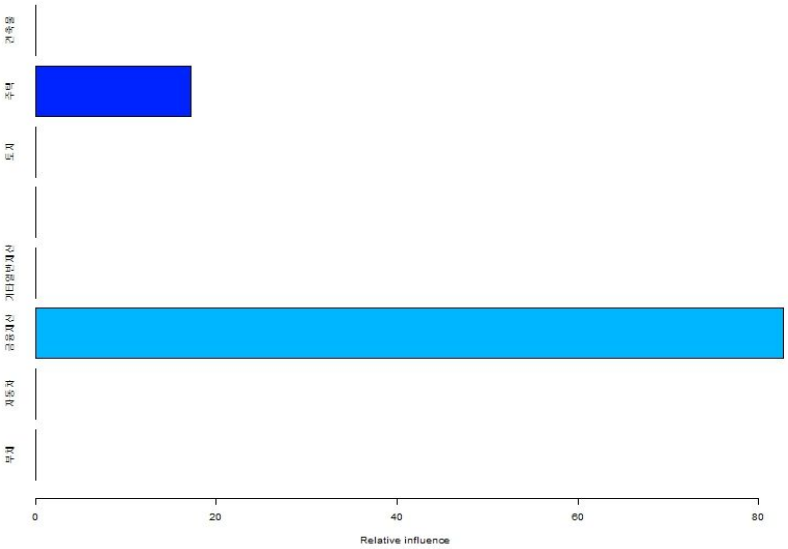

○ 중소도시_단독_연령1 ☞ 금융재산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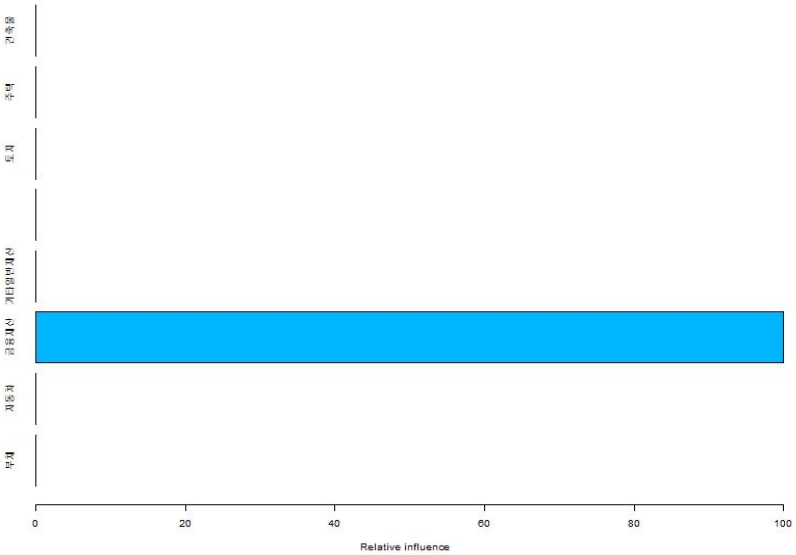

○ 중소도시_단독_연령2 ☞ 금융재산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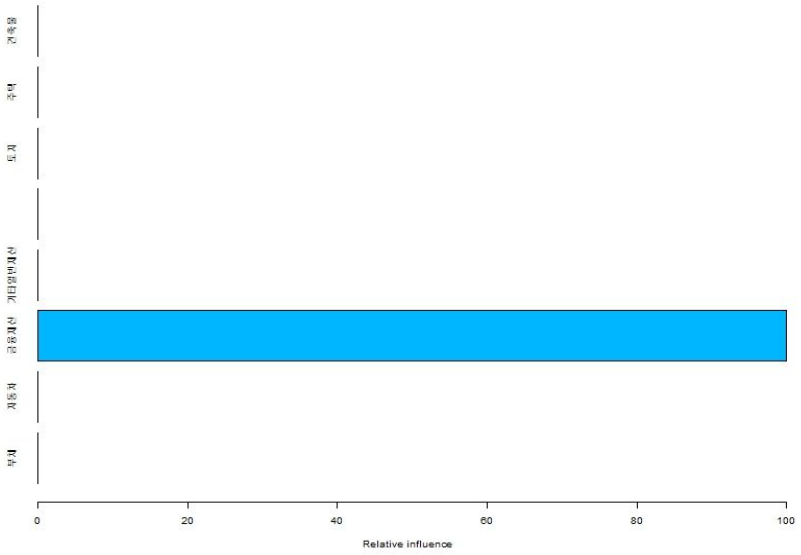

○ 중소도시_단독_연령3 ☞ 금융재산 >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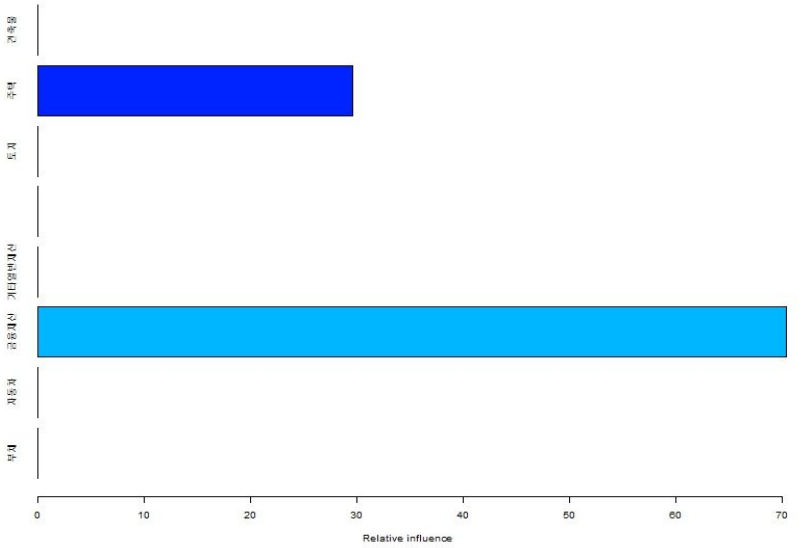

○ 중소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1 ☞ 금융재산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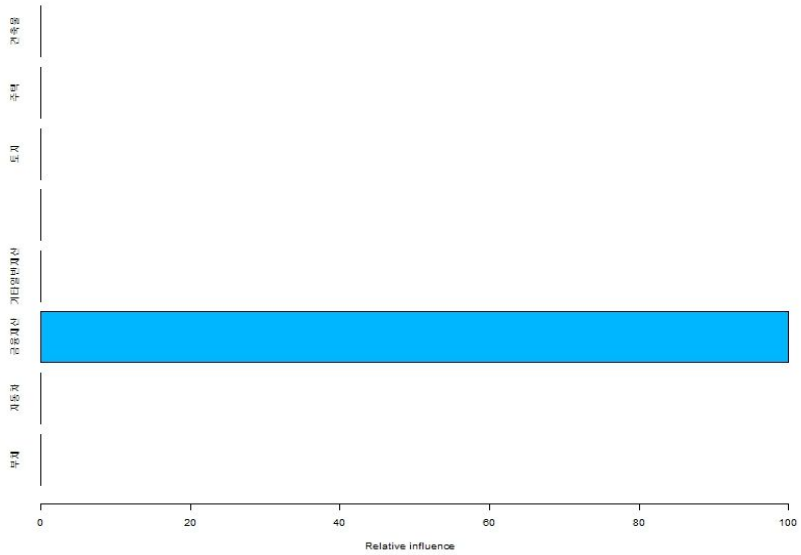

○ 중소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2 ☞ 금융재산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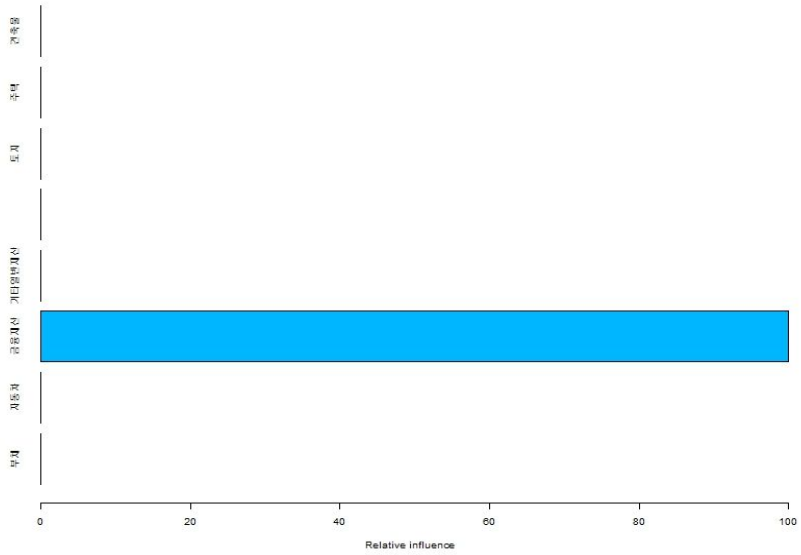

○ 중소도시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3 ☞ 금융재산 >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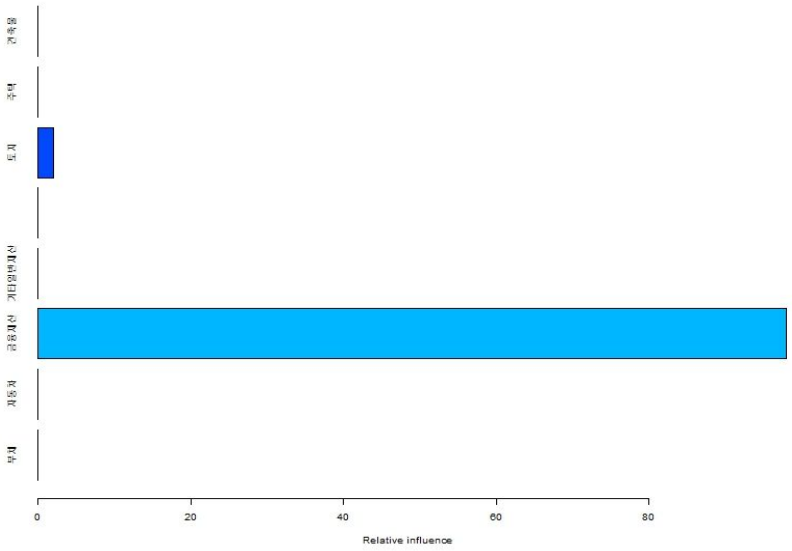

○ 중소도시_노인부부_연령1 ☞ 금융재산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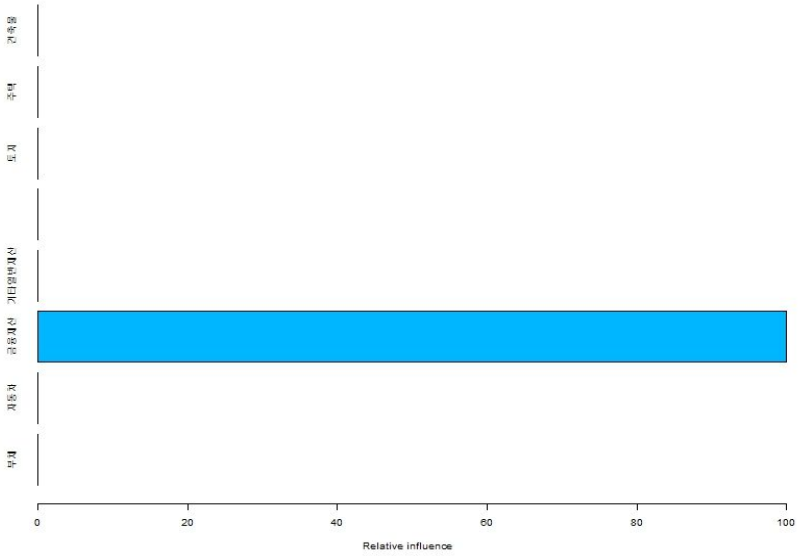

○ 중소도시_노인부부_연령2 ☞ 금융재산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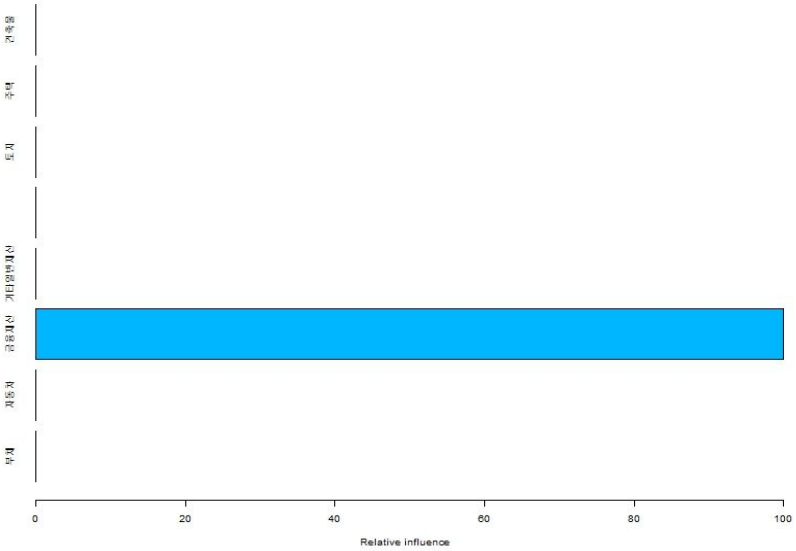

○ 중소도시_노인부부_연령3 ☞ 토지 > 금융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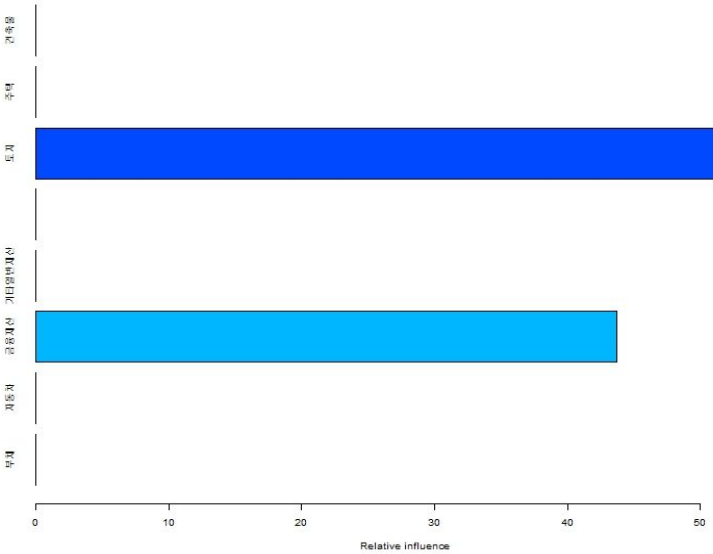

○ 농어촌_단독_연령1 ☞ 금융재산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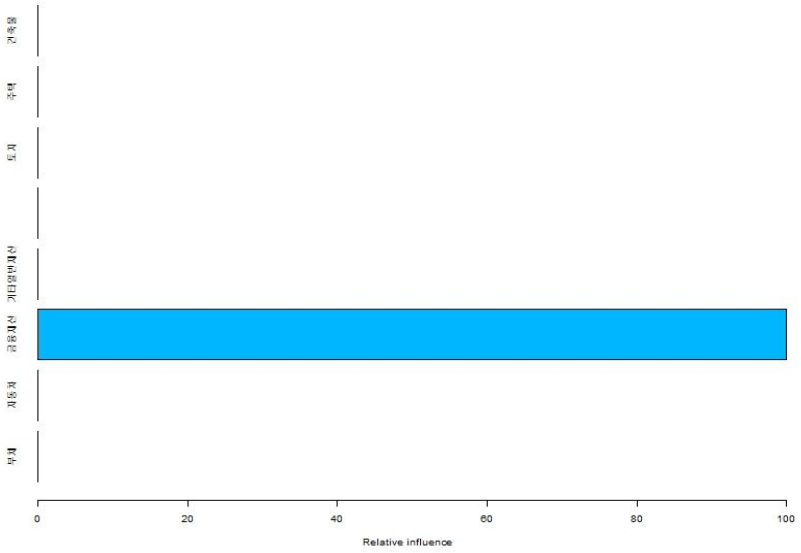

○ 농어촌_단독_연령2 ☞ 금융재산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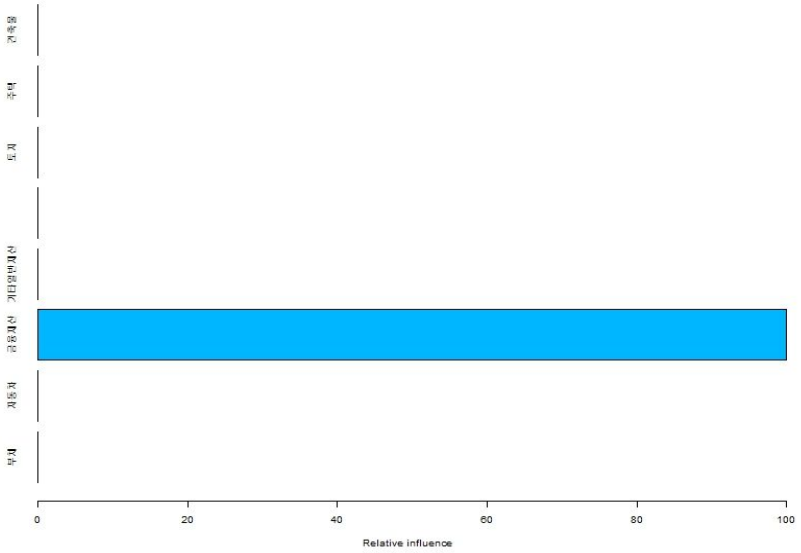

○ 농어촌_단독_연령3 ☞ 금융재산 >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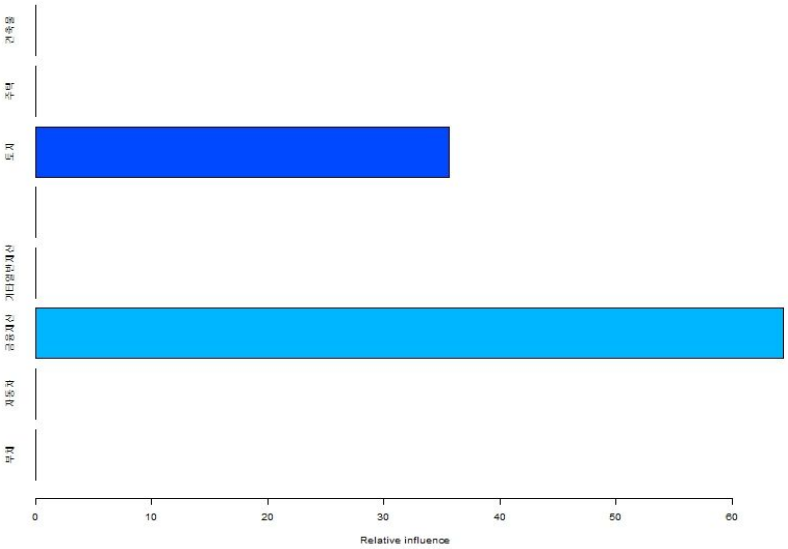

○ 농어촌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1 ☞ 금융재산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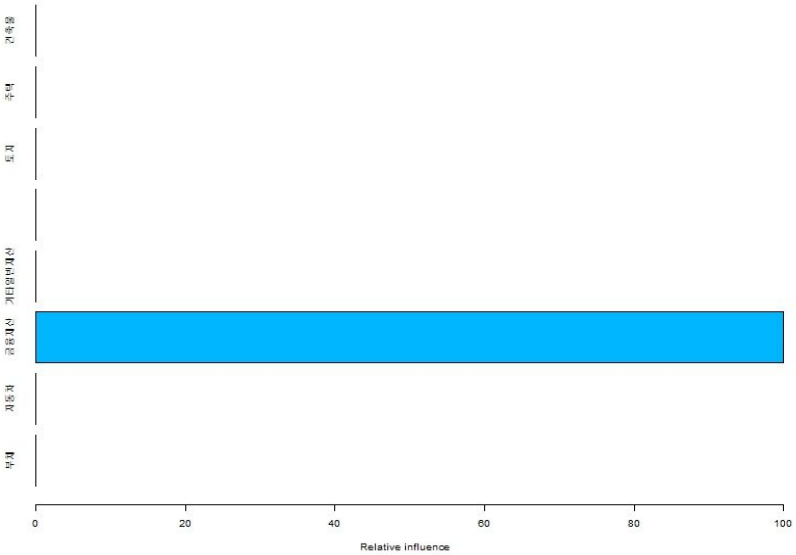

○ 농어촌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2 ☞ 금융재산 >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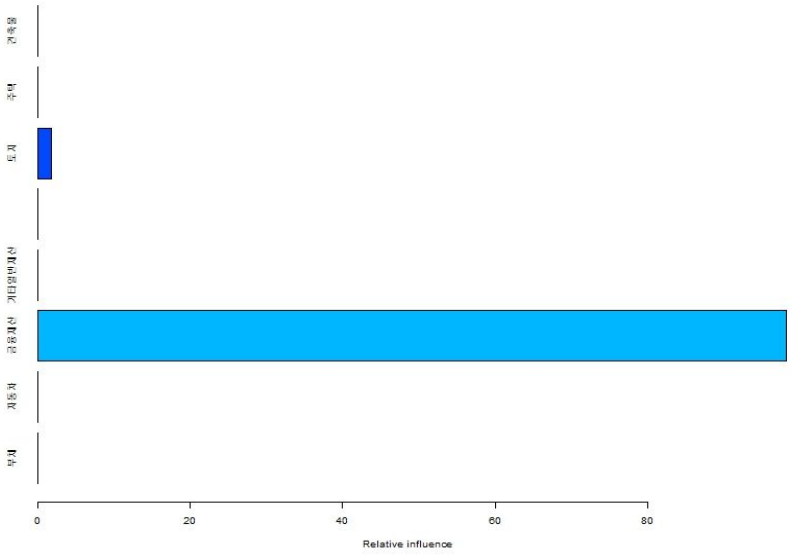

○ 농어촌_비노인배우자부부_연령3 ☞ 금융재산 >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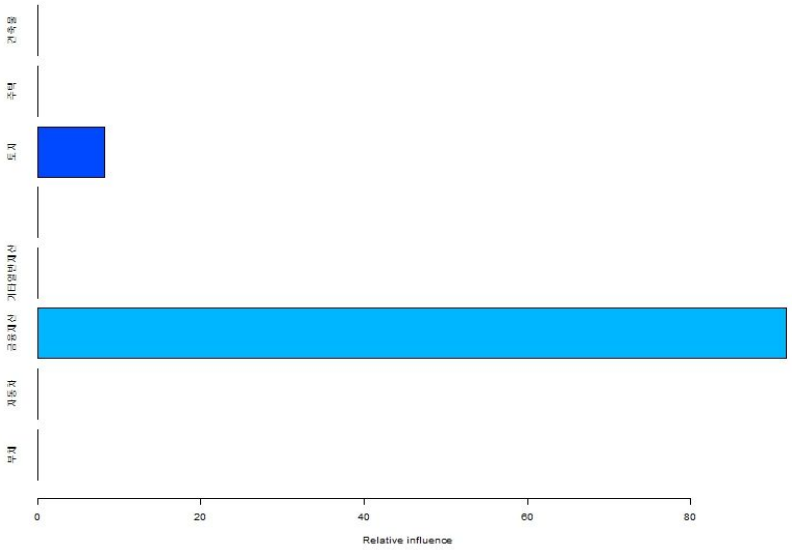

○ 농어촌_노인부부_연령1 ☞ 금융재산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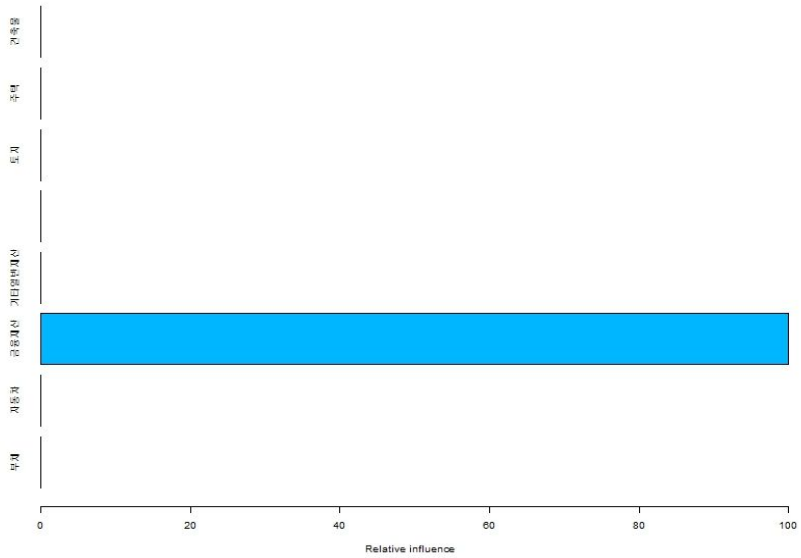

○ 농어촌_노인부부_연령2 ☞ 금융재산 >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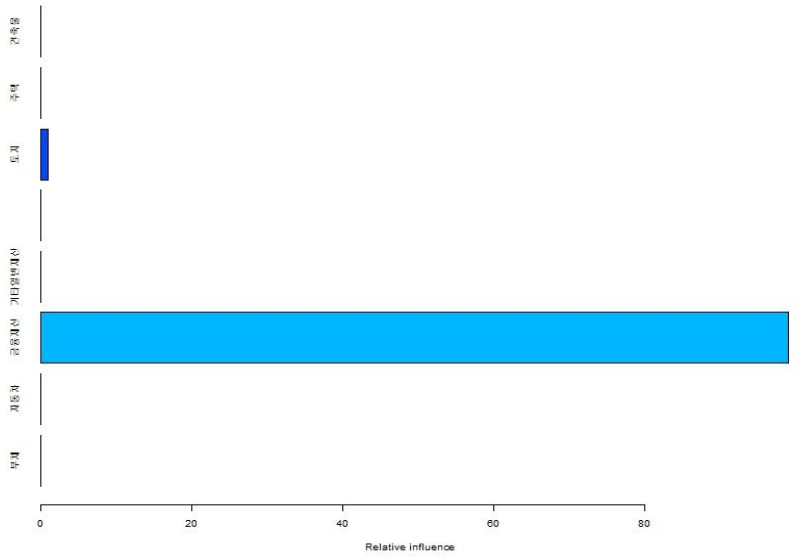

○ 농어촌_노인부부_연령3 ☞ 금융재산 >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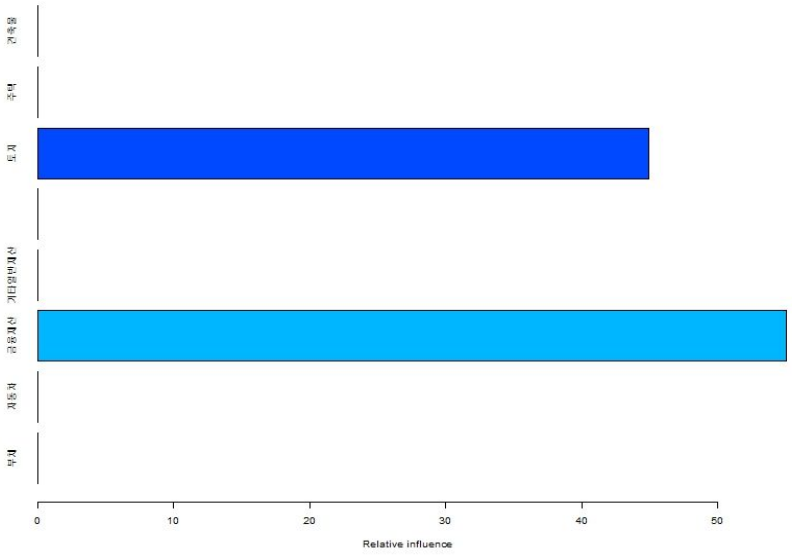

제4장

기초연금 선정기준 분석DB 구축 및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4 기초연금 선정기준 분석DB 구축 및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 여기서는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과정에서 활용된 분석 DB 구축과정을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가구 유형별로 소득 및 재산항목에 대한 보유실태를 비교 분석함

제1절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노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분석DB 구축

□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공적 행정자료와 현행 기초연금 수급 노인 및 배우자의 행정데이터 연계 등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도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분석 DB 구축과정을 서술함

○ 2015년 10월을 기준시점으로 현행 기초연금 수급노인 및 배우자 기초정보를 연계하여 2016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노인(1951년 12월 이전 출생 노인 및 배우자)을 중심으로 분석 DB를 구축함

□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분석 DB 연계 구축

○ 행정자료 추출 및 연계

- 행복e음 기초연금 수급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항목 등 수급정보 & 건강보험공단 보유 행정자료 소득재산 DB 통합 연계
- 2016년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65세 이상 노인('1951년 12월말 이전 출생)' 7,124,581명 중심으로, 행정전산망 주민등록정보에서 해당 노인이 포함된 모든 세대 내 가구원을 추출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2015. 11월(자료추출 시점)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공적 행정자료 중 소득재산 항목별 원시자료를 추출하여 연계
-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5% ☞ 4%) 이후인 2015. 10월 기초연금 수급노인과 배우자 소득재산 항목 및 소득인정액 등 수급정보 행복e음 추출 제공

○ 소득재산 항목별 행정자료 연계 및 시차 보정

- 분석DB 구축 시 2015년 11월 건강보험에 신규 연계되어 2016년 적용 예정인 국세청 종합소득 및 주택, 토지, 건물 시가표준액 이외 항목인 건강보험보수월액 및 공적연금급여액의 경우 2016년 행복e음 연계 및 자산조사 반영 시점으로 시차 보정 필요
- 소득항목
  - 국세청 종합소득(2014년 귀속, 2015년 11월 신규 연계, 2016년 적용)

- 건강보험보수월액(2015년 11월 기준), 공적연금(2015년 11월 기준)
- 건강보험보수월액 ☞ 2015년 연간 임금상승률 예상치 4.5%(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5. 4월호) 반영
- 공적연금급여액 ☞ 2015년 연간 물가상승률 예상치 0.7%(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5. 10월) 반영

– 재산항목

- 재산세 부과 행정자료 기준 주택, 토지, 건물 과세표준액(2015년 6월 기준, 2015년 11월 신규 연계, 2016년 적용)을 시가표준액 환산 반영

– 공적연금 외 공적이전소득, 임차보증금, 자동차가액, 금융재산, 부채 등 건강보험공단 제공 불가능한 항목 제외된 상태로 ☞ 전체 노인 가구의 '제한된 소득인정액' 산출

○ 노인 및 배우자 기준 분석 DB 구축

– 행정전산망 세대주와의 관계 기준으로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분포가 존재하는 세대주와의 관계별로 추출하여 기초연금 보장단위(자산조사 범위)인 부부 기준 분석 DB 구축

– 전체 노인 기준으로 주요 세대주와의 관계가 97.5%의 비중을 차지함

- 세대주–배우자(처/남편) 83.5%, 부–모 12.4%, 장인–장모 1.6% 등

– 친척 및 동거인, 기타 세대주관계 조합 불가 제외 시 전체

변환대상 1951년 12월말 이전 출생 노인의 98.5%

- 친척 및 동거인에 해당하는 노인(1.0%)을 노인단독가구로 포함할 경우 전체 노인의 99.5%를 대상으로 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분석 DB 구축

□ 노인 및 배우자 기준 2016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최종 분석 DB

○ 분석대상 가구 : 5,611,610가구 (2015년 5,276,290가구)

- 노인단독 3,365,149가구(60.0%)
- 비노인배우자부부 733,490가구(13.0%)
- 노인부부 1,512,971가구(27.0%)

○ 분석대상 노인 및 배우자

- 2015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노인 7,124,581명 및 비노인배우자 733,490명 포함 총 7,858,071명
  - 2015년 노인(6,906,789명) 및 비노인배우자(717,820명) 포함 총 7,624,609명
  - 2014년 노인(6,665,491명) 및 비노인배우자(699,062명) 포함 총 7,364,553명

□ 기초연금 선정기준 도출 분석 DB에 포함된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소득·재산 항목

종류	소득 및 재산 항목	건강보험 DB			비고
		제공된 항목	원자료 제공	기준 시점	
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자)	근로소득 (원/연간)	국세청	'14년 귀속 '15.11 연계	소득금액
	사업소득 (종합소득자)	사업소득 (원/연간)			소득금액
	이자소득 (종합소득자)	이자소득 (원/연간)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배당소득 (종합소득자)	배당소득 (원/연간)			총수입금액=소득금액
	기타소득 (종합소득자)	기타소득 (원/연간)			소득금액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연금급여액 (원/연간)	각 연금공단	'15.11 기준 연계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근로소득 (근로소득자)	건강보험보수월액 (원/월)	건강보험 공단	'15.11 기준 연계	직장가입자만 해당
	기타 공적이전소득	보훈연금, 산재급여 등			
재산	일반재산 (건축물)	건물 (원/과세표준액)	해당 지자체	'15.6 기준 '15.11 연계	과세표준액÷0.7 =시가표준액
	일반재산 (주택)	주택 (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0.6 =시가표준액
	일반재산 (토지)	토지 (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0.7 =시가표준액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 (원/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시가표준액
	전월세보증금	-			
	자동차가액				
	금융재산	-			
	골프장회원권	-			
	부동산 취득권리	-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부채	부 채	-			

□ 이상과 같은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일부 누락 항목을 제외하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 분석 시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 분석DB 원자료 활용

○ 건강보험 공적 행정자료에 기초하여 구축된 분석 DB 한계

- 분석 DB에 포함된 소득·재산항목 중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과 수급신청 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재산, 증빙서류 제출을 필요로 하는 임차보증금, 자동차가액, 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누락 소득·재산항목 보정을 통한 예상 소득인정액 추정방법

- 전체 노인가구 대상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누락 소득·재산항목 보정 전 노인가구의 제한적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전체 분포를 우선 도출한 후, 분석 DB에서 누락된 소득·재산항목을 보정할 경우 개별 가구의 2016년 예상 소득인정액을 추정하고 이러한 분포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선정기준 조정안을 도출하는 방법을 모의분석 과정에서 활용함

□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개별 노인가구 소득인정액 모의 산출방법

○ 2016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전체 노인 & 배우자를 기준으로 구축된 분석 DB를 바탕으로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수급대상 선정체계를 적용한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함

○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노인가구(노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모의 산출방식 개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국세청 종합소득 월평균 + 월평균 공적연금 급여액(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 건강보험 보수월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 지역별 기초공제액) × 연간 재산의 소득환산율(4%)* } / 12

* 2015년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결과 반영

– 현행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정과정에서 상시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의분석 과정에서 동일하게 반영함

- 상시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수준은 2011년 40만원, 2012년 43만원, 2013년 45만원이었으며,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시 48만원 정액공제와 30% 정률공제를 추가 확대하였음
- 근로소득공제 수준은 2015년도에 52만원 정액공제와 30% 정률공제를 적용하였으며, 201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한 2016년도 적용 예상 근로소득공제 수준 56만원 정액공제와 30% 정률공제를 개별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모의 산출과정에서 적용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과정에 일반재산에 대하여 지역별 기

초공제액을 적용하며, 소득인정액 모의 산출과정에서도 일반 재산가액 산정 시 현행 지침에 따라서 시가표준액 및 보정률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 기준 주택, 토지, 건물 등 일반재산가액 합계에서 지역별 기초공제액을 적용함

- 특히, 2015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적용 당시 소득인정액 제도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기초공제액 상향 조정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함
  - 대도시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2015년 선정기준 조정 당시 기존과 동일하게 재산 유형에 상관없이 연 5%를 적용하였으나, 수급률 제고를 위해 2015년 하반기 연 4%로 하향 조정된 부분을 2016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모의분석에 수정 반영하였음

□ 전체 노인가구 소득인정액 분위별 분포 및 하위 70% 선정기준 조정방안 분석을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방법

○ 개별 노인가구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가구규모에 따른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한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을 기초로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분포 분석

- 2016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하여 현행 기초연금의 가구 균등화 지수(1:1.6)를 적용한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포를 도출하여 분석에 활용함

□ 소득인정액 하위 70% 해당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방식

○ 가구 균등화 지수 적용에 의하여 '균등 조정된 소득인정액'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분포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포를 기초로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도출함

- 누락 소득·재산항목 보정 전 소득인정액 분포 및 선정기준 조정안에 신청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한 후, 누락 항목에 대한 보정을 통해 추정된 개별 가구의 2016년 예상 소득인정액과 전체 분포로부터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도출함
  - 현행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재산항목별 보유분포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누락된 항목에 대한 보정치를 산출하여 반영함으로써 예상 소득인정액 분포 도출

○ 이러한 과정에서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전후 변화되고 있는 수급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 조정 후 실제 수급률이 목표 수급률인 전체 노인가구의 70%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하위 70%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상향 조정하여 최종 결정함

○ 균등 조정된 소득인정액 분포를 바탕으로 최종 도출된 선정기준 조정방안에 대하여 동일한 가구 균등화 지수를 역으로 반영하여 가구규모(노인단독·노인부부)에 따른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함

제2절 전체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재산항목 보유실태

□ 여기서는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과정에서 활용된 공적 행정자료 기준 분석 DB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수급 유형에 따른 전체 노인가구 유형별로 소득 및 재산항목에 대한 보유실태를 비교 분석함

○ 노인가구(노인 및 배우자 기준 부부 단위) 유형을 노인단독, 비노인 배우자 부부, 노인부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가구유형별로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소득·재산항목 보유실태를 비교 분석함

□ 특히, 노인가구의 특성 상 개별 항목별로 소득·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0값)가 일정 비율을 차지하므로, 개별 소득항목별로 0을 포함한 전체 가구의 분포와 0값을 제외한 보유가구만으로 분포를 분석하여 각각 BoxPlot을 제시함

□ BoxPlot을 활용하여 소득인정액 산출에 반영된 소득·재산항목 보유실태 분석결과를 제시함

○ BoxPlot은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극단치 위치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 중위값의 위치로 분포의 중심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소·최대값으로 분포 상의 꼬리부분을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IQR(Interquartile Range, Q3−Q1으로 계산) 중심으로 Upper fence와 Lower fence를 벗어나는 이상치를 점검할 수 있음

○ 아래 그림을 중심으로 BoxPlot에서 제시되는 주요 기초통계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최대(Maximum), 최소(Minimum), 평균(Mean, +표시)
- 4분위로 구분하여, 1분위(Q1, 하위 25%, Lower quartile), 2분위(Q2, 하위 50%, 중위, Median), 3분위(Q3, 하위 75%, Upper quartile) 경계값

○ BoxPlot 주요내용 구성 및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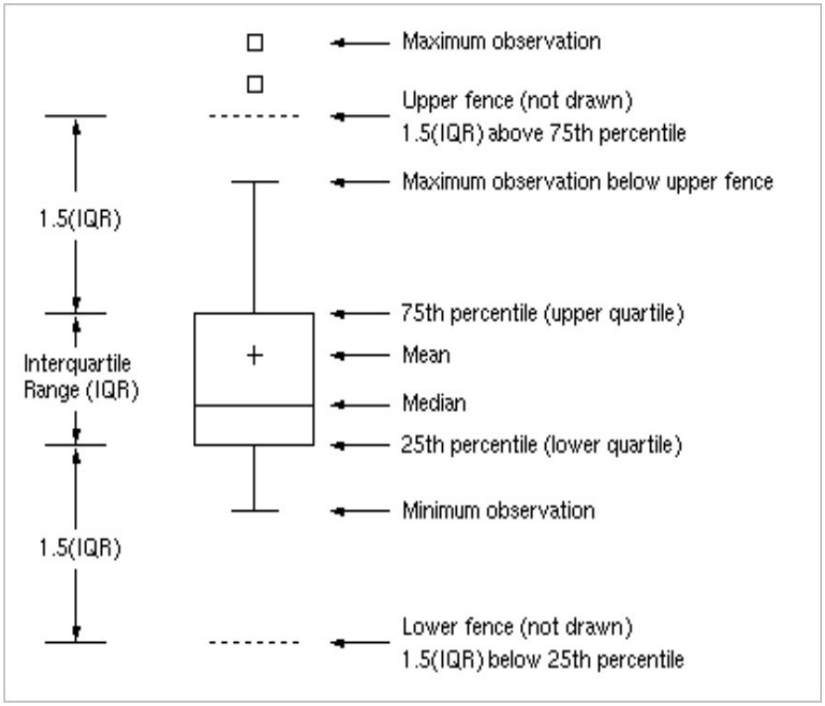

1. 소득항목별 보유실태

□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하여 자산조사 범위인 노인과 배우자 중심으로 구축한 DB를 분석하여 소득평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소득항목별 보유실태를 노인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주요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건강보험보수월액), 공제적용 후 근로소득(공제적용 후 건강보험보수월액),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건강보험보수월액 중복배제), 기타 소득, 연간 종합소득, 월평균 종합소득, 국민연금급여액, 특수직역연금급여액, 소득평가액을 살펴봄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인가구의 특성 상 개별 항목별로 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0값)가 일정 비율을 차지하여, 이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분포와 0을 제외한 가구 분포를 각각 분석하여 제시함

- 예를 들어, 근로소득(건강보험보수월액) 평균을 살펴보면 노인단독 가구 11만원, 노인부부 가구 37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가구 88만원으로 나타났음

  • 0인 가구를 제외한 보유가구를 살펴보면 노인단독 가구 191만원, 노인부부 가구 246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가구 251만원으로 나타남

- 소득평가액 평균은 노인단독 가구 26만원, 노인부부 가구 109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가구 167만원으로 나타났고, 0인 가구를 제외하면 노인단독 83만원, 노인부부 가구 151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가구 187만원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건강보험보수월액)

– 전체 가구

건강보험보수월액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279674.6	Max	1.0357E9
Nobs	5451265	Pooled Std Dev	1969409		

Statistics			
Min	0	0	0
Max	6.1372E8	5.5158E8	1.0357E9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107026.7	372489.1	879870.1
Q1	0	0	0
Q2	0	0	0
Q3	0	0	1225370
Range	6.1372E8	5.5158E8	1.0357E9
Std Dev	1202876	2344099	3421333

– 보유가구(0 제외)

건강보험보수월액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052	평균	2329164	Max	1.0357E9
Nobs	654561	Pooled Std Dev	5293750		

Statistics			
Min	1.052	1.052	1.052
Max	6.1372E8	5.5158E8	1.0357E9
N	183282	220014	251265
평균	1914127	2464238	2513634
Q1	928916	1052000	1157200
Q2	1220320	1367600	1530392
Q3	1630600	2131862	2510808
Range	6.1372E8	5.5158E8	1.0357E9
Std Dev	4734817	5585422	5416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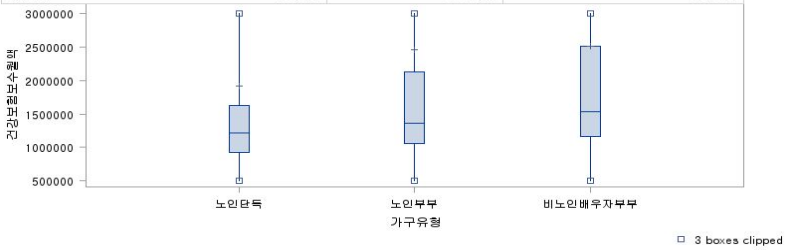

○ 공제적용 후 근로소득 (공제적용 후 건강보험보수월액)

– 전체 가구

근로소득공제후 건강보험보수월액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212126.8	Max	1.0352E9
Nobs	5451265	Pooled Std Dev	1906704		

Statistics			
Min	0	0	0
Max	6.132E8	5.5106E8	1.0352E9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78199.7	287013.1	671857.4
Q1	0	0	0
Q2	0	0	0
Q3	0	0	689800
Range	6.132E8	5.5106E8	1.0352E9
Std Dev	1164485	2266071	3317253

– 보유가구(0 제외)

근로소득공제후 건강보험보수월액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82.5	평균	1817867	Max	1.0352E9
Nobs	636108	Pooled Std Dev	5341529		

Statistics			
Min	129.84	161.4	82.5
Max	6.132E8	5.5106E8	1.0352E9
N	175368	213974	246766
평균	1461683	1952361	1954373
Q1	432586	532000	649262.2
Q2	742400	847600	997615.2
Q3	1163200	1557640	1794400
Range	6.132E8	5.5106E8	1.0352E9
Std Dev	4829522	5628438	5431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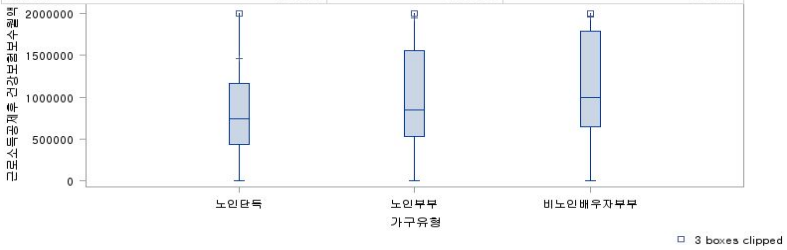

○ 사업소득

– 전체 가구

사업소득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187.5146	Max	383266
Nobs	5451265	Pooled Std Dev	1825.76		

Statistics			
Min	0	0	0
Max	294794	281642	383266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79.03646	314.6211	425.1452
Q1	0	0	0
Q2	0	0	0
Q3	0	0	83
Range	294794	281642	383266
Std Dev	1209.651	2343.902	2737.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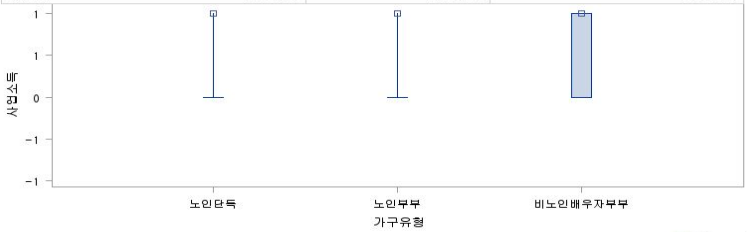

□ 3 boxes clipped

– 보유가구(0 제외)

사업소득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	평균	1404.293	Max	383266
Nobs	727905	Pooled Std Dev	4833.37		

Statistics			
Min	1	1	1
Max	294794	281642	383266
N	223063	284521	220321
평균	1161.444	1609.507	1385.151
Q1	70	119	119
Q2	279	446	373
Q3	884	1319	1092
Range	294793	281641	383265
Std Dev	4499.503	5101.075	4804.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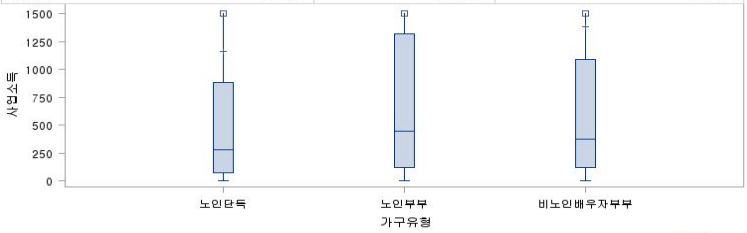

□ 3 boxes clipped

○ 이자소득

– 전체 가구

이자소득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28.75042	Max	700150
Nobs	5451265	Pooled Std Dev	1100.595		

Statistics			
Min	0	0	0
Max	648875	700150	685397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13.14947	57.19249	42.32007
Q1	0	0	0
Q2	0	0	0
Q3	0	0	0
Range	648875	700150	685397
Std Dev	646.4342	1577.994	149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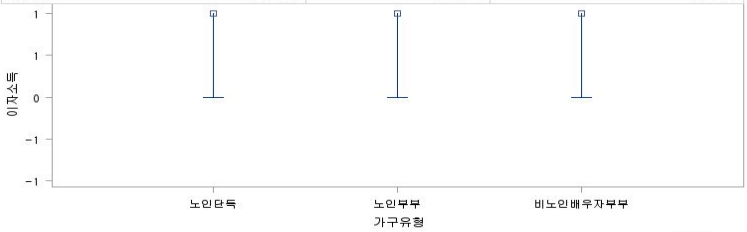

□ 3 boxes clipped

– 보유가구(0 제외)

이자소득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	평균	4449.919	Max	700150
Nobs	35220	Pooled Std Dev	12949.97		

Statistics			
Min	1	1	1
Max	648875	700150	685397
N	10967	17072	7181
평균	3930.238	4876.115	4230.357
Q1	1745	1488.5	1029
Q2	2469	2473	2274
Q3	3722	4681.5	3867
Range	648874	700149	685396
Std Dev	10464.89	13740.86	14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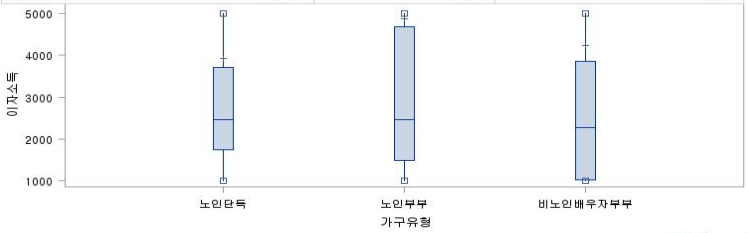

□ 3 boxes clipped

○ 배당소득

– 전체 가구

배당소득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33.9291	Max	949920
Nobs	5451265	Pooled Std Dev	1695.384		

Statistics			
Min	0	0	0
Max	949920	623680	638026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13.13724	65.88313	64.08181
Q1	0	0	0
Q2	0	0	0
Q3	0	0	0
Range	949920	623680	638026
Std Dev	1031.458	2317.971	2464.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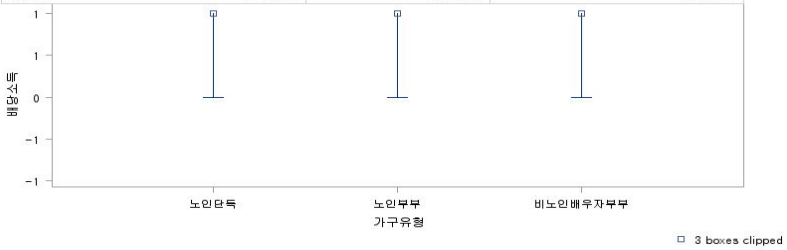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배당소득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	평균	6936.043	Max	949920
Nobs	26666	Pooled Std Dev	23222.04		

Statistics			
Min	1	1	1
Max	949920	623680	638026
N	7551	13227	5888
평균	5702.932	7249.904	7812.365
Q1	179	280	391
Q2	1320	1787	2007
Q3	3551	4545	4804
Range	949919	623679	638025
Std Dev	20723.28	23220.92	260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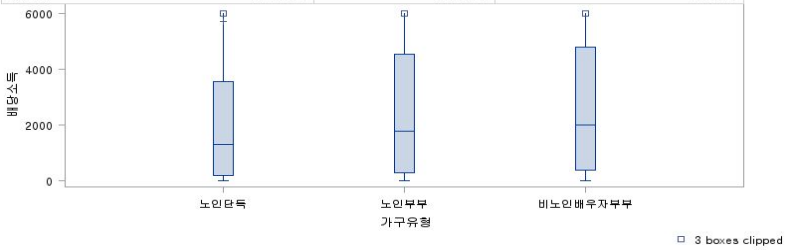

○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건강보험보수월액 중복 배제)

– 전체 가구

근로소득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4.536341	Max	198366
Nobs	5451265	Pooled Std Dev	138.6071		

Statistics			
Min	0	0	0
Max	14761	42000	198366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2.874311	7.217872	6.68865
Q1	0	0	0
Q2	0	0	0
Q3	0	0	0
Range	14761	42000	198366
Std Dev	51.89049	113.97	327.5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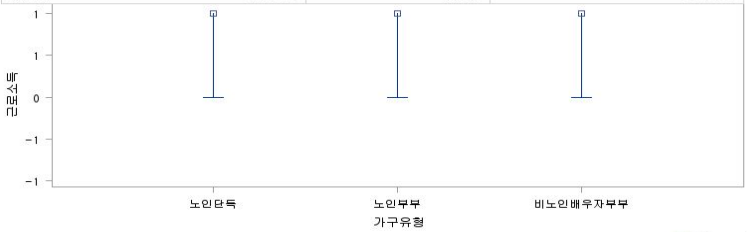

□ 3 boxes clipped

– 보유가구(0 제외)

근로소득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	평균	339.4807	Max	198366
Nobs	72843	Pooled Std Dev	1144.028		

Statistics			
Min	1	1	1
Max	14761	42000	198366
N	36289	29715	6839
평균	259.6314	353.5516	702.0393
Q1	175	175	127
Q2	180	180	295
Q3	196	280	842
Range	14760	41999	198365
Std Dev	420.1933	716.8095	3282.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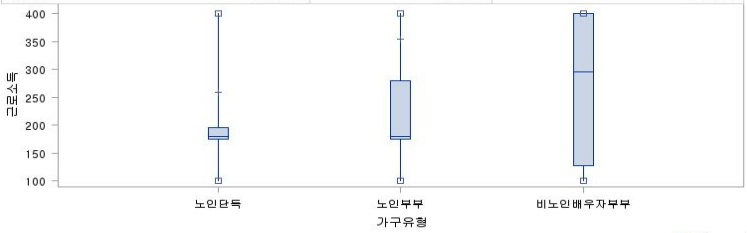

□ 3 boxes clipped

○ 기타소득

– 전체 가구

기타소득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2.093606	Max	111871
Nobs	5451265	Pooled Std Dev	165.6047		

Statistics			
Min	0	0	0
Max	107640	111871	70792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0.921446	3.115271	5.374643
Q1	0	0	0
Q2	0	0	0
Q3	0	0	0
Range	107640	111871	70792
Std Dev	115.9372	216.0117	228.6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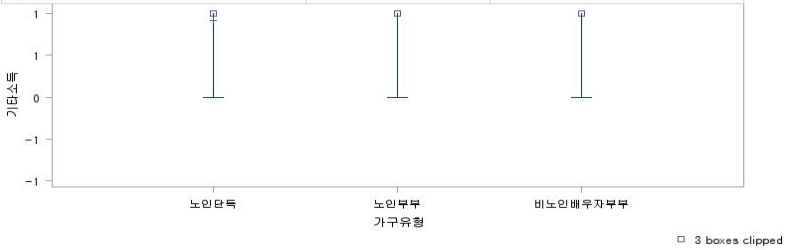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기타소득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51	평균	770.8228	Max	111871
Nobs	14806	Pooled Std Dev	3082.944		

Statistics			
Min	51	51	51
Max	107640	111871	70792
N	3697	5592	5517
평균	816.9938	810.8639	699.2978
Q1	100	101	100
Q2	200	218	236
Q3	622	652.5	634
Range	107589	111820	70741
Std Dev	3354.708	3390.034	2513.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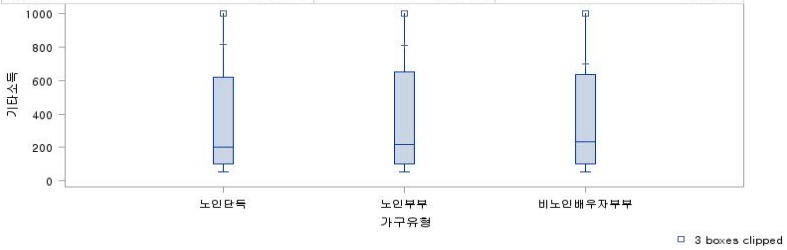

○ 연간 종합소득

– 전체 가구

연간종합소득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256.824	Max	1110916
Nobs	5451265	Pooled Std Dev	3275.947		

Statistics			
Min	0	0	0
Max	1000787	1110916	938368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109.1189	448.0299	543.6104
Q1	0	0	0
Q2	0	0	0
Q3	0	0	107
Range	1000787	1110916	938368
Std Dev	2004.394	4463.854	4769.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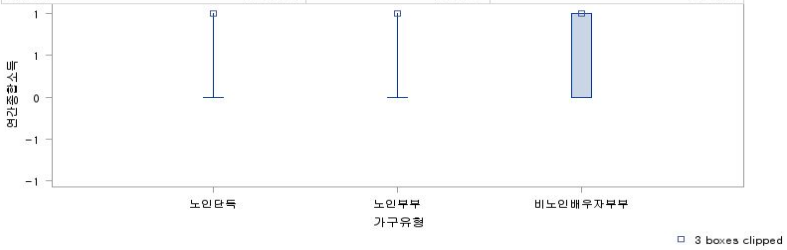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연간종합소득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	평균	1710.712	Max	1110916
Nobs	818382	Pooled Std Dev	8314.824		

Statistics			
Min	1	1	1
Max	1000787	1110916	938368
N	266955	320368	231059
평균	1339.863	2035.529	1688.809
Q1	88	132	122
Q2	232	417	386
Q3	858	1390	1177
Range	1000786	1110915	938367
Std Dev	6905.282	9343.357	829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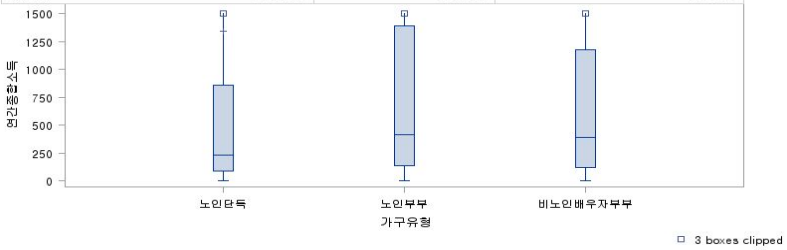

○ 월평균 종합소득

– 전체 가구

월평균종합소득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214020	Max	9.2576E8
Nobs	5451265	Pooled Std Dev	2729956		

Statistics			
Min	0	0	0
Max	8.3399E8	9.2576E8	7.8197E8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90932.44	373358.2	453008.7
Q1	0	0	0
Q2	0	0	0
Q3	0	0	89166.67
Range	8.3399E8	9.2576E8	7.8197E8
Std Dev	1670329	3719878	3974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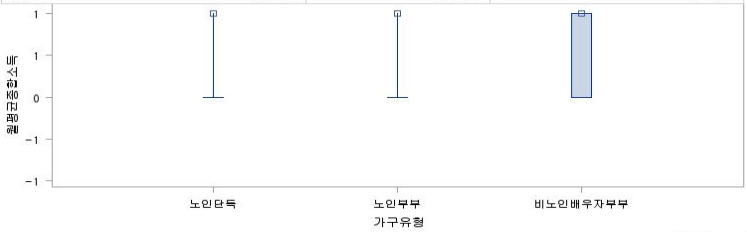

□ 3 boxes clipped

– 보유가구(0 제외)

월평균종합소득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833.3333	평균	1425593	Max	9.2576E8
Nobs	818382	Pooled Std Dev	6929020		

Statistics			
Min	833.3333	833.3333	833.3333
Max	8.3399E8	9.2576E8	7.8197E8
N	266955	320368	231059
평균	1116553	1696274	1407341
Q1	73333.33	110000	101666.7
Q2	193333.3	347500	321666.7
Q3	715000	1158333	980833.3
Range	8.3399E8	9.2576E8	7.8197E8
Std Dev	5754402	7786131	6909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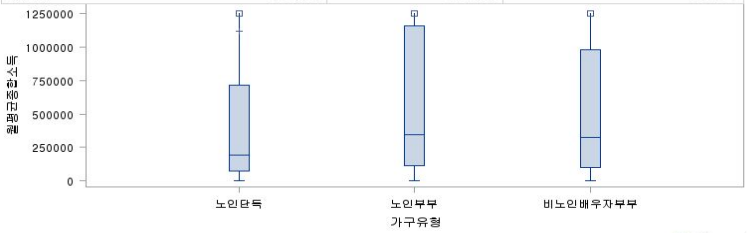

□ 3 boxes clipped

○ 국민연금급여액

– 전체 가구

국민연금급여액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116401.2	Max	2275585
Nobs	5451265	Pooled Std Dev	182335.5		

Statistics			
Min	0	0	0
Max	1587755	2266290	2275585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52130.87	169491.6	302239.6
Q1	0	0	0
Q2	0	130130	256035
Q3	0	249275	436020
Range	1587755	2266290	2275585
Std Dev	123186	220886.3	2902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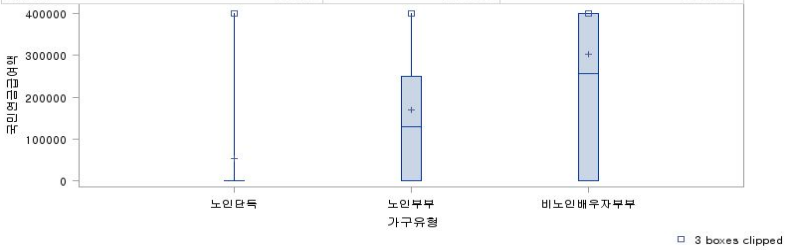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국민연금급여액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5070	평균	307543.3	Max	2275585
Nobs	2063233	Pooled Std Dev	209725.6		

Statistics			
Min	5070	8450	7605
Max	1587755	2266290	2275585
N	749490	801448	512295
평균	227996.2	307816.6	423493.6
Q1	123370	152945	239980
Q2	172380	228995	327860
Q3	267020	387855	556010
Range	1582685	2257840	2267980
Std Dev	162083	214548.3	2582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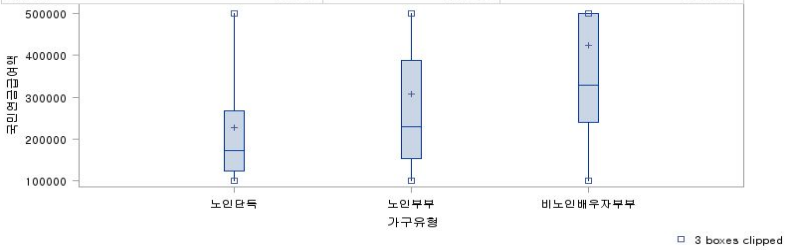

○ 특수직역연금급여액

– 전체 가구

특수직역연금급여액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124196.2	Max	9784255
Nobs	5451265	Pooled Std Dev	578383.7		

Statistics			
Min	0	0	0
Max	6540300	8710260	9784255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37485.11	261642.9	241460.8
Q1	0	0	0
Q2	0	0	0
Q3	0	0	0
Range	6540300	8710260	9784255
Std Dev	308103	844276	8134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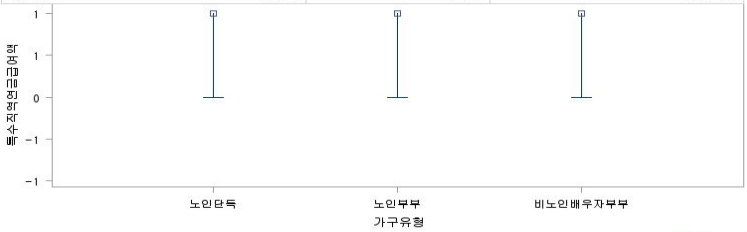

□ 3 boxes clipped

– 보유가구(0 제외)

특수직역연금급여액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42250	평균	2529596	Max	9784255
Nobs	267642	Pooled Std Dev	975082.2		

Statistics			
Min	42250	285610	106470
Max	6540300	8710260	9784255
N	52556	149056	66030
평균	2337948	2554929	2624949
Q1	1726335	1788865	1895335
Q2	2236715	2296710	2588235
Q3	2927080	3179735	3239730
Range	6498050	8424650	9677785
Std Dev	736394.5	1049424	9675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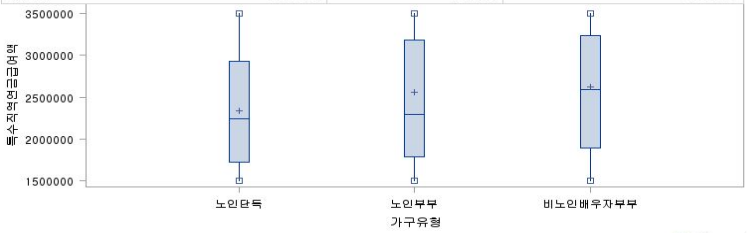

□ 3 boxes clipped

○ 소득평가액

– 전체 가구

소득평가액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666744.2	Max	1.294E9
Nobs	5451265	Pooled Std Dev	4057164		

Statistics			
Min	0	0	0
Max	1.294E9	1.14E9	1.1277E9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258748.1	1091506	1668567
Q1	0	0	267704.2
Q2	0	223080	704602.8
Q3	120835	882666.3	1708281
Range	1.294E9	1.14E9	1.1277E9
Std Dev	2489062	5303991	6298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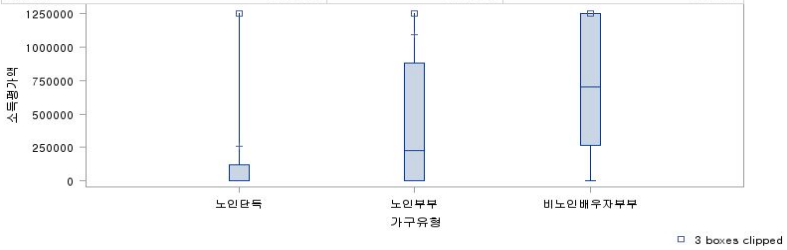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소득평가액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29.84	평균	1340849	Max	1.294E9
Nobs	2710671	Pooled Std Dev	5708590		

Statistics			
Min	129.84	533.808	265.548
Max	1.294E9	1.14E9	1.1277E9
N	1020049	1049443	641179
평균	831485.4	1513863	1868013
Q1	128440	185900	347743.3
Q2	226460	443625	859365
Q3	601640	1468610	1899600
Range	1.294E9	1.14E9	1.1277E9
Std Dev	4408260	6195056	6636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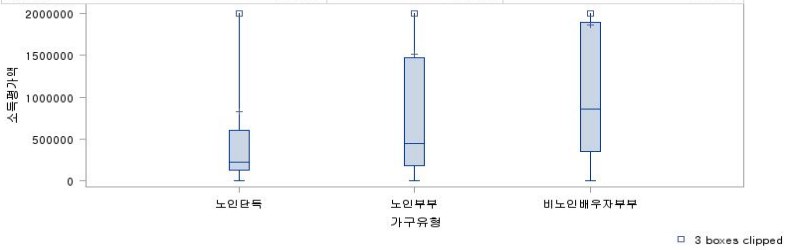

2.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 다음으로, 기초연금의 자산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노인·배우자 중심으로 구축된 분석 DB를 분석하여 노인가구 유형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성하고 있는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제시함

- 재산항목별 분포,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시 기초공제액 및 환산 전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분석함

○ 주요 재산항목으로 주택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건물 시가표준액, 기초공제 전 일반재산가액, 기초공제 확대 적용 후 일반재산가액, 기초공제 확대 적용 후 재산의 소득환산월액에 대한 기초통계를 BoxPlot으로 제시함

- 소득과 마찬가지로, 개별 항목별로 미보유 가구(0값)가 일정 비율을 차지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분포와 0을 제외한 보유가구의 분포를 각각 분석하여 제시함
- 금융재산 제외 시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주택 시가표준액 평균을 살펴보면 노인단독 약 5천만원, 노인부부 약 1억 4,200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1억 6천만원으로 나타났음
  - 보유가구 평균은 노인단독 1억 1,900만원, 노인부부 1억 7,900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1억 9,700만원임
- 기초공제액 적용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 평균은 노인단독 27만원, 노인부부 가구 약 105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101만원, 0인 가구 제외 시 노인단독 122만원, 노인부부 182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168만원으로 나타남

○ 주택

– 전체 가구

주택_시가표준액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8906.615	Max	5916338
Nobs	5451265	Pooled Std Dev	18384.23		

Statistics			
Min	0	0	0
Max	1497450	5916338	1933562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4979.501	14242.02	16021.15
Q1	0	603.3333	2200
Q2	0	7100	9248.333
Q3	4900	17850	20100
Range	1497450	5916338	1933562
Std Dev	12793.91	24659.11	242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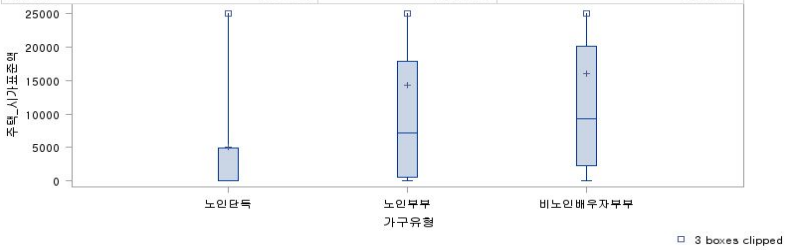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주택_시가표준액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666667	평균	15556.72	Max	5916338
Nobs	3120986	Pooled Std Dev	22733.88		

Statistics			
Min	1.666667	1.666667	1.666667
Max	1497450	5916338	1933562
N	1375874	1160560	584552
평균	11863.3	17861.73	19673.71
Q1	2340	4423.333	6100
Q2	6800	10500	12400
Q3	14800	21698.33	23650
Range	1497448	5916337	1933560
Std Dev	17558.51	26418.99	2545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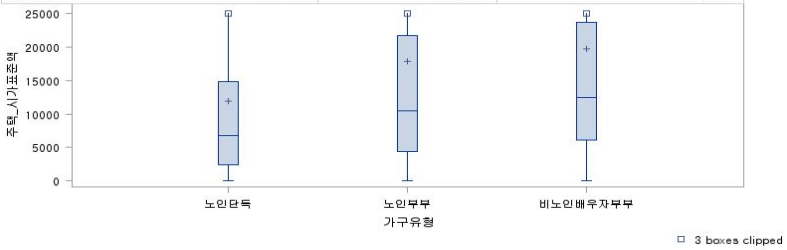

○ 토지

– 전체 가구

토지_시가표준액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8788.473	Max	32611771
Nobs	5451265	Pooled Std Dev	58892.44		

Statistics			
Min	0	0	0
Max	25793707	32611771	29060936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4489.722	16130.88	13530.5
Q1	0	0	0
Q2	0	858.5714	561.4286
Q3	397.1429	10148.57	8732.857
Range	25793707	32611771	29060936
Std Dev	43129.9	80119.1	69488.21

– 보유가구(0 제외)

토지_시가표준액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428571	평균	21965.41	Max	32611771
Nobs	2181079	Pooled Std Dev	91740.06		

Statistics			
Min	1.428571	1.428571	1.428571
Max	25793707	32611771	29060936
N	949575	833466	398038
평균	15498.46	28170.17	24400.84
Q1	1011.429	2418.571	2141.429
Q2	3772.857	7901.429	7145.714
Q3	11457.14	22912.86	20701.43
Range	25793706	32611770	29060934
Std Dev	79061.57	104263.1	9188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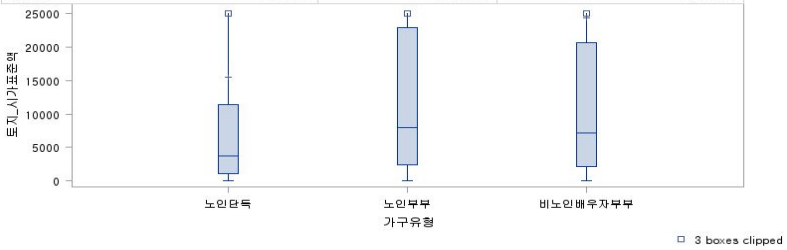

○ 건물

– 전체 가구

건물_시가표준액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1373.119	Max	5187829
Nobs	5451265	Pooled Std Dev	12019.01		

Statistics			
Min	0	0	0
Max	3376691	2675674	5187829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612.5356	2395.949	2772.328
Q1	0	0	0
Q2	0	0	0
Q3	0	0	0
Range	3376691	2675674	5187829
Std Dev	8040.206	15291.11	1810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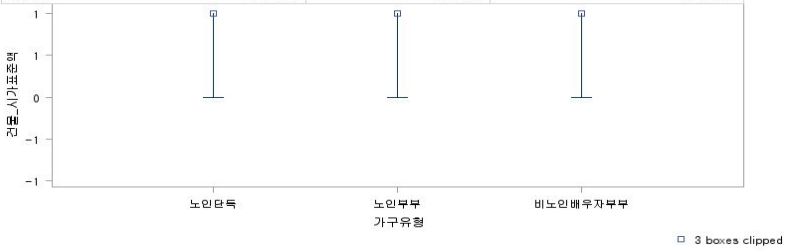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건물_시가표준액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428571	평균	10046.07	Max	5187829
Nobs	745091	Pooled Std Dev	31204.4		

Statistics			
Min	1.428571	1.428571	1.428571
Max	3376691	2675674	5187829
N	254718	319599	170774
평균	7882.612	10911.68	11653.02
Q1	312.8571	471.4286	662.8571
Q2	1760	2895.714	3445.714
Q3	6757.143	10168.57	10661.43
Range	3376690	2675673	5187827
Std Dev	27831.63	31175.96	3569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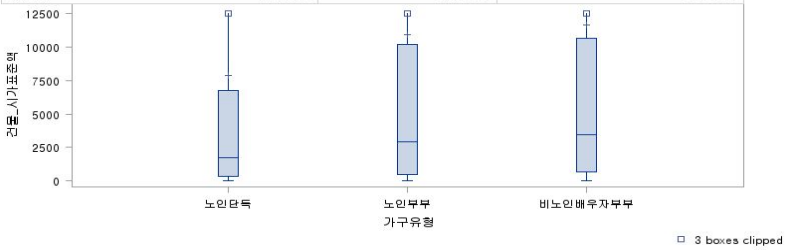

○ 기초공제 전 일반재산가액

– 전체 가구

기초공제전_일반재산가액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1.9068E8	Max	3.942E11
Nobs	5451265	Pooled Std Dev	7.4617E8		

Statistics			
Min	0	0	0
Max	2.752E11	3.942E11	3.481E11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1.0082E8	3.2769E8	3.2324E8
Q1	0	43000000	55463095
Q2	1016667	1.3054E8	1.4569E8
Q3	86200000	3.093E8	3.2374E8
Range	2.752E11	3.942E11	3.481E11
Std Dev	5.289E8	1.0159E9	9.2643E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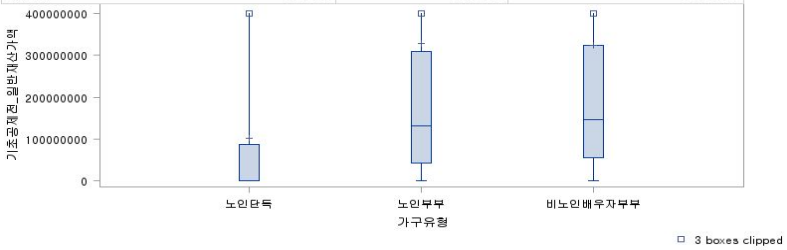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기초공제전_일반재산가액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4285.71	평균	2.9025E8	Max	3.942E11
Nobs	3581275	Pooled Std Dev	9.1052E8		

Statistics			
Min	14285.71	14285.71	14285.71
Max	2.752E11	3.942E11	3.481E11
N	1692682	1261258	627335
평균	1.9524E8	3.7816E8	3.6986E8
Q1	28969048	75414286	87657143
Q2	82000000	1.6204E8	1.76E8
Q3	1.8914E8	3.56E8	3.6667E8
Range	2.752E11	3.942E11	3.481E11
Std Dev	7.2338E8	1.0825E9	9.8225E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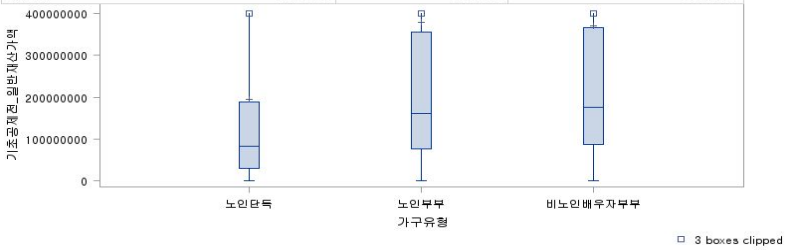

○ 기초공제 적용 후 일반재산가액

– 전체 가구

기초공제확대적용후_일반재산가액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1.3905E8	Max	3.941E11
Nobs	5451265	Pooled Std Dev	7.3633E8		

Statistics			
Min	0	0	0
Max	2.751E11	3.941E11	3.479E11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65929675	2.5224E8	2.4346E8
Q1	0	0	0
Q2	0	29000000	41000000
Q3	0	2.0373E8	2.1707E8
Range	2.751E11	3.941E11	3.479E11
Std Dev	5.176E8	1.0061E9	9.1723E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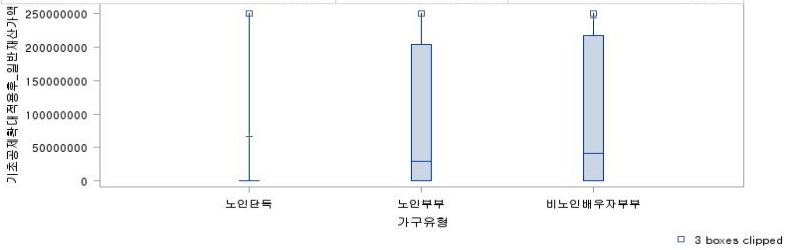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기초공제확대적용후_일반재산가액 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49E-8	평균	3.7725E8	Max	3.941E11
Nobs	2009322	Pooled Std Dev	1.1827E9		

Statistics			
Min	1.49E-8	1.49E-8	1.49E-8
Max	2.751E11	3.941E11	3.479E11
N	736223	838634	434465
평균	2.9354E8	4.3778E8	4.0225E8
Q1	41000000	60633333	62371429
Q2	1.11E8	1.62E8	1.621E8
Q3	2.71E8	4.1306E8	3.95E8
Range	2.751E11	3.941E11	3.479E11
Std Dev	1.0611E9	1.2945E9	1.1516E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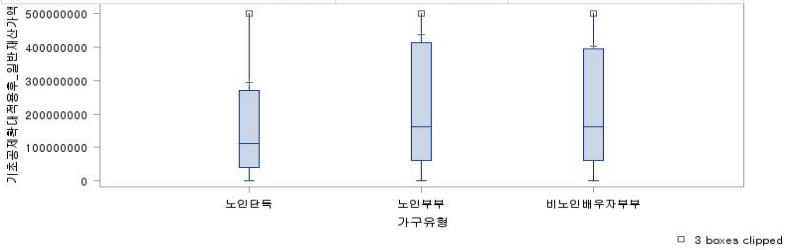

○ 기초공제 적용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전체 가구

기초공제확대적용후_재산의소득환산액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579383.8	Max	1.642E9
Nobs	5451265	Pooled Std Dev	3068026		

Statistics			
Min	0	0	0
Max	1.1463E9	1.642E9	1.4497E9
N	3277921	1455524	717820
평균	274707	1050981	1014432
Q1	0	0	0
Q2	0	120833.3	170833.3
Q3	0	848888.9	904459.3
Range	1.1463E9	1.642E9	1.4497E9
Std Dev	2156680	4192233	3821791

– 보유가구(0 제외)

기초공제확대적용후_재산의소득환산액 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6.21E-11	평균	1571861	Max	1.642E9
Nobs	2009322	Pooled Std Dev	4927824		

Statistics			
Min	6.21E-11	6.21E-11	6.21E-11
Max	1.1463E9	1.642E9	1.4497E9
N	736223	838634	434465
평균	1223091	1824071	1676037
Q1	170833.3	252638.9	259881
Q2	462500	675000	675416.7
Q3	1129167	1721071	1645833
Range	1.1463E9	1.642E9	1.4497E9
Std Dev	4421439	5393747	4798251

제3절 기초연금 수급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보유실태

1. 소득항목별 보유실태

□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하여 자산조사 범위인 노인과 배우자 중심으로 분석 DB 구축과정에서 연계한 행복e음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노인가구 유형별로 소득평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소득항목별 보유실태를 BoxPlot으로 제시함

○ 소득평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소득 항목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의 분포를 살펴봄

- 앞서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보유 분석과 마찬가지로 개별 항목별 값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0값)가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하고 있는 전체 가구의 BoxPlot과 0을 제외한 보유가구의 BoxPlot을 각각 분석하여 제시함

- 예를 들어, 전체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평균을 살펴보면 노인단독 가구 약 4만원, 노인부부 가구 약 16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가구 40만원으로 나타났음

  • 0인 가구를 제외한 근로소득 보유가구 평균을 살펴보면 노인단독 약 63만원, 노인부부 가구 약 87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가구 약 121만원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

– 전체 가구

Boxplot
근로소득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107638.1	Max	42348913
Nobs	3556717	Pooled Std Dev	345844.5		

Group Statistics			
N	2289461	895236	372020
평균	41297.3	156023.3	399473.3
Min	0	0	0
Max	13850000	42348913	14296121
Q1	0	0	0
Q2	0	0	0
Q3	0	0	824617.5
Range	13850000	42348913	14296121
Std Dev	202380.6	424720.4	6762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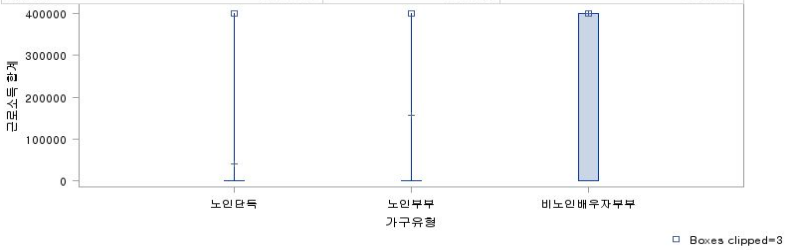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Boxplot
근로소득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	평균	884987.1	Max	42348913
Nobs	432592	Pooled Std Dev	587401.6		

Group Statistics			
N	149613	159916	123063
평균	631954.2	873444.2	1207610
Min	1	1	1
Max	13850000	42348913	14296121
Q1	150000	308333	836750
Q2	577500	900000	1188640
Q3	991667	1250000	1497670
Range	13849999	42348912	14296120
Std Dev	503481.7	619041.6	6377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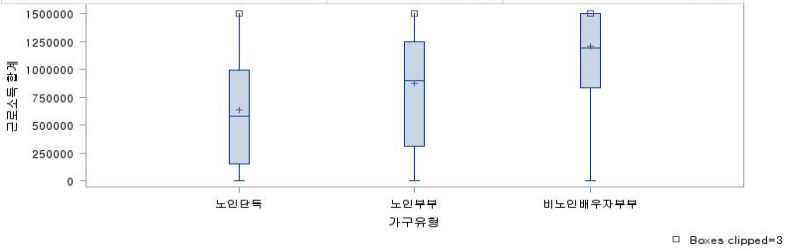

○ 사업소득

– 전체 가구

Boxplot
사업소득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11065.78	Max	13441667
Nobs	3556717	Pooled Std Dev	84462.55		

Group Statistics			
N	2289461	895236	372020
평균	4333.493	16189.77	40166.76
Min	0	0	0
Max	13441667	7850000	7066667
Q1	0	0	0
Q2	0	0	0
Q3	0	0	0
Range	13441667	7850000	7066667
Std Dev	56405.92	102290	1531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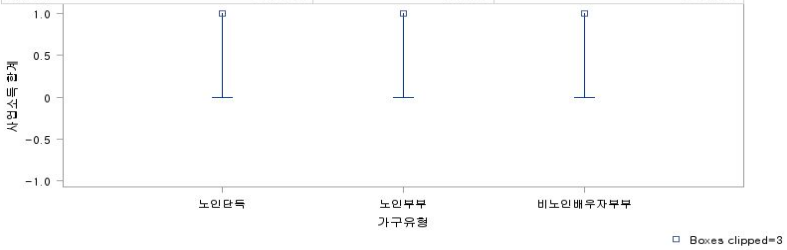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Boxplot
사업소득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	평균	228855.4	Max	13441667
Nobs	171977	Pooled Std Dev	316035.2		

Group Statistics			
N	48480	64695	58802
평균	204648.6	224030.6	254121.2
Min	140	1	1
Max	13441667	7850000	7066667
Q1	66667	66667	83333
Q2	125000	125000	150000
Q3	250000	275000	325000
Range	13441527	7849999	7066666
Std Dev	330544.9	313411.8	3065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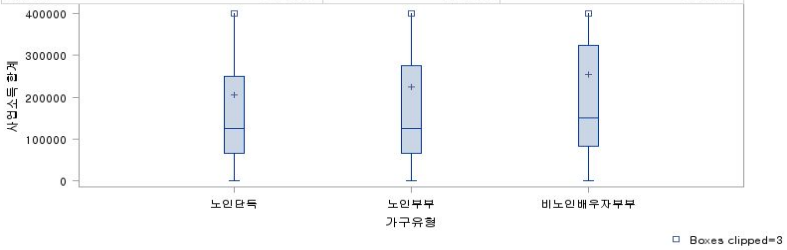

○ 재산소득

– 전체 가구

Boxplot
재산소득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6539.695	Max	8425000
Nobs	3556717	Pooled Std Dev	50538.68		

Group Statistics			
N	2289461	895236	372020
평균	3354.949	11688.34	13749.26
Min	0	0	0
Max	6458333	8425000	6925000
Q1	0	0	0
Q2	0	0	0
Q3	0	0	0
Range	6458333	8425000	6925000
Std Dev	33380.43	71550.27	7240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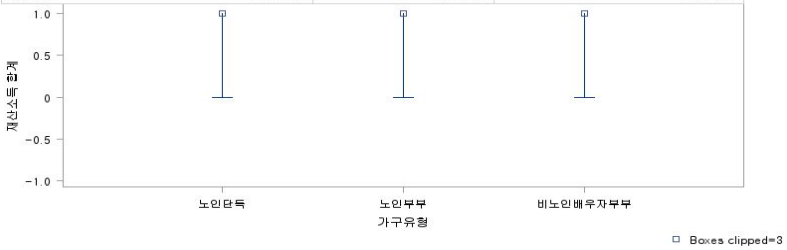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Boxplot
재산소득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	평균	222486.4	Max	8425000
Nobs	104545	Pooled Std Dev	197037.6		

Group Statistics			
N	40292	42361	21892
평균	190634	247015.4	233647
Min	14	1	10
Max	6458333	8425000	6925000
Q1	83000	86000	108000
Q2	140000	183333	179000
Q3	258000	335000	300000
Range	6458319	8424999	6924990
Std Dev	166170.7	223748.4	1941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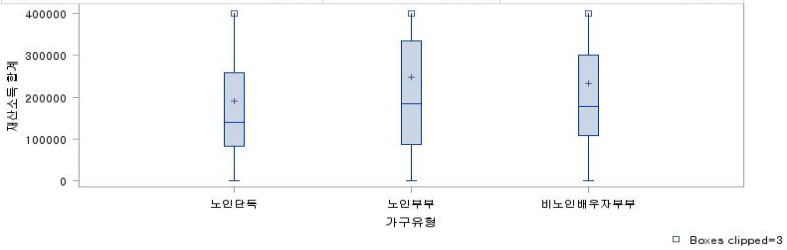

○ 공적이전소득

– 전체 가구

Boxplot
공적이전소득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105319.6	Max	81075010
Nobs	3556717	Pooled Std Dev	187712		

Group Statistics			
N	2289461	895236	372020
평균	58901.72	159645.9	260249.2
Min	0	0	0
Max	68184630	54958520	81075010
Q1	0	0	0
Q2	0	130310	231170
Q3	110740	226390	362045
Range	68184630	54958520	81075010
Std Dev	129496.3	239024	3101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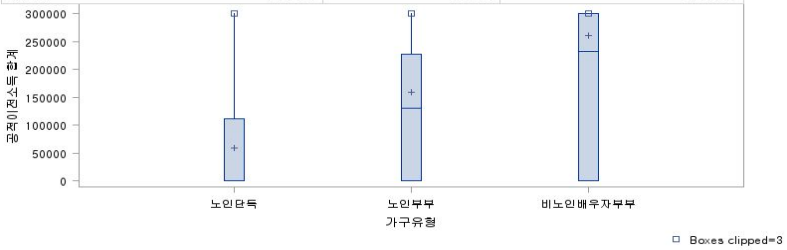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Boxplot
공적이전소득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4790	평균	263508.9	Max	81075010
Nobs	1421553	Pooled Std Dev	232973.7		

Group Statistics			
N	659083	499351	263119
평균	204607.3	286213.1	367962.5
Min	4790	20000	23650
Max	68184630	54958520	81075010
Q1	125130	148200	218050
Q2	164260	206890	292860
Q3	236060	342300	446980
Range	68179840	54938520	81051360
Std Dev	168639.3	257297.2	3104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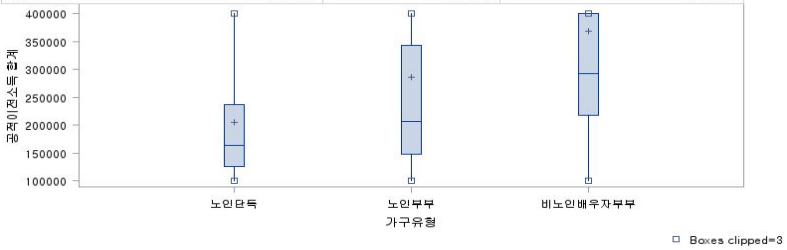

2.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하여 자산조사 범위인 노인과 배우자 중심으로 분석 DB 구축과정에서 연계한 행복e음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노인가구 유형별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재산 항목별 보유실태를 BoxPlot으로 제시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항목으로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에 대한 기초통계를 살펴봄

- 앞서 소득항목별 분석과 동일하게 해당 항목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0값)가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하고 있는 전체 가구 BoxPlot과 0을 제외한 보유가구의 BoxPlot을 각각 분석하여 제시함
- 주택가액 평균을 살펴보면 노인단독 약 2,500만원, 노인부부 6,300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6,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0인 가구를 제외한 보유가구의 평균은 노인단독 6,700만원, 노인부부 8,700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9,400만원으로 나타남
- 소액 보유를 포함하여 보유비율이 높은 금융재산의 경우, 전체 수급가구 기준 노인단독 1,800만원, 노인부부 4,900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4,900만원이며, 0인 가구를 제외하더라도 노인단독 약 2,000만원, 노인부부와 비노인배우자부부 모두 약 5,000만원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 주택

– 전체 가구

Boxplot
주택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38825443	Max	1.726E9
Nobs	3556717	Pooled Std Dev	62999265		

Group Statistics			
N	2289461	895236	372020
평균	24965311	63043628	65843459
Min	0	0	0
Max	1.726E9	1.54E9	1.712E9
Q1	0	0	0
Q2	0	36499998	43000000
Q3	25600000	96099999	1.02E8
Range	1.726E9	1.54E9	1.712E9
Std Dev	52373340	78515316	78928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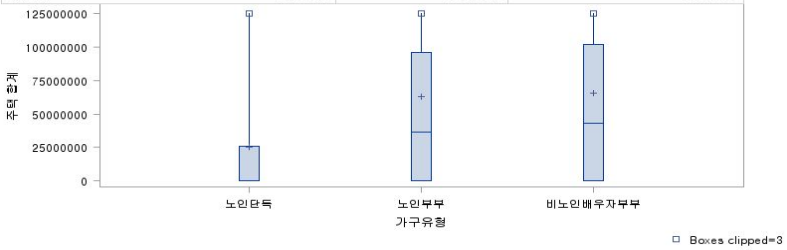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Boxplot
주택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	평균	78876261	Max	1.726E9
Nobs	1750731	Pooled Std Dev	74087605		

Group Statistics			
N	844167	646681	259883
평균	67708293	87274754	94254274
Min	1	1	1
Max	1.726E9	1.54E9	1.712E9
Q1	17200000	28999998	38399999
Q2	48000000	65000000	75000000
Q3	96000000	1.22E8	1.28E8
Range	1.726E9	1.54E9	1.712E9
Std Dev	67417608	80120564	78992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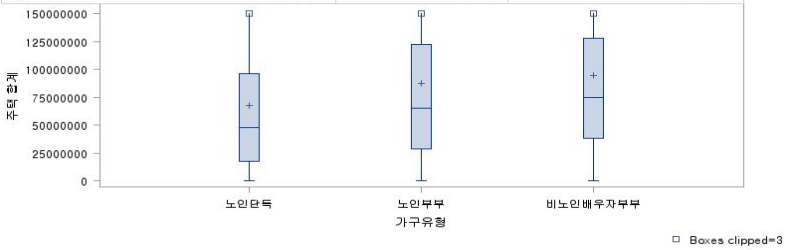

○ 토지

– 전체 가구

Boxplot
토지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16850813	Max	1.057E10
Nobs	3556717	Pooled Std Dev	45634777		

Group Statistics			
N	2289461	895236	372020
평균	9814326	31640390	24564381
Min	0	0	0
Max	1.057E10	1.008E10	7.6804E9
Q1	0	0	0
Q2	0	0	0
Q3	5928	38637705	23969001
Range	1.057E10	1.008E10	7.6804E9
Std Dev	33243084	63722060	57775044

– 보유가구(0 제외)

Boxplot
토지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	평균	50648961	Max	1.057E10
Nobs	1183313	Pooled Std Dev	68545661		

Group Statistics			
N	573041	445972	164300
평균	39211010	63514338	55620457
Min	1	8	12
Max	1.057E10	1.008E10	7.6804E9
Q1	5057500	11262485	9159260
Q2	19667340	38884250	31281590
Q3	52920000	89491930	76454403
Range	1.057E10	1.008E10	7.6804E9
Std Dev	57118542	78272134	76359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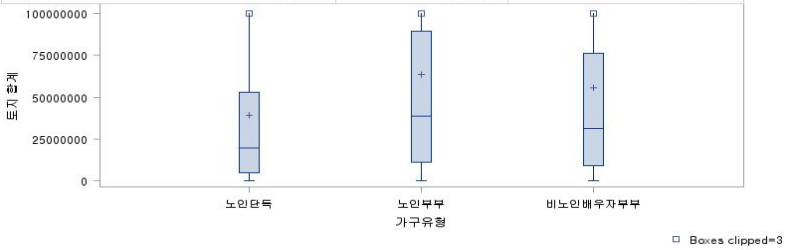

○ 건축물

– 전체 가구

Boxplot
건축물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1133081	Max	2.1867E9
Nobs	3556717	Pooled Std Dev	9813719		

Group Statistics			
N	2289461	895236	372020
평균	572182	1981195	2544014
Min	0	0	0
Max	2.1867E9	1.2685E9	1.4514E9
Q1	0	0	0
Q2	0	0	0
Q3	0	0	0
Range	2.1867E9	1.2685E9	1.4514E9
Std Dev	6834816	12793631	15472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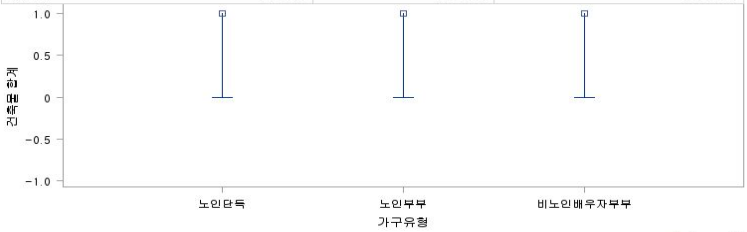

Boxes clipped=3

– 보유가구(0 제외)

Boxplot
건축물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	평균	17828842	Max	2.1867E9
Nobs	226041	Pooled Std Dev	34953307		

Group Statistics			
N	85292	97234	43515
평균	15358864	18240911	21749379
Min	1	4320	2056
Max	2.1867E9	1.2685E9	1.4514E9
Q1	1196250	1464810	2068000
Q2	4328495	5475724	7794000
Q3	17829933	21194248	26433540
Range	2.1867E9	1.2685E9	1.4514E9
Std Dev	32044502	34790762	40361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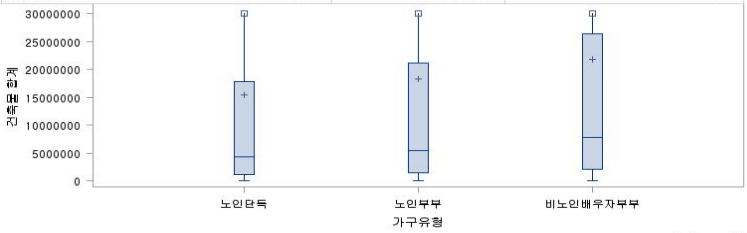

Boxes clipped=3

○ 임차보증금

– 전체 가구

Boxplot
임차보증금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4007424	Max	4.8E8
Nobs	3556717	Pooled Std Dev	15787200		

Group Statistics			
N	2289461	895236	372020
평균	3396578	4612138	6311459
Min	0	0	0
Max	4.1464E8	4.7041E8	4.8E8
Q1	0	0	0
Q2	0	0	0
Q3	0	0	0
Range	4.1464E8	4.7041E8	4.8E8
Std Dev	13196999	18701729	21664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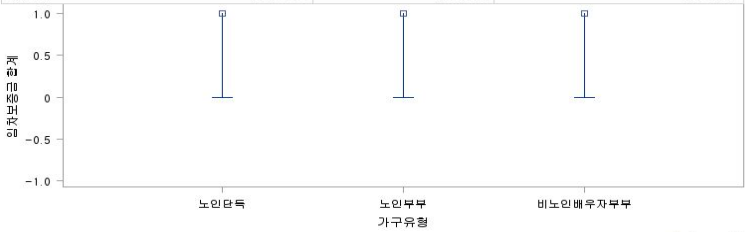

Boxes clipped=3

– 보유가구(0 제외)

Boxplot
임차보증금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	평균	24984398	Max	4.8E8
Nobs	570487	Pooled Std Dev	31422741		

Group Statistics			
N	385016	115568	69903
평균	20197429	35727468	33589245
Min	4	1	1
Max	4.1464E8	4.7041E8	4.8E8
Q1	3000000	10000000	8000000
Q2	10341000	23400000	20000000
Q3	27300000	47000000	43000000
Range	4.1464E8	4.7041E8	4.8E8
Std Dev	26387457	39970970	39770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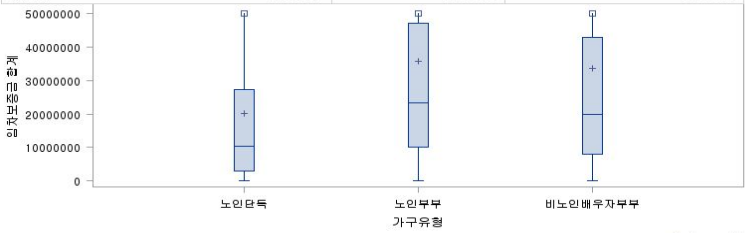

Boxes clipped=3

○ 기타 일반재산

– 전체 가구

Boxplot
기타 일반재산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2321651	Max	4.4664E9
Nobs	3556717	Pooled Std Dev	19967715		

Group Statistics			
N	2289461	895236	372020
평균	1926732	3155895	2744492
Min	0	0	0
Max	4.4664E9	2.3253E9	1.26E9
Q1	0	0	0
Q2	0	0	0
Q3	0	0	0
Range	4.4664E9	2.3253E9	1.26E9
Std Dev	17886447	24009987	21348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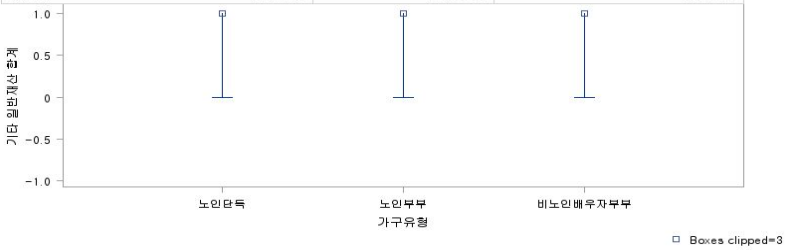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Boxplot
기타 일반재산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	평균	77163831	Max	4.4664E9
Nobs	107012	Pooled Std Dev	86424189		

Group Statistics			
N	58711	34024	14277
평균	75133770	83037596	71514038
Min	1	1	10
Max	4.4664E9	2.3253E9	1.26E9
Q1	16000000	16497319	7156000
Q2	49000000	57731806	48594200
Q3	1.087E8	1.1947E8	1.05E8
Range	4.4664E9	2.3253E9	1.26E9
Std Dev	83518899	92386790	83418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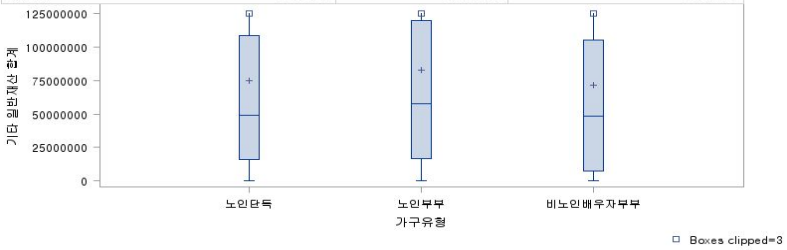

○ 금융재산

– 전체 가구

Boxplot
금융재산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29124442	Max	2.0804E9
Nobs	3556717	Pooled Std Dev	38990393		

Group Statistics			
N	2289461	895236	372020
평균	18179846	48792743	49148782
Min	0	0	0
Max	1.0558E9	2.0804E9	9.3072E8
Q1	803000	9663000	12141610
Q2	5695000	30794000	32981500
Q3	23388000	70462000	69581000
Range	1.0558E9	2.0804E9	9.3072E8
Std Dev	28847573	53185890	51048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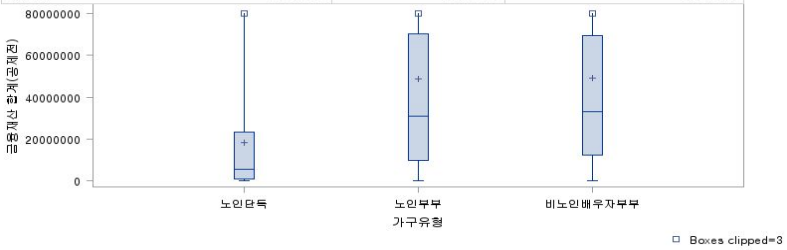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Boxplot
금융재산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0	평균	31073696	Max	2.0804E9
Nobs	3333604	Pooled Std Dev	39836277		

Group Statistics			
N	2083770	882249	367585
평균	19974396	49510988	49741774
Min	10	1000	1000
Max	1.0558E9	2.0804E9	9.3072E8
Q1	1514000	10348000	12738000
Q2	7462000	31595000	33595000
Q3	26396000	71299000	70174000
Range	1.0558E9	2.0804E9	9.3072E8
Std Dev	29639214	53243007	51067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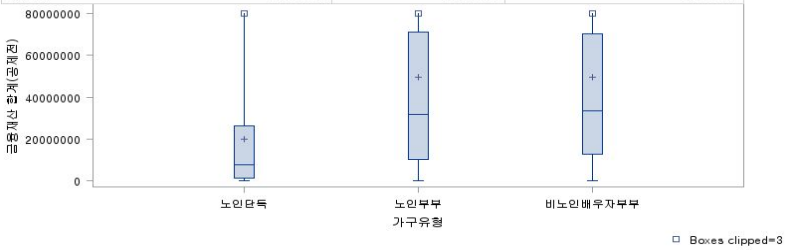

○ 자동차

– 전체 가구

Boxplot
자동차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957997.6	Max	3.0818E8
Nobs	3556717	Pooled Std Dev	3213123		

Group Statistics			
N	2289461	895236	372020
평균	394156.9	1530185	3051026
Min	0	0	0
Max	3.0818E8	1.6186E8	3.0622E8
Q1	0	0	0
Q2	0	0	514239
Q3	0	765600	3820000
Range	3.0818E8	1.6186E8	3.0622E8
Std Dev	2198132	4039759	5449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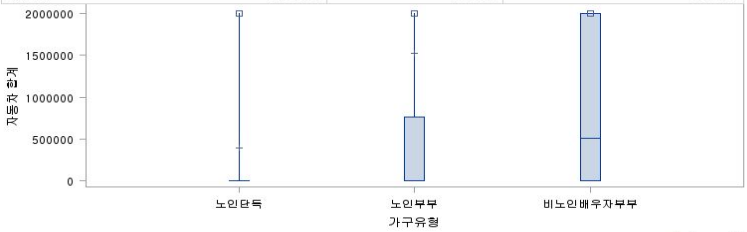

Boxes clipped=3

– 보유가구(0 제외)

Boxplot
자동차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30000	평균	5261784	Max	3.0818E8
Nobs	647561	Pooled Std Dev	6170663		

Group Statistics			
N	175954	271460	200147
평균	5128652	5046330	5671046
Min	30000	30000	30000
Max	3.0818E8	1.6186E8	3.0622E8
Q1	930114	1070000	1300794
Q2	2470000	2570000	3290000
Q3	7570000	7063731	8118110
Range	3.0815E8	1.6183E8	3.0619E8
Std Dev	6211952	6006355	6351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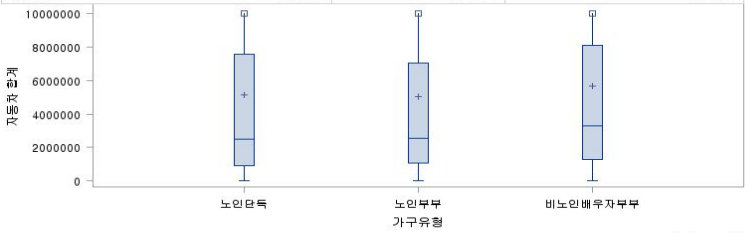

Boxes clipped=3

○ 부채

– 전체 가구

Boxplot
부채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11026871	Max	1.07E11
Nobs	3556717	Pooled Std Dev	1.1564E8		

Group Statistics			
N	2289461	895236	372020
평균	6222481	16872798	26525984
Min	0	0	0
Max	1.03E11	2.257E10	1.07E11
Q1	0	0	0
Q2	0	0	1420000
Q3	0	8506000	25650000
Range	1.03E11	2.257E10	1.07E11
Std Dev	1.1534E8	65552075	1.8882E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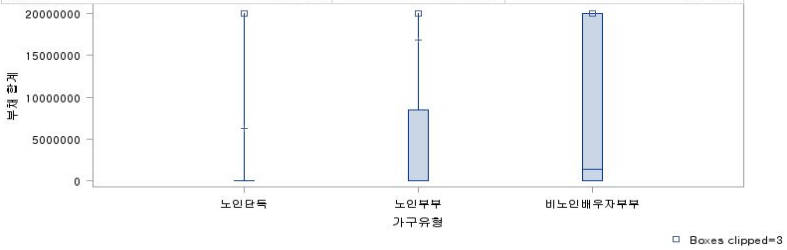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Boxplot
부채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31	평균	44345287	Max	1.07E11
Nobs	884411	Pooled Std Dev	2.2908E8		

Group Statistics			
N	369462	318748	196201
평균	38559112	47388960	50296362
Min	25000	26920	31
Max	1.03E11	2.257E10	1.07E11
Q1	5000000	6125000	7041000
Q2	15863000	21254500	23000000
Q3	45657000	57580000	60500000
Range	1.03E11	2.257E10	1.07E11
Std Dev	2.8493E8	1.0307E8	2.5769E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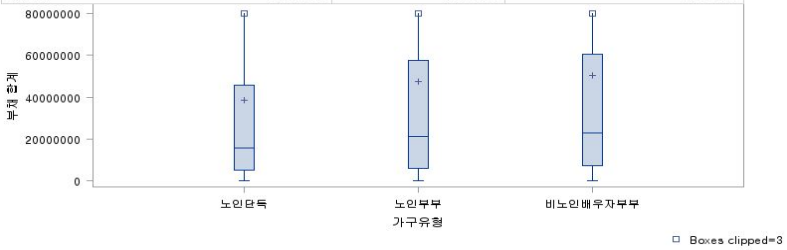

3. 소득인정액 보유실태 및 구성

□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하여 자산조사 범위인 노인과 배우자 중심으로 분석 DB 구축과정에서 연계한 행복e음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 및 이를 구성하고 있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실태를 BoxPlot으로 제시함

○ 기초연금 수급가구 유형별로 소득인정액 평균을 살펴보면, 노인단독 가구 약 13만원, 노인부부 가구 약 43만원, 비노인 배우자부부 가구 약 61만원으로 비노인 배우자부부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소득인정액이 0인 가구를 제외하면 노인단독 약 26만원, 노인부부 가구 약 51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가구 약 68만원으로, 노인단독 가구의 경우 2배 정도 높아짐

○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가구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득평가액의 평균은 노인단독 가구 약 8만원, 노인부부 약 23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가구 46만원으로 나타났고, 0인 가구를 제외할 경우 노인단독 약 24만원, 노인부부 약 38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약 56만원으로 나타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살펴보면, 노인단독 약 5만원, 노인부부 약 21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약 1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0인 가구를 제외하면 노인단독 약 17만원, 노인부부 약 32만원, 비노인배우자부부 약 31만원으로 나타남

○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Boxplot
소득인정액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254727.9	Max	1488000
Nobs	3556717	Pooled Std Dev	269923.5		

Group Statistics			
N	2289461	895236	372020
평균	128069.7	431281.6	609337.3
Min	0	0	0
Max	930000	1487999	1488000
Q1	0	128243	282081.5
Q2	0	360438	596049.5
Q3	202130	686002.5	919145.5
Range	930000	1487999	1488000
Std Dev	187527.1	364473	4006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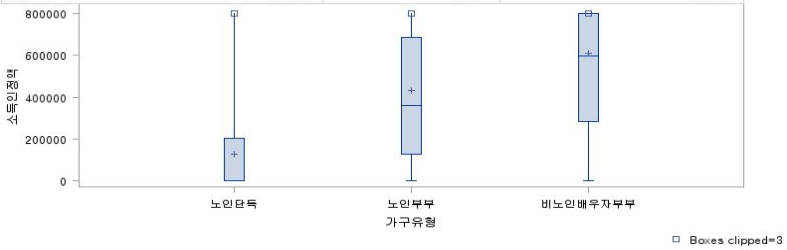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Boxplot
소득인정액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	평균	405932.4	Max	1488000
Nobs	2231887	Pooled Std Dev	280134.2		

Group Statistics			
N	1141975	755120	334792
평균	256757.5	511307.9	677094
Min	3	1	7
Max	930000	1487999	1488000
Q1	114910	223987.5	374696
Q2	202672	452487	658931.5
Q3	366000	748810.5	957724
Range	929997	1487998	1487993
Std Dev	193548.4	341425.8	3639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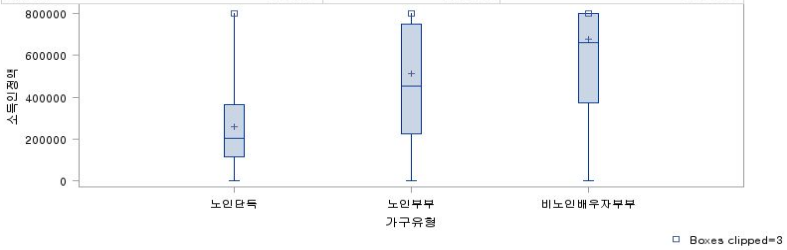

○ 소득평가액

– 전체 가구

Boxplot
소득평가액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159056.7	Max	82604510
Nobs	3556717	Pooled Std Dev	258837.3		

Group Statistics			
N	2289461	895236	372020
평균	78822.81	238230.8	462300.9
Min	0	0	0
Max	68184630	55239318	82604510
Q1	0	0	175240
Q2	0	147980	362080
Q3	124770	338310	692130
Range	68184630	55239318	82604510
Std Dev	170672.5	329390.1	447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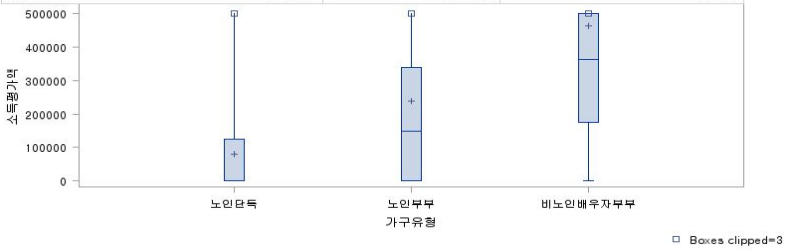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Boxplot
소득평가액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1	평균	349354.2	Max	82604510
Nobs	1619330	Pooled Std Dev	317138		

Group Statistics			
N	744784	566055	308491
평균	242300.8	376770.5	557504.7
Min	34	1	10
Max	68184630	55239318	82604510
Q1	126130	155450	269230
Q2	178390	261900	458333
Q3	287440	502000	765550
Range	68184596	55239317	82604500
Std Dev	223454.5	345536.6	4339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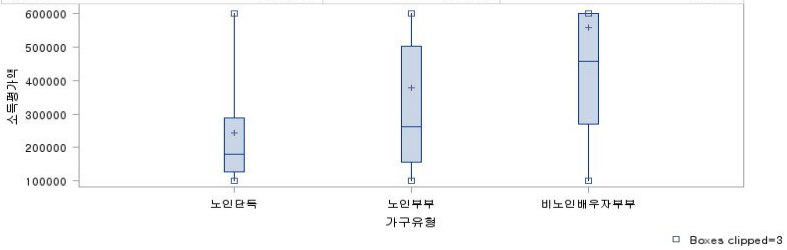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전체 가구

Boxplot
재산의 소득환산액

Overall Statistics					
Min	0	평균	107650.5	Max	1.856E8
Nobs	3556717	Pooled Std Dev	477974.8		

Group Statistics			
N	2289461	895236	372020
평균	55190.03	208273.7	188357.6
Min	0	0	0
Max	79461043	79279871	1.856E8
Q1	0	0	0
Q2	0	91833.5	57661.5
Q3	38030	326153.5	272770
Range	79461043	79279871	1.856E8
Std Dev	305511.8	584042.9	888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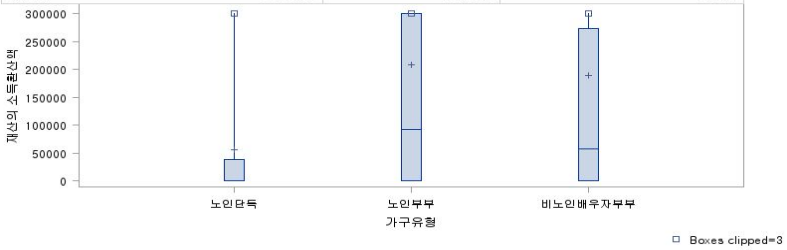

– 보유가구(0 제외)

Boxplot
재산의 소득환산액_0제외

Overall Statistics					
Min	2	평균	246634.7	Max	1.856E8
Nobs	1552427	Pooled Std Dev	703855.9		

Group Statistics			
N	738550	587845	226032
평균	171085.8	317182.5	310012.7
Min	3	2	3
Max	79461043	79279871	1.856E8
Q1	43083	97027	86748.5
Q2	111140	236762	214040
Q3	235603	453572	411957.5
Range	79461040	79279869	1.856E8
Std Dev	519146.2	696369.7	1122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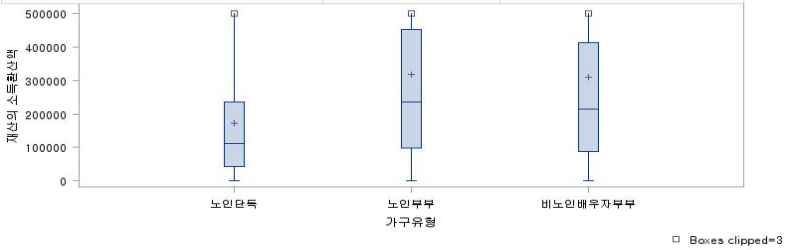

제5장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5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정책 모의분석 (policy simulation)

□ 여기서는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의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수행 결과를 제시함

○ 먼저, 4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행복e음으로부터 현행 기초연금 수급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초통계를 연계하여 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구축된 분석 DB를 활용하여 전체 노인가구의 2016년 예상 소득인정액 분포를 추정함[19)]

○ 다음으로, 가구 균등화 지수 적용,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조정 등 기초연금 제도 개선방안 적용에 따른 정책 모의분석 결과 및 수급률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하여 시차보정 및 missing data 보정,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에서 누락된 항목에 대한 보정 방법론 등을 고려하여 정책 모의분석 틀을 설정하여 분석함
- 이러한 방법에 따라 분석된 결과로 전체 노인가구의 예상 소득인정액 분포 및 2016년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제시함

19) IMA(International Micro-simulation Association)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법론과 EUROMOD의 micro simulation 방법론을 참조함

□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모의분석 기본방향

○ 건강보험 공적 행정자료 & 행복e음 수급정보 연계 분석 DB

- 2016년 기초연급 수급대상 전체 노인 & 배우자 분석 DB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현행 기초연금 선정체계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5% ☞ 4%) 등 제도 개선사항을 모의 적용하여 개별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
- 분석 DB에 연계된 소득재산 항목의 기준시점을 2016년 행복e음 연계 및 적용 시점에 맞도록 시차 보정
  - 건강보험보수월액 : 2015년 연간 임금상승률 예상치 4.5%(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5.4월호) 반영
  - 공적연금급여액 :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 0.7%(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5.10월) 반영
- 근로소득공제 상향 조정(분석 DB 소득항목 중 건강보험 보수월액 적용) : ('14) 48만원 공제 + 30% 추가 공제 ☞ ('15) 52만원 공제 + 30% 추가 공제 ☞ ('16) 56만원 ('16년 최저임금 6,030원×4시간×23일)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지역별 기초공제액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동일 수준 적용

□ 전체 노인가구의 2016년 예상 소득인정액 분포 도출

○ 기초연금 신청 시 실제 소득인정액 산출에 필요한 소득재산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보유 행정자료에서 전체 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제공 가능한 제한적인 항목을 기초로,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전월세보증금, 각종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제외) 등이 누락된 개별 가구의 '제한적 소득인정액' 분포를 우선 도출함

< 제한적 소득인정액 vs. 실제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상시근로소득−56만원) + 종합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 보훈급여 등 기타 공적이전소득)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 지역별 기초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4%)] / 12

– 현행 기초연금 수급가구(소득인정액 하위 70%) 대상으로, 행복e음 수급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항목으로부터 산출된 '제한된 소득인정액'과 '실제 소득인정액'으로부터 소득인정액 추정식을 도출한 후, 이를 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 소득재산 항목 기준으로 산출된 '제한적 소득인정액'에 적용하여 추정함

○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재산 항목별 기초통계 및 실제 소득인정액 정보 연계 및 통계적인 추정방법을 활용하여 전체 노인가구의 2016년 예상 '실제 소득인정액' 분포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안을 도출함

- 2016년 예상 실제 소득인정액 분포 추정 시, 가구유형 및 연령집단, 지역구분을 반영한 집단[20]별로 제한적 소득인정액이 0인 가구와 0이 아닌 가구를 구분하여 각각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현행 수급가구의 실제 소득인정액 분포와 추정식 활용
- 개별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추정치를 기초로, 현행 기초연금 가구 균등화 지수(1:1.6)를 적용하여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포 도출

○ 요컨대,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제한적 소득인정액과 실제 소득인정액 간의 관계를 적용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실제 소득인정액 정보가 없는 비수급 가구의 '제한된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누락된 항목들이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실제 소득인정액'을 추정함

-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로부터 목표 수급률 70%에 근접할 수 있도록 수급률 및 신청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상향 조정된 선정기준을 도출함

20) 제한적 소득인정액이 0인 가구와 0이 아닌 가구로 구분하고, 노인가구 유형(노인단독, 비노인배우자부부, 노인부부), 연령(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고려한 세부 집단별로 제한적 소득인정액과 실제 소득인정액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집단별로 이를 적용하여 개별 가구의 예상 실제 소득인정액 산출

□ 전체 노인가구 2016년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노인 분포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노인 분포		
노인단독 기준(원) (노인부부의 경우 1.6배 적용)	노인비율	누적 노인비율
0	19.10%	19.10%
0 초과 ~ 100,000 이하	4.72%	23.83%
100,000 초과 ~ 200,000 이하	9.49%	33.31%
200,000 초과 ~ 300,000 이하	9.31%	42.62%
300,000 초과 ~ 400,000 이하	7.08%	49.70%
400,000 초과 ~ 500,000 이하	5.87%	55.57%
500,000 초과 ~ 600,000 이하	5.11%	60.68%
600,000 초과 ~ 700,000 이하	4.36%	65.03%
700,000 초과 ~ 800,000 이하	3.75%	68.78%
800,000 초과 ~ 810,000 이하	0.34%	69.13%
810,000 초과 ~ 820,000 이하	0.33%	69.46%
820,000 초과 ~ 830,000 이하	0.33%	69.79%
830,000 초과 ~ 840,000 이하	0.33%	70.12%
840,000 초과 ~ 850,000 이하	0.30%	70.41%
850,000 초과 ~ 860,000 이하	0.29%	70.70%
860,000 초과 ~ 870,000 이하	0.28%	70.99%
870,000 초과 ~ 880,000 이하	0.28%	71.27%
880,000 초과 ~ 890,000 이하	0.27%	71.54%
890,000 초과 ~ 900,000 이하	0.29%	71.83%
900,000 초과 ~ 910,000 이하	0.26%	72.09%
910,000 초과 ~ 920,000 이하	0.25%	72.34%
920,000 초과 ~ 930,000 이하	0.25%	72.59%
930,000 초과 ~ 940,000 이하	0.24%	72.83%
940,000 초과 ~ 950,000 이하	0.24%	73.07%
950,000 초과 ~ 960,000 이하	0.23%	73.30%
960,000 초과 ~ 970,000 이하	0.23%	73.53%
970,000 초과 ~ 980,000 이하	0.23%	73.76%
980,000 초과 ~ 990,000 이하	0.22%	73.98%
990,000 초과 ~ 1,000,000 이하	**0.22%**	**74.20%**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노인 분포		
노인단독 기준(원) (노인부부의 경우 1.6배 적용)	노인비율	누적 노인비율
1,000,000 초과 ~ 1,010,000 이하	0.21%	74.41%
1,010,000 초과 ~ 1,020,000 이하	0.19%	74.59%
1,020,000 초과 ~ 1,030,000 이하	0.19%	74.78%
1,030,000 초과 ~ 1,040,000 이하	0.18%	74.97%
1,040,000 초과 ~ 1,050,000 이하	0.18%	75.14%
1,050,000 초과 ~ 1,060,000 이하	0.17%	75.32%
1,060,000 초과 ~ 1,070,000 이하	0.17%	75.49%
1,070,000 초과 ~ 1,080,000 이하	0.18%	75.66%
1,080,000 초과 ~ 1,090,000 이하	0.17%	75.84%
1,090,000 초과 ~ 1,100,000 이하	0.17%	76.00%
1,100,000 초과 ~ 1,110,000 이하	0.17%	76.17%
1,110,000 초과 ~ 1,120,000 이하	0.16%	76.33%
1,120,000 초과 ~ 1,130,000 이하	0.16%	76.49%
1,130,000 초과 ~ 1,140,000 이하	0.16%	76.65%
1,140,000 초과 ~ 1,150,000 이하	0.15%	76.80%
1,150,000 초과 ~ 1,160,000 이하	0.15%	76.95%
1,160,000 초과 ~ 1,170,000 이하	0.15%	77.11%
1,170,000 초과 ~ 1,180,000 이하	0.15%	77.26%
1,180,000 초과 ~ 1,190,000 이하	0.15%	77.41%
1,190,000 초과 ~ 1,200,000 이하	0.15%	77.55%
1,200,000 초과 ~ 1,210,000 이하	0.15%	77.70%
1,210,000 초과 ~ 1,220,000 이하	0.14%	77.84%
1,220,000 초과 ~ 1,230,000 이하	0.14%	77.99%
1,230,000 초과 ~ 1,240,000 이하	0.14%	78.13%
1,240,000 초과 ~ 1,250,000 이하	0.14%	78.26%
1,250,000 초과 ~ 1,260,000 이하	0.14%	78.40%
1,260,000 초과 ~ 1,270,000 이하	0.13%	78.53%
1,270,000 초과 ~ 1,280,000 이하	0.13%	78.67%
1,280,000 초과 ~ 1,290,000 이하	0.13%	78.80%
1,290,000 초과 ~ 1,300,000 이하	0.13%	78.93%
1,300,000 초과 ~ 1,310,000 이하	0.13%	79.06%
1,310,000 초과 ~ 1,320,000 이하	0.13%	79.19%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전체 노인 분포		
노인단독 기준(원) (노인부부의 경우 1.6배 적용)	노인비율	누적 노인비율
1,320,000 초과 ~ 1,330,000 이하	0.12%	79.31%
1,330,000 초과 ~ 1,340,000 이하	0.13%	79.44%
1,340,000 초과 ~ 1,350,000 이하	0.12%	79.56%
1,350,000 초과 ~ 1,360,000 이하	0.12%	79.68%
1,360,000 초과 ~ 1,370,000 이하	0.12%	79.80%
1,370,000 초과 ~ 1,380,000 이하	0.12%	79.92%
1,380,000 초과 ~ 1,390,000 이하	0.12%	80.04%
1,390,000 초과 ~ 1,400,000 이하	0.12%	80.16%
1,400,000 초과 ~ 1,410,000 이하	0.11%	80.27%
1,410,000 초과 ~ 1,420,000 이하	0.12%	80.38%
1,420,000 초과 ~ 1,430,000 이하	0.11%	80.50%
1,430,000 초과 ~ 1,440,000 이하	0.11%	80.61%
1,440,000 초과 ~ 1,450,000 이하	0.11%	80.72%
1,450,000 초과 ~ 1,460,000 이하	0.11%	80.83%
1,460,000 초과 ~ 1,470,000 이하	0.11%	80.94%
1,470,000 초과 ~ 1,480,000 이하	0.11%	81.05%
1,480,000 초과 ~ 1,490,000 이하	0.10%	81.15%
1,490,000 초과 ~ 1,500,000 이하	0.11%	81.26%
1,500,000 초과 ~ 1,600,000 이하	1.00%	82.26%
1,600,000 초과 ~ 1,700,000 이하	0.90%	83.16%
1,700,000 초과 ~ 1,800,000 이하	0.83%	83.99%
1,800,000 초과 ~ 1,900,000 이하	0.77%	84.76%
1,900,000 초과 ~ 2,000,000 이하	0.72%	85.48%
2,000,000 초과	14.52%	100.00%

□ 전체 노인가구의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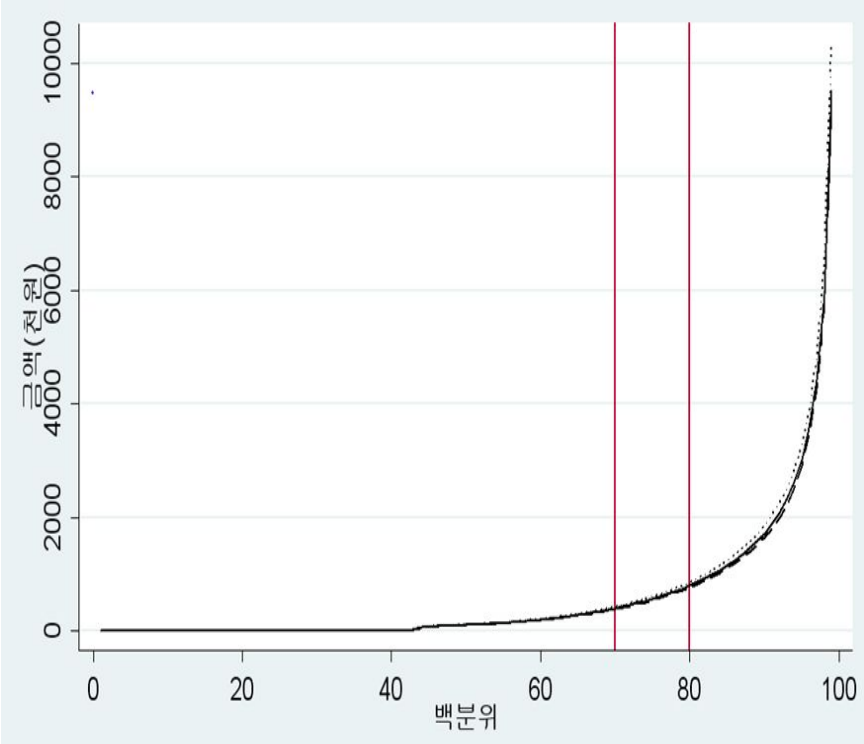

□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 기초연금 가구 균등화 지수 적용 ☞ (단독) 1 : (부부) 1.6

○ 수급률 및 예상 신청률을 고려한 선정기준 상향 조정

- 2015년 당시 기초연금 도입 후 수급률 상승을 감안하여 2014년 8~10월 3개월 평균 수급률 약 66.14%에 따라서 예상 신청률을 약 94.4%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소득인정액 하위 74.1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정기준을 도출한 바 있음

- 그러나, 2014년 10~11월 약 66.6%를 정점으로 수급률이 다소 감소하여 2015년 10월에는 약 66.1%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수급률 제고를 위해 예상 신청률에 이를 반영하여 선정기준의 비율을 다소 상향 조정하였음

○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안

☞ **노인단독 100만원 / 노인부부 160만원**

구분		노인단독 소득인정액(원)	노인부부 소득인정액(원)
2015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하위 74.15% (신청률 94.4%)	93만원 (⇧ 6만원, 6.9%)	148만 8천원 (⇧ 9.6만원, 6.9%)
2016년 선정기준 조정안	소득인정액 하위 74.20% (신청률 94.3%)	**100만원 (⇧ 7만원, 7.5%)**	**160만원 (⇧ 11.2만원, 7.5%)**

제6장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및 수급률 제고방안

6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및 수급률 제고방안

□ 여기서는 1년(2014.11~2015.10) 동안의 수급률 변화 추이 및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과 더불어 시행 예정인 수급률 제고방안으로 수급이력 관리제를 제시하고자 함

제1절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 지난 1년 간의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및 주요 요인을 검토하여 선정기준 도출에 활용함

○ 2015년 기초연금 수급정보 및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분석 DB에서 분석된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수급률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기초통계를 검토함

○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 외에 선정체계 변화 및 정책홍보, 행복e음을 통한 확인조사 등 수급률 증감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여 수급률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지난 1년(2014.11~2015.10) 동안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 및 수급률 변화 추이

구분	노인인구(명)	수급자 수(명)	수급률(%)
2014. 11	6,500,659	4,326,424	66.6%
2014. 12	6,520,607	4,333,905	66.5%
2015. 1	6,548,916	4,346,687	66.4%
2015. 2	6,573,804	4,369,258	66.5%
2015. 3	6,598,632	4,396,011	66.6%
2015. 4	6,618,362	4,396,177	66.4%
2015. 5	6,643,012	4,409,931	66.4%
2015. 6	6,660,006	4,419,341	66.4%
2015. 7	6,681,990	4,435,961	66.4%
2015. 8	6,699,416	4,443,421	66.3%
2015. 9	6,717,950	4,450,712	66.3%
2015. 10	6,736,464	4,451,598	66.1%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참고>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전환 전후 수급률 변화추이

구 분	수급률(%)	구 분	수급률(%)
'13. 1월	65.99	'14. 1월	65.06
2월	66.09	2월	65.08
3월	66.01	3월	65.07
4월	66.05	4월	64.68
5월	66.03	5월	64.73
6월	65.95	6월	64.47
7월	65.92	7월	64.01
8월	65.86	8월	65.43
9월	65.12	9월	66.42
10월	65.14	10월	66.56
11월	65.04	11월	66.55
12월	64.71	12월	66.46

주: 2014년 7월 기초연금 전환 이후, 8월부터 신규 신청자 급여지급 반영(소급 적용) / 2014년 10월 기준, 전체 노인 6,482,963명 중 기초연금 수급노인 4,315,238명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영향요인 분석

○ 2014.11월부터 2015.10월까지 지난 1년 동안 월별로 수급자수와 수급률의 변화 추이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함

- 선정기준 이외에 선정체계 조정 및 정책홍보, 확인조사 등 수급률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함
  - 각년도 선정기준액 인상, 각종 공제기준 변화, 확인조사, 정책 홍보 등

시점	수급률 변화 영향요인	증감
2014.12.	'14년 상반기 확인조사(9차) 마감으로 인한 급여중지자 증가로 인해 수급률 하락	–
2015.1.	선정기준액 증가로 인해 전액 지급자 비율 대폭 증가 (91.5% → 94.5%), 1월 신청자 증가로 소급포함 수급률 상승	+
2015.2.	1월 신청자 증가로 수급률 상승	+
2015.3.	'15년 상반기(제10차) 확인조사로 인해 전액 지급자 비율 감소(94.2% → 93.2%)	–
2015.4.	'15년 상반기(제10차) 확인조사로 인해 수급률 감소(66.6% → 66.4%)	–
2015.5.~	전월 수급률 유지	
2015.10	'15년 하반기(제11차) 확인조사 및 직역연금수급자 정비에 따른 수급률 감소(66.3→ 66.1%)	–

○ 2015년 수급률 변화 영향요인

- 2014년 12월에는 2014년 상반기 확인조사(9차) 마감으

로 인해 수급률이 하락했음

-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중지자 증가로 인해 수급률 감소효과가 나타났음
- 2014년 12월 66.5%에서 2015년 1월 66.4%로 0.1%p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1월과 2월에는 선정기준액 증가로 인한 신청자 증가로 수급률이 상승함

- 선정기준액 증가로 인해 전액 지급자 비율이 대폭 증가(91.5%→94.5%), 1월 신청자 증가로 수급 포함 수급률 상승
- 2015년 1월 66.4%에서 2월 66.5%, 3월 66.6%로 수급률이 상승함

– 2015년 상반기(제10차) 확인조사로 인해 수급률이 다소 감소

- 확인조사를 통해 전액 지급자 비율이 94.2%에서 93.2%로 감소
- 2015년 3월 66.6%에서 4월 66.4%로 0.2%p 감소

– 2015년 하반기(제11차) 확인조사 및 직역연금 수급자 정비에 따른 수급률 감소(66,3%→66.1%)

[그림 6-1]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및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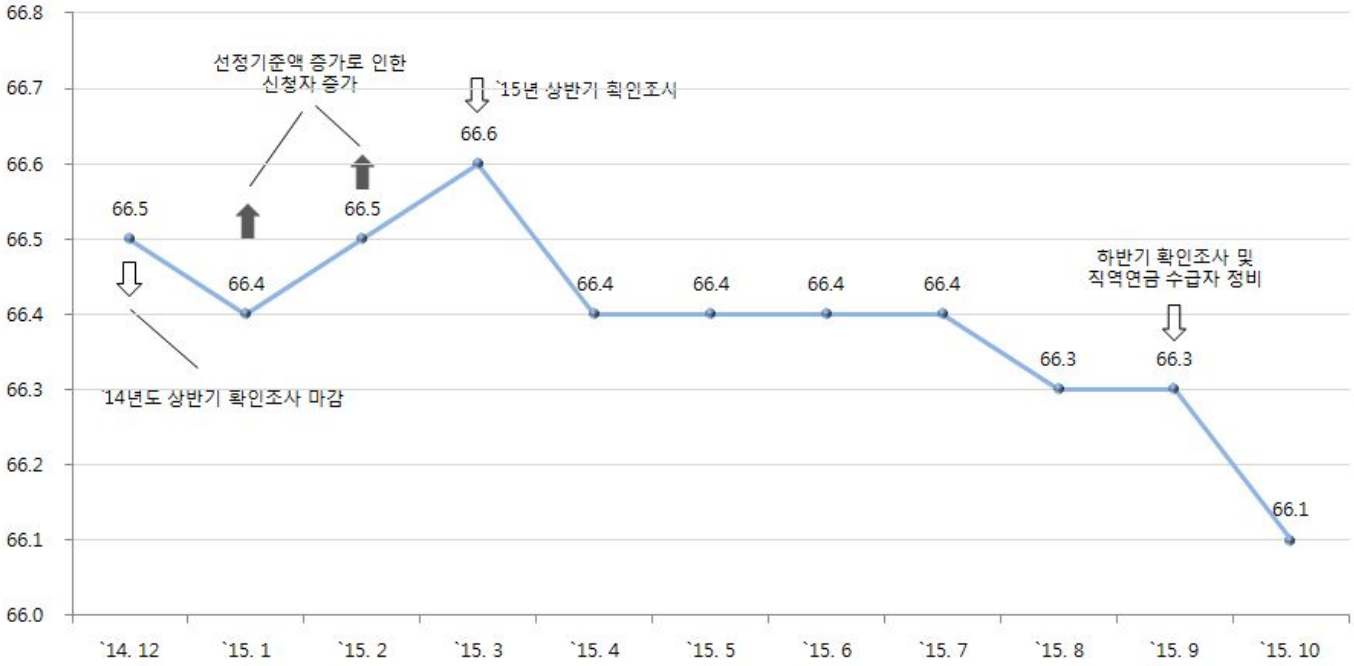

[그림 6-2] 기초연금 수급률 전월대비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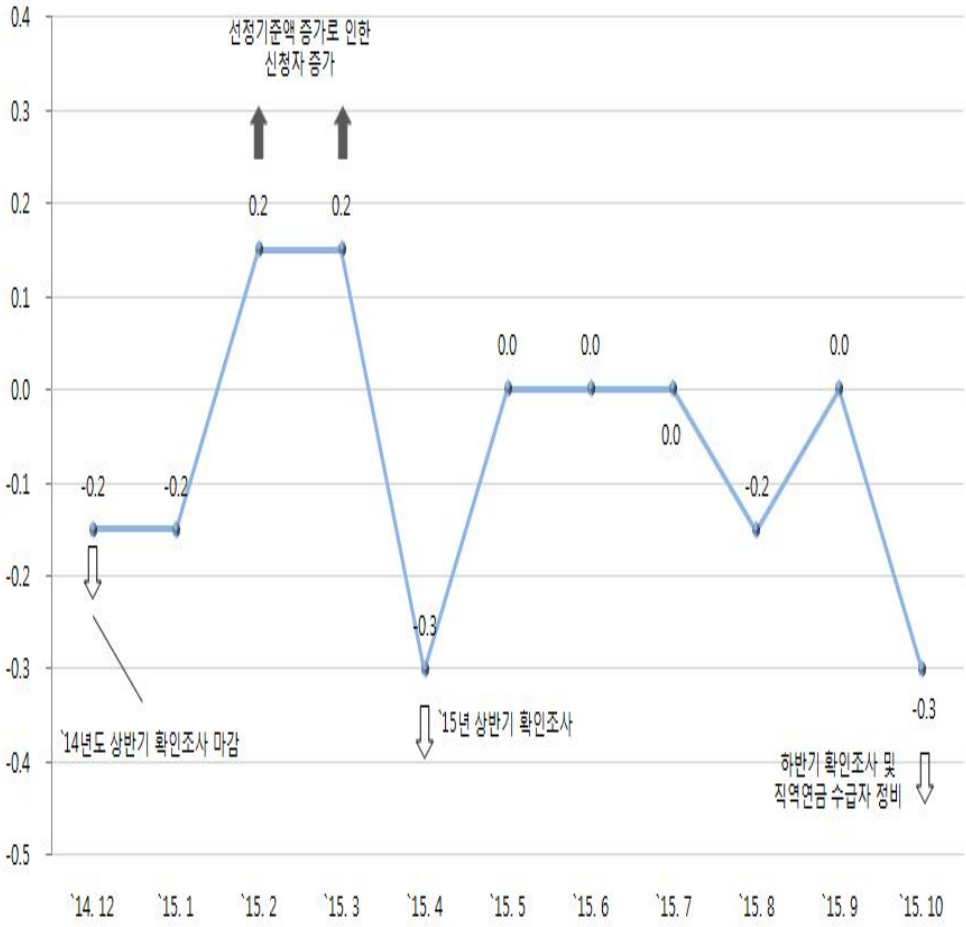

[그림 6-3] 기초연금 수급률 전월대비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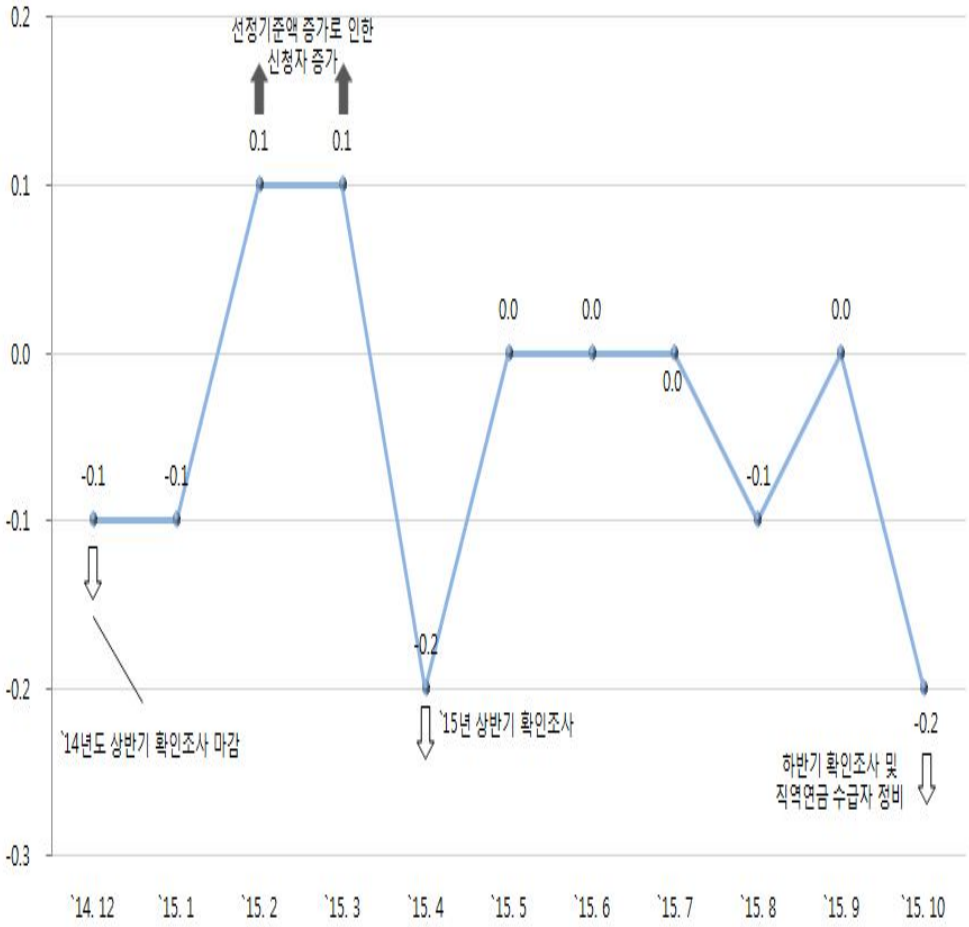

제2절 수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변동 관련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임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기초연금의 수급률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함

○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수급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찾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조정되어 인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14.7~12월간 기초연금 탈락자 약 32만명, 이 가운데 2015년도 선정기준액 인상(단독, 87만원→93만원)에 따라 수급 가능한 노인은 약 7만명으로 추정됨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개요

○ (목적)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

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최소화

○ (대상)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 중 이력관리 신청자(5년간)

○ (방법) 매년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는 경우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자료를 조사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 안내

○ (절차)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기초연금 수급 신청시) → 수급자격 탈락 후 매년 소득·재산 등 이력조사(전년도 10~12월) → 변경된 선정기준액에 따라 신청 안내 대상자 확정(1월) → 신청 안내(1월)

구 분	내 용	담 당
신청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동의(신청서 제출)	신청자 → 시군구
이력 조사 및 수급가능성 예측	매년 말 이력조사 실시 및 안내 대상자 확정	시군구
신청 안내	조사 결과 안내 * 수급가능자만 안내	연금공단 → 조사 대상자
재신청 및 자격 책정	기초연금 재신청, 신청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책정	신청자, 시군구

□ 추진일정

○ 시행령 개정('15.11월) 및 이력관리 제도 시행('16.1월)

○ 행복e음 시스템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시스템 마련('16년)

○ '17년 선정기준액에 따라 수급가능성 예측 및 신청 안내('17.1월)

참고문헌 <<

Breiman, L. (2001). Random forests. Machine learning, 45(1), 5-32.

Y. Freund and R. E. Schapire (1997). "A decision-theoretic generalization of online learning and an application to boosting", Journal of Computer and System Sciences, 55(1):119-139.

J. H. Friedman (2001). "Greedy Function Approximation: A Gradient Boosting Machine", Annals of Statistics 29(5):1189-1232.

J. H. Friedman, T. Hastie, R. Tibshirani (2000). "Additive Logistic Regression: a Statistical View of Boosting", Annals of Statistics 28(2):337-374.

T. Hastie, R. Tibshirani, J. H. Friedman (2001). "The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 Springer.